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결산분석시리즈 IV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정한솔 예산분석관  
오규환 예산분석관

**지원** | 김리라 행정실무원  
권예니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 7.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 3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3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4

#### II. 주요 사업 분석 / 16

##### 〈일반회계〉

- 1.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16
- 2.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 관리 강화 및 수위관측소 설치 형식 다변화 필요 ..... 23
- 3. 서울 도심 침수 피해 방지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36
  - 3-1. 도심도 하수저류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8
  - 3-2.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사업예산 전액 전용 문제 ..... 43



# CONTENTS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회계 이관 필요 ..... 50

## 〈환경개선특별회계〉

5.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57
6.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 적기 자산 취득 필요 ..... 62
7.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 필요 ..... 66
8.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노후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74
9.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절차 지연 문제 ..... 81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86
11.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 차질없는 건강피해조사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9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 에너지바우처 사업: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 102
13. 암모니아 기반 구축사업: 사전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 107

## 〈석면피해구제기금〉

14.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요발굴 방안 마련 필요 ..... 113



# CONTENTS

## 〈수계관리기금공통〉

15.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리 강화 필요 ..... 119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과다 문제 ..... 124

## 〈기후대응기금〉

17.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분석 ..... 133

- 17-1.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136

- 17-2.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46

## [고용노동부]

### I. 결산 개요 / 153

- 1. 현 황 ..... 153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61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62

### II. 주요 사업 분석 / 164

#### <일반회계>

-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된 규모도 미집행 ..... 164
- 2. 내일배움카드(일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도 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등 ..... 171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177
- 4.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필요 ..... 184

#### <고용보험기금>

- 5.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88
- 6. 구직급여: 60세 이상 고령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 개편 필요 ..... 194



# CONTENTS

- 7.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의 활성화 노력 필요 ..... 202
- 8.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등 ..... 208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총괄):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등 ..... 219
- 10.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산정 시 연령 요인을 고려할 필요 ..... 227
- 11. 산재병원 지원: 노후화된 산재병원 의료장비의 교체 필요 ..... 232
- 1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 236
- 13. 업종별 재해예방: 컨설팅의 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우선 수행할 필요 등 ..... 242
- 14. 산재예방시설 건립: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할 필요 ..... 24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정부부문 및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251
- 16.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준수 필요 등 ..... 260



# CONTENTS

## 〈임금채권보장기금〉

17. 대지급금 지급: 회수율을 제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 필요 ..... 266

## 〈근로복지진흥기금〉

18. 근로복지진흥기금(총괄): 실업대책계정 재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271
19. 신용보증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율을 개선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75

## [기상청]

### I. 결산 개요 / 285

- 1. 현 황 ..... 285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89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90

### II. 주요 사업 분석 / 291

- 1.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측지점 이전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 강화 필요 등 ..... 291
- 2.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개발(R&D): 기술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등 ..... 297
- 3.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 계약 지연에 따른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 306





기후에너지환경부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조 5,119억원이며, 10조 1,545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7%인 9조 3,089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7,672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82억 3,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5,228	65,228	65,425	37,135	26,873	10,261	0	72.4
환경개선 특별회계	7,346,834	7,724,233	7,724,233	8,619,541	7,812,123	729,180	78,238	90.6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111	2,111	2,111	2,348	2,253	94	0	96.0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12,675	12,675	12,675	69,684	59,698	9,986	0	85.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87,862	187,862	1,707,456	1,425,793	1,408,028	17,765	0	98.8
합계	7,614,710	7,992,109	9,511,900	10,154,501	9,308,975	767,286	78,238	91.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조 3,757억 7,100만원이며, 이 중 94.9%인 21조 2,418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823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515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187,343	8,624,342	8,690,458	8,643,950	32,848	13,660	99.5
환경개선 특별회계	7,346,834	7,724,233	7,792,657	7,596,828	47,580	148,249	97.5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82,422	82,422	82,422	82,422	0	0	100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2,596,694	2,687,988	2,687,988	2,626,382	1,343	60,264	97.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200,667	2,775,417	3,122,246	2,292,227	604	829,415	73.4
합계	21,413,960	21,894,402	22,375,771	21,241,809	82,375	1,051,588	94.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8조 1,081억 4,500만원이며, 36조 4,938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0.7%인 18조 4,886억 8,000만원을 수납하고 1,711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억 5,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62,556	562,556	562,556	739,091	533,431	48,547	252	72.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589	237,589	237,589	468,432	246,347	20,568	41	52.6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00	190,800	190,800	216,671	188,950	14,635	38	87.2
영산강삼천강관리기금	169,728	169,728	169,728	152,892	182,662	9,062	37	119.5
석면피해구제기금	62,277	62,277	62,277	69,461	66,259	3,126	76	95.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02	10,406,202	10,406,202	13,288,962	9,833,112	0	0	74.0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157	3,879,276	3,879,276	7,458,989	4,763,621	61,831	614	63.9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2,599,717	14,099,349	2,674,298	13,351	0	19.0
합계	18,126,026	18,108,145	18,108,145	36,493,847	18,488,680	171,120	1,058	50.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8조 1,286억 1,900만원이며, 이 중 102.0%인 18조 4,886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171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7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sup>1)</sup>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62,556	562,556	568,524	533,431	2,362	1,670	93.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589	237,589	239,101	246,346	1,656	638	103.0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00	190,800	193,591	188,950	640	2,232	97.6
영산강·섬진강관리기금	169,728	169,728	170,667	182,662	68	459	107.0
석면피해구제기금	62,277	62,277	62,304	66,259	30	14,127	106.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02	10,406,202	10,406,202	9,833,112	0	0	94.5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157	3,879,276	3,879,412	4,763,621	132	2,311	122.8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2,608,818	2,674,298	12,291	49,319	102.5
합계	18,126,026	18,108,145	18,128,619	18,488,680	17,179	70,756	102.0

주: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은 여유자금규모 증가로 인해 지출액이 계획현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283억 5,500만원(1.8%)이 증가한 7조 2,753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조 4,511억 1,400만원(157.6%)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802,348	1,583,727	1,583,727	1,819,925	236,198	17,577
기금	1,021,912	5,563,292	5,563,292	5,455,449	△107,843	4,433,537
합계	2,824,260	7,147,019	7,147,019	7,275,374	128,355	4,451,11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359억 1,500만원(3.9%)이 감소한 18조 1,64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조 9,087억 5,300만원(48.2%)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1,230,280	12,983,894	12,995,643	12,321,747	△673,896	1,091,467
기금	1,025,418	5,505,127	5,904,723	5,842,704	△62,019	4,817,286
합계	12,255,698	18,489,021	18,900,366	18,164,451	△735,915	5,908,75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산은 155조 4,197억 7,000만원, 부채는 5조 6,774억 7,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49조 7,422억 9,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9조 6,519억 2,300만원, 유·무형자산 134조 1,641억 2,200만원, 기타자산 1조 6,037억 2,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조 7,985억 3,000만원(3.9%) 증가하였다. 이는 대여금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기 대비 2조 7,784억 1,900만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전기 대비 2조 1,048억 5,8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5조 6,743억 1,900만원, 충당부채 7,600만원, 기타부채 30억 7,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조 5,615억 8,500만원(4,799.1%)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차입금의 증가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5조 5,844억 2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55,419,770	149,621,240	5,798,530	3.9
Ⅰ. 금융자산	19,651,923	16,873,504	2,778,419	16.5
Ⅱ. 유·무형자산	134,164,122	132,059,264	2,104,858	1.6
Ⅲ. 기타자산	1,603,725	688,472	915,253	132.9
부 채	5,677,472	115,887	5,561,585	4,799.1
Ⅰ. 차입부채	5,674,319	89,917	5,584,402	6,210.6
Ⅱ. 총당부채	76	54	22	40.7
Ⅲ. 기타부채	3,077	25,916	(22,839)	(88.1)
순 자 산	149,742,298	149,505,353	236,945	0.2
Ⅰ. 기본순자산	6,245,212	6,240,534	4,678	0.1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00,442,085	102,862,837	(2,420,752)	(2.4)
Ⅲ. 순자산 조정	43,055,000	40,401,982	2,653,018	6.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조 4,613억 4,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3조 9,344억 2,500만원, 관리운영비 6,545억 6,600만원, 비배분비용 3,328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2,499억 6,8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204억 2,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조 1,900억 8,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7,416억 7,700만원(6.2%) 증가한 12조 6,514억 3,000만원이며, 이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총원가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1조 250억 1,3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2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프로그램(3조 5,624억 4,000만원),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1조 9,761억 1,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295억 2,600만원과 경비 4,250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평가손실 730억 7,600만원, 기타국가운영비용 2,178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684,457	11,659,444	1,025,013	2.8
가. 프로그램 총원가	13,934,424	12,746,683	1,187,741	9.3
나. 프로그램 수익	1,249,968	1,087,239	162,729	15.0
II. 관리운영비	654,566	499,846	154,720	31.0
III. 비배분비용	332,830	271,091	61,739	17.3
IV. 비배분수익	1,020,423	520,629	499,794	96.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2,651,430	11,909,753	741,677	6.2
VI. 비교환수익 등	3,190,089	2,958,997	231,092	7.8
VII. 재정운영결과(V-VI)	9,461,341	8,950,756	510,585	5.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성질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수익합계(a)	6,417,914	6,101,200	316,714	5.2
I. 이전수익	4,147,523	4,493,331	(345,808)	(7.7)
II. 국가운영수익	2,270,391	1,607,869	662,522	41.2
비용합계(b)	15,879,255	15,051,956	827,299	5.5
III. 이전비용	12,091,117	11,649,613	441,504	3.8
IV. 국가운영비용	3,788,139	3,402,343	385,796	11.3
재정운영결과(b-a)	9,461,341	8,950,756	510,585	5.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49조 5,053억 5,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9조 7,422억 9,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369억 4,500만원(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기초순자산이 2조 4,294억 8,100

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5,105억 8,5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8,274억 8,3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8,544억 6,700만원 감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2조 4,120억 1,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1조 9,227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4,242억 8,8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조 2,168억 900만원,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3조 4,329억 2,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49,505,353	147,075,872	2,429,481	1.7
II. 재정운영결과	9,461,341	8,950,756	510,585	5.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490,114	11,344,581	(854,467)	(7.5)
IV. 조정항목	(791,828)	35,655	(827,483)	(2,320.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49,742,298	149,505,353	236,945	0.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회계연도 기말의 현금은 전기 대비 2,456억 6,000만원 감소한 1조 2,189억 9,8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주로 국고수입 등에 의한 현금 유입 27조 6,457억 8,400만원, 주로 보조비 지급에 의한 현금 유출 25조 6,528억 8,600만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주로 금융자금 등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9조 7,477억 3,900만원, 대여금 지급 등에 의한 현금유출 12조 7,332억 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정부내차입금에 의한 현금유입 7,474억 2,700만원, 기타유출 등이 반영된 현금유출 5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92,898	-	1,992,898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85,464	-	2,985,464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46,906	-	746,906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245,660	-	245,660	-
V. 기초의현금	1,464,658	-	1,464,658	-
VI. 기말의현금(IV + V)	1,218,998	-	1,218,998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회계·기금 간(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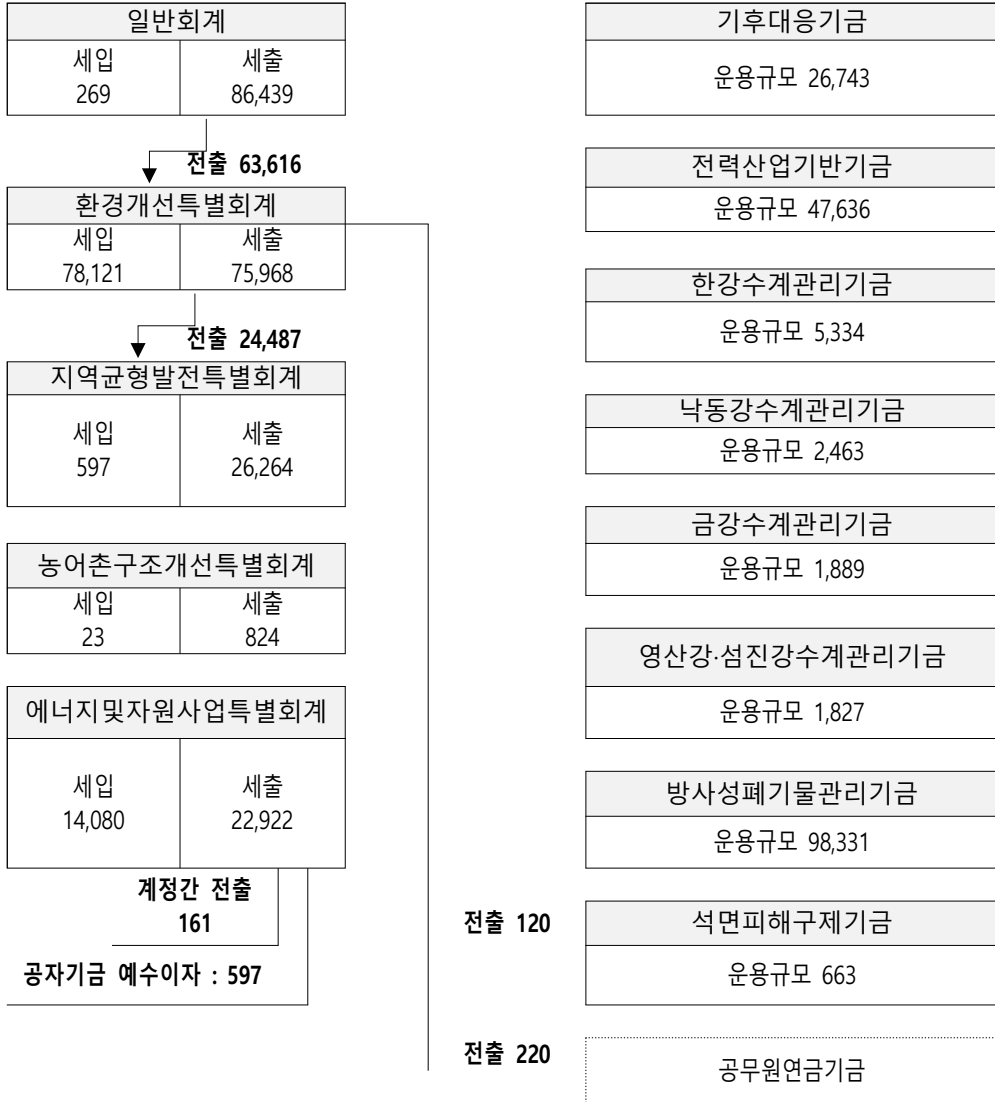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6조 3,616억원 전출되었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조 4,487억원 전출되었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120억 전출되었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2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597억원이 전출되었다.

계정 간 거래를 살펴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용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161억원이 전출되었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 총계 기준

- 주: 1) 회계간 거래 : 총 8조 8,103억원
  - 일반회계 → 환특회계 6조 3,616억원
  - 환특회계 → 지특회계 2조 4,487억원
- 2) 회계-기금간 거래 : 총 937억원
  - 환특회계 → 석면기금 120억원
  - 환특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220억원
  - 에특회계(예수이자) → 공자기금 597억원
- 3) 계정간 거래 : 총 161억원
  - 에특회계 용자계정 → 투자계정 161억원

내부거래  
총 8조 9,201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②**폐기물처리시설확충 사업**, ③**댐 운영관리 사업** 등이 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실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150억원이 감액(1,787억원→1,637억원)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사업은 내역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이 법령 위반 문제로 96억 9,100만원 전액 감액(2,352억원→2,255억원)되었다. 댐 운영관리 사업은 내역사업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의 단가 조정으로 8억 4,600만원이 감액(689억원→680억원)되었다<sup>1)</sup>.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사업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렴 상황을 검토하여 2026년도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2)</sup>.

1)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2)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②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③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투자 지속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수자원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집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어 예산 집행부진이 문제되었고,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은 집행잔액을 차년도 신규사업에 사용하고, 획일화된 수위관측소 설치가 문제되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과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사업이나 두 사업 모두 지속적인 예산이월과 집행부진이 문제되었다.

둘째, 법정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정 의무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과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두 사업 모두 사업 실적행률 및 의무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의 경우 규제대상은 아니나 여전히 운영되는 노후제품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암모니아 기반 구축사업은 2025년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청정수소를 활용한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청정 암모니아 인수·저장·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내에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과 동남아, 중동, 북미, 호주 등 청정수소 생산량 및 단가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대

상으로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했는데, 2025년 두 사업 모두 전액 불용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 경제 전환의 적기에 추진하고, 이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전액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기금고갈 우려로 기금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기금 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집행이 부진한바, 잠재적 석면피해자에 대한 수요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수계관리기금은 공통적으로 여유자금 과다가 문제되며, 특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지출액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1

###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sup>1)</sup>은 극한 강우 및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비단계인 댐 건설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3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3,000	3,000	-	-	3,000	3,000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댐이란 극한 홍수와 가뭄, 국가 첨단전략산업 계획 등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댐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업 필요성, 댐 후보지의 위치, 수몰 면적 및 수몰 세대수, 개략사업비 등을 포함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sup>2)</sup>, 기후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5131-313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sup>3)</sup>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sup>4)</sup>은 댐을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sup>.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관리계획

###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 5)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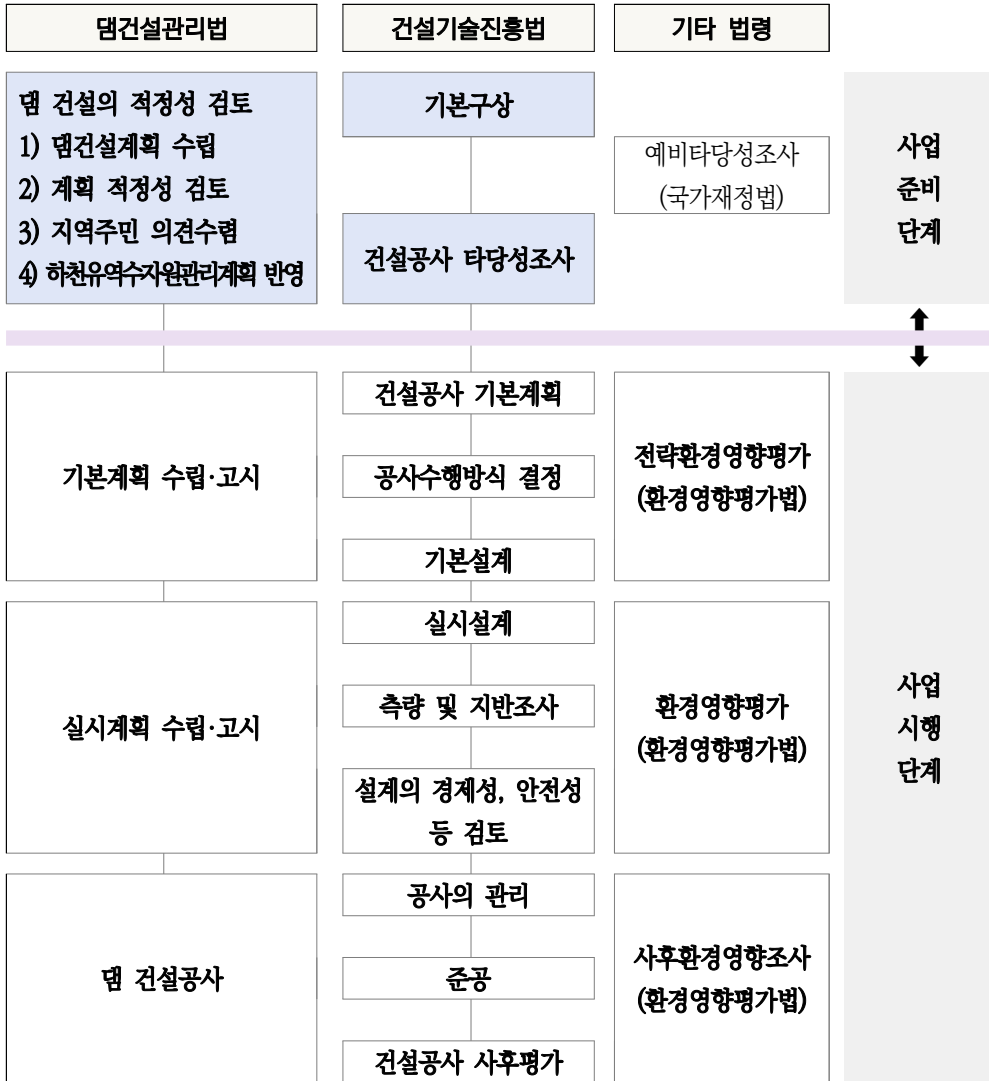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담 건설 추진체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신규담 건설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 2024년 사업 시작 이후 주민 반대 등 문제로 실질행이 계속 부진한바,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댐 건설 추진에 앞서 수립되어야 할 법정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수자원법」에 따라 댐건설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2025년 5월에 반영(고시)되었다.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안 93억 400만원에서 30억원 감액이 이루어졌다.

[2024년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5131-313)	-	9,304	6,304	△3,000	○ 동 사업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임. ○ 댐 건설이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가뭄, 홍수 대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30억원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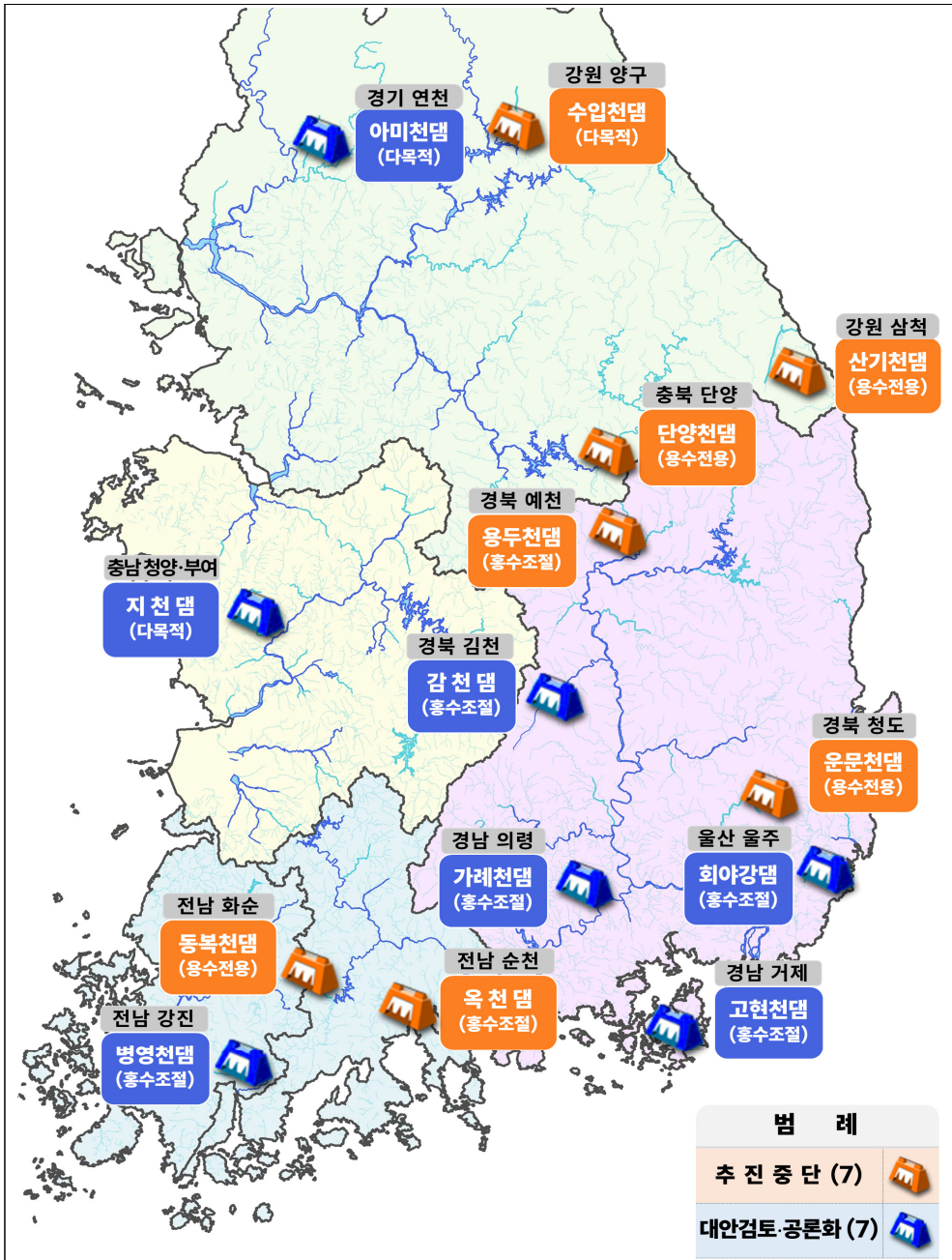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 사업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sup>6)</sup>되었으며, 이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는 등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 댐<sup>7)</sup>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sup>8)</sup>.

6)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sup>3</sup>m<sup>3</sup>)의 11% 수준인 총 3.2억<sup>3</sup>m<sup>3</sup>에 불과

7)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거나, 주간시간대 태양광으로 발생하는 과잉 출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댐

[14개 신규댐 추진 방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8) 기후에너지환경부, 「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 통해 최종 결정», 2025.9.30.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 예산 63억은 2024년 10월까지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5년까지 25억 2,6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2025년 예산 30억은 지금까지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2026년 12월까지 집행 후 잔여예산은 국고반납 예정이다.

[2024~2025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시행주체(한국수자원공사)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2024	6,304	-	6,304	2,526	3,778	-	40.0
2025	3,000	-	3,000	116	2,884	-	3.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예산 편성 이후 2024년 7월 14곳의 신규댐 후보지(안)를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도 주민 반대 등이 심해 2025년 9월 14개 후보지 중 7개를 중단했고,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2026년 4월 기준 7개소 중 5개소는 기본구상 중이며, 2개소는 공론화 추진 중에 있다.

2025년도 상세추진경과를 보면, 지역 의견수렴 등을 위해 대행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의 과업도 8월에서 10월까지 중단한바 있다.

[2025년도 신규댐 사업 상세추진경과]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댐 후보지 기본구상 추진	14개 신규댐 정밀재검토 착수	후보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b>대행사업(수공) 과업 중지</b>	14개 신규댐 정밀재검토 결과 발표	지역주민 간담회 (7개소)	<b>대행사업(수공) 과업 재개</b>	기본구상 추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 사업은 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추진 절차 등에 대

해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적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선정절차 등에 있어 회의록 부재 등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댐 건설 관련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멸종위기 어종 보호 등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고려 미흡, 2030 하천유역계획에 2050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근거로 사용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없이 추진됨으로 인해 예산의 지속적인 불용 및 집행부진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6년 예산은 전액 미편성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 관리 강화 및 수위관측소 설치 형식 다변화 필요

### 가. 현황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sup>1)</sup>은 제2차 국가 수문조사망 구축계획에 따라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홍수정보 수집 수위관측소를 확충하기 위한 수위, 강수량 관련 관측시설을 신설하고,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홍수예보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를 위한 AI홍수예보체계 연구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099억 3,500만 원 중 93.8%인 1,03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2,100만 원을 이월하고 40억 6,2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93,484	108,484	1,452	-	109,935	103,152	2,721	4,062	97,350	97,350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	9,479	24,479	304	-	24,783	22,983	83	1,717	21,479	21,479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이은 홍수·가뭄 피해 발생 및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법 시행(2024년 3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2025년 6월 30일에 수립한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홍수 등 물 재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수문조사망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홍수에 취약한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수위 계측기를 459곳에 추가로 설치해 933곳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5134-302의 내역사업

에서 1,392곳으로 늘리고, 도로침수위 계측기도 409곳을 신설하여 도시침수예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25년 50개소의 AI 수문관측소를 우선 설치하고, 2029년까지 230개소의 추가 설치를 완료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AI 수문관측소 연차별 투자 계획(2024~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개 소 수	260	50	45	45	45	45
실시설계비	2,046	512	461	461	461	461
공 사 비	72,354	14,393	12,954	12,954	12,954	12,954
시설부대비	400	95	85	85	85	85
합 계	74,800	15,000	13,500	13,500	13,500	13,5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I 홍수예방시설 구축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위관측소 50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15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244억 7,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2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I홍수예보 시설구축사업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비(420-02) : 235</li> <li>○ 공사비(420-03) : 6,600</li> <li>○ 시설부대비(420-05) : 44</li> <li>○ 일반연구비(260-01) : 2,600</li> </ul>	24,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비(420-02) : 747</li> <li>※ 수위관측소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증 512 (14,394(공사비) x 3.56% = 512)</li> <li>○ 공사비(420-03) : 20,993</li> <li>※ 수위관측소 신설에 따른 공사비 증 14,393 (약2.9억/개소 x 50개소 = 14,393)</li> <li>○ 시설부대비(420-05) : 139</li> <li>※ 수위관측소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 95 (14,394(공사비) x 0.66%(0.36%+0.3%) = 95)</li> <li>○ 일반연구비(260-01) : 2,600</li> </ul>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 피해발생 하천모니터링, AI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 시설 50개소를 선정하였다.

[2025년 신설 수위관측소 상세 현황]

연번	홍수 통제소	시설명	하천명	위 치
1	한강	괴산군(문광교)	성황천(지방)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문광교
2		음성군(상우교)	오갑천(지방)	충청북도 음성군 갑곡면 상우리 상우교
3		의정부시(낙양2교)	민락천(지방)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낙양2교
4		의정부시(경의교)	백석천(지방)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교
5		안성시(평촌교)	한천(지방)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평촌교
6		안성시(현수교)	조령천(지방)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현수교
7		서울시(석계교)	우이천(지방)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석계교
8		용인시(농서교)	신길천(지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농서교
9		포천시(가산교)	포천천(지방)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가산교
10		홍천군(창촌1교)	자운천(지방)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창촌1교

연번	홍수 통제소	시설명	하천명	위 치	
11		단양군(새남교)	남조천(지방)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새남교	
12		음성군(병암교)	응천(지방)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안리 병암교	
13		포천시(지현교)	명덕천(지방)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지현교	
14		삼척시(동막교)	마읍천(지방)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동막교	
15		삼척시(천기교)	천기천(지방)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천기교	
16	낙동강	영천시(단포교)상류	자호천(지방)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7		밀양시(금곡리)상류	단장천(지방)	경북 밀양시 금곡교 인근	
18		김해시(정천교)상류	조만강(지방)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천곡교 인근	
19		영덕군(영덕대교)상류	영덕오십천 (지방)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천천대교 인근	
20		부산시(세병교)상류	온천천(국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뉴타운교 인근	
21		창원시(창원천제1호교)상류	창원천(국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퇴촌3호교 인근	
22		창원시(창원천제1호교)하류	창원천(국가)	상류지역 인근	
23		부산시(대저2동)	맥도강(국가)	부산시 강서구 맥도강변길 677-16	
24		안동시(포진1교)	반변천(국가)	경북 안동시 송천동 1319-69	
25		안동시(낙천교)	낙동강(국가)	경북 안동시 법흥동 32-3	
26		안동시(옥수교)	낙동강(국가)	경북 안동시 옥동 1277-4	
27		안동시(계평리)	낙동강(국가)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7	
28		안동시(단호교)	낙동강(국가)	경북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1346	
29		합천군(용주교)	황강(국가)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평리 910-217	
30		오대 저수지 하류	동천(지방)	경북 상주시 사벌곡면 원흥리 1260-4(연목교)	
31		금봉1 저수지 하류	달곡천(지방)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1105-179(입암교)	
32		가북 저수지 하류	가천천(지방)	경남 거창군 가북면 장기리 1394-4(가조교)	
33		묘곡 저수지 하류	남천(지방)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853-12	
34		달창 저수지	방류성인재지내	저수지 내 인근	
35		용연 저수지	방류성인재지내	저수지 내 인근	
36		금강	익산시(홍왕교)	산북천(지방)	전북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923-48
37			익산시(남포교)	산북천(지방)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31-2
38			세종시(백천교)	백 천(지방)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451-54
39			공주시(가회교)	마곡천(지방)	충남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302-1
40			논산시(고양교)	연산천(지방)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48
41	영산강	김제시(종정교)	유각천(지방)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277	
42		전주시(구이저수지)	삼 천(지방)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30	
43		순창군(둔전교)	추령천(지방)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425	

연번	홍수 통제소	시설명	하천명	위 치
44		남원시(초촌교)	백암천(지방)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35-2
45		영광군(불갑저수지)	불갑천(지방)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산 85-6
46		나주시(다시교)	문평천(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611-10
47		장흥군(죽 교)	고읍천(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576-2
48		고흥군(내동교)	사정천(지방)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538-2
49		하동군(지내교)	주교천(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035
50		하동군(하동저수지)	횡천강(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151-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AI 수문관측소 설치사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관측소의 실시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차년도 신규사업의 실시설계에 사용해오고 있다. 2021년은 2022년에 신설할 10개소에 1억 2,300만원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2023년에 신설할 12개소에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에는 2024년에 신설할 110개소에 2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5년에 신설할 수자원통신위성 수문자료 수집 안테나 구축사업에 1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5년에는 2026년 예정된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실시설계에 4,3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년~2025년 실시설계비 집행지침 위반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구 분	사업명	실시설계 기간	집행액
2025	2025년 예산으로 2026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1건)	2026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실시설계	'25.12.08.~'26.03.07	43
		<b>소계</b>		
2024	2024년 예산으로 2025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1건)	2025년 수자원통신위성 수문자료 수집 안테나 구축	'24.12.10 ~'25.07.08	157
		<b>소계</b>		
2023	2023년 예산으로 2024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4건, 총 110개소)	2024년 우제교 등 수위관측소 설치	'23.10.06 ~'24.07.19	75
		2024년 강원 권역 수위관측소 설치	'23.10.26 ~'24.03.08	66
		2024년 상동교 등 수위관측소 설치	'23.10.31.~'23.12.29.	93
		2024년 층촌1교 등 수위관측소 설치	'23.12.27 ~'24.11.20	4
		<b>소계</b>		
2022	2022년 예산으로 2023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2건, 총 12개소)	2023년 월산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0.26.~'22.12.24.	21
		2023년 교촌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0.26.~'22.12.24.	
		2023년 모양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85
		2023년 신미장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연등5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삼천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임상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남천1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남외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남창5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대신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3년 죽평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b>소계</b>			<b>106</b>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구분	사업명	실시설계 기간	집행액
2021	2021년 예산으로 2022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3건 총 10개소)	2022년 강동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48
		2022년 망담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2022년 문척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2022년 상평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2022년 용두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2022년 개끄리민교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27
		2022년 평화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2022년 개롱이교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2022년 제2동산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2022년 충의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48
<b>소계</b>				<b>123</b>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제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제45조).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년도 관측소의 실시설계를 당해연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수행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위관측소 설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예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측소당 3억원의 공사비를 단가로 산정하여 총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수위관측소는 토목공사 형식 및 센서 형식에 따라 그 단가가 최소 2억 1,600만원(부자식+평지)에서 최대 6억 1,000만원(리드식+우물통)까지 단가가 차이가 발생한다.

[수위관측소 유형별 설치 단가]

(단위: 백만원)

사업	형식	설치 단가
토목공사	평지	111
	제방경사형	147
	우물통	410
센서 형식 (자료저장, 통신장비 포함)	부자식	105
	레이더식	137
	압력식	130
	리드식	2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적으로 레이더식을 많이 도입하므로 10개 신설 가정 시 7개는 레이더식+평지, 3개는 부자+우물통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개 소당 약 3억원의 단가를 산정(7×2.4 + 3×5.2억=32.4억, 1개소 약 3억원)하였는데, 실제 설치된 유형을 보면 토목공사 유형은 대부분 평지형과 제방경사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센서 유형은 대다수가 레이더식과 압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위관측소 설치 유형]

(단위: 백만원)

토목공사 센서 형식	평지	제방경사형	우물통	계
부자식	0	0	0	0
레이더식	26	11	0	37
압력식	2	9	0	11
리드식	0	2	0	2
계	28	22	0	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위관측소 유형별 설치 단계]

(단위: 백만원)

관측소명	토목공사 유형	센서 유형	설치 비용	
1	익산시(홍왕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96
2	익산시(난포교)	평지	압력식	269
3	논산시(관동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22
4	세종시(산수1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26
5	공주시(가회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22
6	영천시(양항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86
7	밀양시(사연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77
8	김해시(천곡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90
9	영덕군(마금교)	제방경사형	리드식	456
10	부산시(뉴타운교)	평지	레이더식	271
11	창원시(퇴촌3호교)	평지	레이더식	253
12	상주시(연목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63
13	의성군(입암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52
14	거창군(가조교)	평지	레이더식	285
15	영덕군(남천1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60
16	봉화군(금봉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94
17	봉화군(애당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93
18	봉화군(오록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307
19	울진군(금매2교)	제방경사형	리드식	446
20	울진군(유곡2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279
21	의성군(가읍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98
22	포항시(용연저수지)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61
23	대구시(달창저수지)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70
24	경주시(보문저수지)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66
25	김해시(후포2교)	제방경사형	압력식	303
26	김제시(복촌교)	제방경사형	레이더식	280
27	순창군(둔전교)	평지	레이더식	257
28	담양군(창흥교)	평지	레이더식	257
29	순창군(은행교)	평지	레이더식	256
30	장흥군(고읍교)	평지	레이더식	256
31	하동군(진암1교)	평지	압력식	250
32	하동군(하동저수지)	평지	레이더식	256
33	완주군(구이저수지)	평지	레이더식	256
34	김제시(금편저수지)	평지	레이더식	257
35	영광군(불갑저수지)	평지	레이더식	256
36	음성군(상우교)	평지	레이더식	217
37	양평군(보룡교)	평지	레이더식	218
38	양평군(다문교)	평지(합체)	레이더식	184
39	안성시(현수교)	평지	레이더식	218
40	포천시(가산교)	평지(합체)	레이더식	184

(단위: 백만원)

관측소명		토목공사 유형	센서 유형	설치 비용
41	단양군(음지교)	평지	레이더식	218
42	음성군(병암교)	평지	레이더식	218
43	포천시(지현교)	평지	레이더식	218
44	원주시(동부교)	평지	레이더식	218
45	광주시(부항교)	평지(함체)	레이더식	184
46	김포시(사우교)	평지	레이더식	218
47	삼척시(마차교)	평지	레이더식	218
48	파주시(주월교)	평지(함체)	레이더식	184
49	정선군(광탄교)	평지	레이더식	218
50	양구군(양지교)	평지	레이더식	21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측소 설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형으로 구성됨에 따라 수위관측소 평균 설치 단가는 2억 5,700만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출한 단가와 약 3,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 사업은 15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어 집행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방식들로 설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위관측소는 유형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지역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한 설치를 위해 설치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수위관측의 정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센서 유형별 특성 및 장단점을 보면, 가장 많이 설치된 레이더식은 설치, 운영이 간편하고 설치 비용이 낮다는 이점이 있으나, 동결기 수면 동결 시 난반사로 인한 오측이나 주파수 대역에 따른 혼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압력식도 설치, 운영이 간편한 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장기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반면, 부자식의 경우 설치 비용은 레이더식, 압력식에 비해 높으나 관측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2025년 신설 50개소 중 단 2곳 만이 리드식으로 설치가 되었다.

[수위관측소 수위계 방식별 특성]

측정방식	관측장비	특성	
		장점	단점
부자식 (접촉식)	일반 부자식	-단순한 수위계자체구조 -조작 및 테스트 편리 -고장 시 교체 편리 -수면 높이 측정으로 인해 정확도 높음	-높은 구조물 건축비용 -측정지점이 관측소 위치에 고정됨 (하천환경 변화 대처 불가) -수수구막힘 및 동결기 동결 시 오측 -구조적 문제에 의한 불와이어 풀림 발생으로 인한 오측 존재
	리드 스위치식	-견고한 내구성으로 인한 낮은 고장률 -동결기 결빙 시 히팅기능 활용으로 측정가능 -관측소 위치와 무관한 측정지점 설치가능 -수면 높이 측정으로 인해 정확도 높음	-고장 시 수리불편 -일반 부자식에 비하여 저렴하나 다 른 방식에 비하여 다소 고가
압력식 (접촉식)	압력 (수정)식	-설치 운영 간편 -동결기 동결 시 측정 가능 (비동결 수심 운영) -설치 운영 간편하며 견고한 내구성 으로 자체 고장률낮음	-정기적인 유지보수 필요(수위관 청 소 등) -센서 위치 동결 시 오측
레이더식 (비접촉식)	레이더식	-설치 운영 간편 -수로 변동 시 이동설치 용이하며 하천 수량에 따른 영향 없음 -설치구조물 비용 낮음	-동결기 수면 동결 시 난반사로 인 한 오측 -수면과 수위계사이 환경적 영향 받 음 (수초 등) -주파수 대역에 따라 혼신 가능성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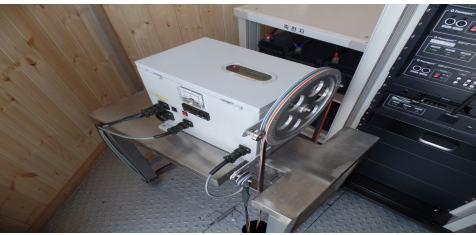





[수위관측소 수위계 방식별 장단점]

측정방식	관측장비	설치 용이성	관측 정확도	결빙 시 관측	설치 비용
부자식 (접촉식)	일반 부자식	하	<b>상</b>	중	높음
	리드 스위치식	중	<b>상</b>	<b>상</b>	보통
압력식 (접촉식)	압력 (수정)식	중	중	<b>상</b>	<b>낮음</b>
레이더식 (비접촉식)	레이더식	<b>상</b>	중	하	<b>낮음</b>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위관측소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설치 유형을 다양화하여 수위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위관측소 설치 형식]

토목공사 형태	
	
평지 설치형 수위관측소	제방 경사면 부착형 수위관측소
	
우물통식(교량 부착형) 수위관측소	우물통식(제방 부착형)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수위계	
	
부자식 수위계	레이더식 수위계
	
압력식(제방 설치) 수위계	압력식(교각 설치) 수위계
	
리드식(자립식) 수위계	리드식(교각부착식) 수위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현황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sup>1)</sup>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5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sup>2)</sup>은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유역 일대의 홍수예방을 위해 지류인 도림천 유역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본류인 한강으로 배출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방수로<sup>3)</sup>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전액을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sup>4)</sup>으로 전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서울 도심 침수 피해 방지사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본예산	추경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15,000	15,000	-	-	15,000	15,000	-	-	19,947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5,000	5,000	-	△5,000	-	-	-	-	2,142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년 8월 수도권 등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sup>5)</sup>을 발표하여 ①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12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5338-309

3) 하천의 통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부담하여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우수배수 초과 용량을 저류시켜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기술. 통상 지하 40미터 이상 지하를 이용할 경우 대심도 지하방수로라 함

4) 코드: 일반회계 5333-461

도시침수지도·하천범람지도 구축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AI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② 도시침수 취약구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사업 및 도심지 침수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대심도 지하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③ 하천 주변 공간에 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강변저류지 설치 및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율 향상을 지원하고, 도심지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방수로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시침수 및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범람 예방과 관련해서는 영등포구 도림천 일대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과 도시침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하수관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5)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발표 보도자료(2022.8.23., 기후에너지환경부)

### 3-1. 대심도 하수저류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황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2022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침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지하철 등 지하 매설물로 하수관로 공사,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워 대심도 빗물터널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특별시가 수행하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통해 설치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비 보조율은 25%이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강남역, 광화문) 개요]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규모			총사업비	'26국고	공사기간	시행사
	저류량 (m³)	연장 (km)	관경 (m)				
계	60.7만	8.1	-	8,630 (국고 2,009)	199	'24.~'30.	
강남역 (역삼무궁화공원~ 반포유수지)	48.5만	5.8	10.6	5,356 (국고 1,235)	136	'24.~'30.	한신 공영
광화문 (효자주차장~청계천)	12.2만	2.3	9.2	3,274 (국고 774)	63	'24.~'30.	DL 이앤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 역시 2022년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서 2023년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2년 8월 서울시에 발생한 대홍수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강남역 일대 도심이 침수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침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을 설치하여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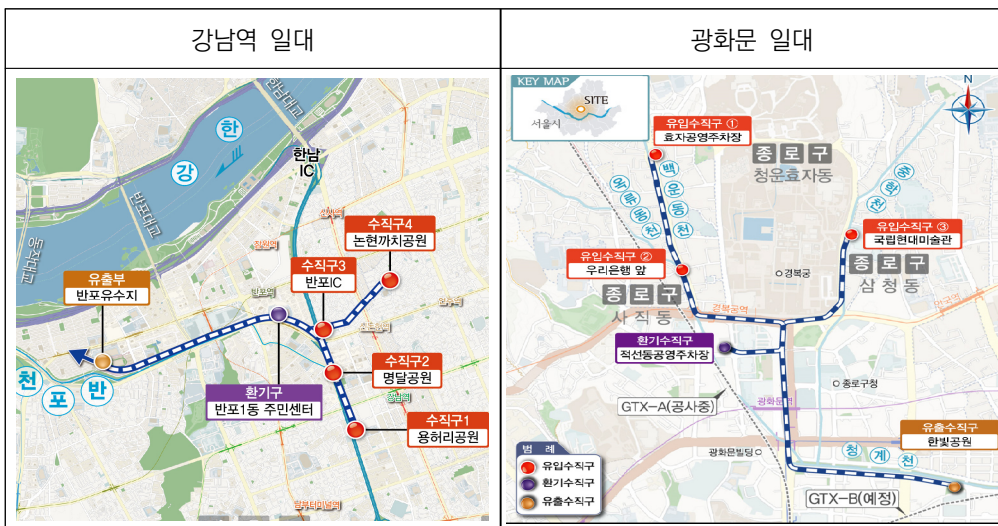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강남역 일대 구간과 광화문 일대 구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리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2025년 12월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강남역 대신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이 5,356억원이고, 광화문일대 대신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3,27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년간의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강남역, 광화문) 주요내용]

구분	강남역 일대	광화문 일대
총사업비	3,500억원 → 5,356억원	2,500억원 → 3,274억원
사업규모	직경: 10.6m 길이: 5.8km 저수용량: 48.5만m <sup>3</sup>	직경: 9.2m 길이: 2.3km 저수용량: 12.2만m <sup>3</sup>
사업구간	역삼무궁화공원~반포유수지	효자주차장~청계천
사업기간	2023~2027년→2023~2030년(시운전기간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구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고, 2025년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에 실집행액이 전혀 없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한 45억원 전부 2024년도로 이월되었다. 2024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7억 3,100만원 중 60억원을 서울시에 교부하였는데, 서울시는 45억 100만원만 실집행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교부한 60억원 중 59억 9,900만원은 이월하였다.

2025년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교부액 15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9,900만원을 합한 209억 9,900만원 중 81억 4,5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5,435	4,500	4,500	-	4,500	-	4,500	-	0
2024	13,731	6,000	6,000	4,500	10,500	4,501	5,999	-	42.9
2025	15,000	15,000	15,000	5,999	20,999	8,145	12,853	-	38.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총사업비 추가 협의로 일정기간 소요되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턴키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잦은 유찰<sup>6)</sup>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집행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 추진경과를 보면,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는 2023년 5월 대심도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계획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2023년 11월 당초 계획했던 총사업비

6) 2024년 1월~4월까지 4회 유찰

6,000억원(강남역 3,500억원, 광화문 2,500억원) 대비 1,769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가 7,769억원(강남역 4,802억원, 광화문 2,9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서울시가 턴키(turnkey) 방식<sup>7)</sup>으로 사업 공고를 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2024년 1월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재협의를 실시하였고, 2024년 2월 1차로 변경된 총사업비 대비 915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사업비 8,684억원(강남역 5,386억원, 광화문 3,298억원)으로 재확정하였다.

이후 2024년 4월 사업자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2024년 12월에는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을 진행하는 동시에 본공사 실시설계도 착수하였다. 2025년 5월에 본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마친 상황이고, 2025년 10월부터 본공사 계약 체결 후 착공하고 2030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연도별 주요 추진경과]

구분	주요 추진 경과
'23.3.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립
'23.6. ~ '23.11.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및 확정 * (당초) 강남역 3,500억원, 광화문 2,500억원 (조정) 강남역 4,802억원, 광화문 2,967억원
'23.12.	턴키공사 입찰공고(조달청) 및 무응찰 유찰(1회)
'24.1. ~ '24.2.	입찰 재공고 및 무응찰 유찰(2회)
'24.2.	총사업비 재협의 및 재확정(기획재정부) * (조정) 강남역 4,802억원, 광화문 2,967억원 (2차조정) 강남역 5,386억원, 광화문 3,298억원
'24.3.	턴키공사 입찰 공고 및 단독입찰 유찰(2회)
'24.4.	입찰 재공고(단독입찰) →수의계약 체결

7)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는 독립된 일대 침수방지 사업과 동일하게 턴키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시공 용역을 일괄하여 체결함

구분	주요 추진 경과
'24.5.~ '24.9.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24.10.	기본설계 적격 심의
'24.12..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본공사 실시설계 착수
'25.5.	본공사 실시설계 완료
'25.9.	주민설명회 개최
'25.10.	본공사 계약 후 착공
'25.12.	총사업비 재협의 및 재확정(기획재정부) * 강남역 5,356억원, 광화문 3,274억원, 사업기간('23~'3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상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 및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는 추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2.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사업예산 전액 전용 문제

#### 가. 현황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sup>8)</sup>은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일대의 홍수량 분산을 위하여 신대방 보라매공원(유입부)에서 노량진 수도자재센터(유출부)로 이어지는 도림천 일대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림천은 발원지인 관악산 상류의 영향으로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어 하천수 범람으로 홍수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0년, 2011년, 2022년 등 최근 3번의 도림천 일대 침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림천 방수로 설치를 통해 방재 성능을 향상하고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예산을 편성,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림천 유역 침수피해 발생 경과]

구 분		2001	2010	2011	2022
강우기간		7.15. 집중호우	9.21. 집중호우	7.27. 집중호우	8.8. 집중호우
강우량	3시간	303mm (100년 빈도 이상)	121mm (5년 빈도)	202mm (72년 빈도)	259mm (500년 빈도)
	1시간	156mm (100년 빈도 이상)	74mm (8년 빈도)	94mm (31년 빈도)	141.5mm (500년 빈도)
피해 현황	침수세대	7,642	1,884	3,327	8,752
	피해액	173억 6,500만원	64억 4,800만원	49억 1,600만원	283억 3,500만원
	사 망(명)	8	-	-	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2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026년 2월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4,977억원<sup>9)</sup>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8) 코드: 일반회계 5538-309

9) 국비: 111,043백만원, 지방비: 386,69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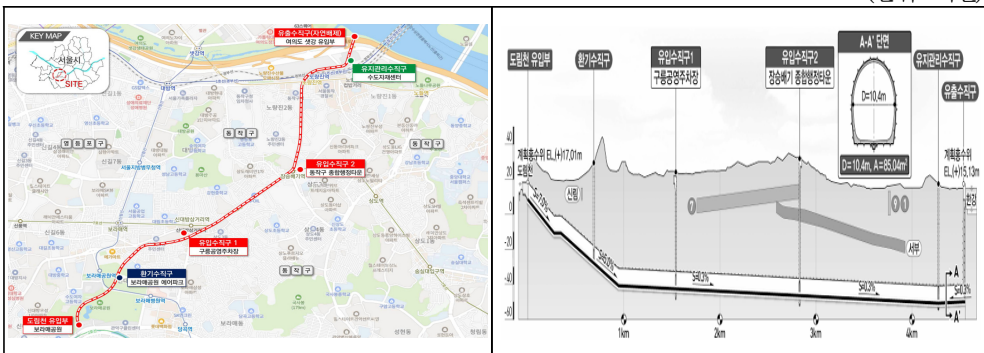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도림천 방수로 설치를 통해 방재 성능 향상 및 도림천 일대 침수 피해 예방
사업위치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 노량진동 수도자재센터
사업규모	L=4.5km, D=10.4m(일부 구간 12m), V=40.1만m <sup>3</sup>
시공사	(주)대우건설 컨소시엄 ※ 감리사 : (주) 건화 컨소시엄
공사기간	2024.12. ~ 2030.1.(61개월) ※ 종합시운전 12개월 포함
총사업비	4,977억원(국비 1,110억원, 지방비 3,867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도림천 지하 방수로 사업위치도]

(단위: 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당초 편성된 토지보상비 50 억원을 전액 전용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지연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2차례의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사업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8월 집중호우 발생 당시,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여 개략 공사비(3,000억원)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였다. 이후,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서울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3년 3월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의 설계 및 공사를 일괄입찰방법(turnkey)<sup>10)</sup>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3,000억원에서 4,283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년 2월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을 사유로 총사업비가 5,005억원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총사업비 조정 이후에도 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시 계속 유찰되었고, 입찰 재공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2024년 4월 계약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계약자 선정 후 2024년 9월까지 본공사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본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다. 2024년 12월에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 이후 2025년 6월 본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본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지하안전평가, 재해평가, 소규모영향평가 등)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2개 노선<sup>11)</sup>에서 통합노선 1개로 최종 변경되어 공사구간이 연장되었고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지연되었고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도 저해를 초래하였다.

---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일괄입찰(turnkey)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그 공사의 설계서 및 그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시공 용역을 일괄하여 체결함

11) 당초 계획은 2개 구간(도림천~셋강, 대방천~셋강)으로 나누어 각각 유출부를 설치할 예정이었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각 연도별 주요 추진경과]

연도별	주요 사업추진 현황	
2023	'22.11. ~ '23.1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서울시) * 당초 용역 계획기간은 '23.5월까지 였으나,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으로 용역 연장
	'23.03. ~ 04.	턴키공사 발주 심의(서울시 내부)
	'23.06.	총사업비 등록(3,000억원)
	'23.07. ~ 11.	총사업비 1차 조정(4,283억원) 및 KDI 설계 적정성 검토
2024	'23.12. ~ '24.02.	1, 2차 턴키공사 입찰 공고(무응찰 유찰 2회)
	'24.02.	총사업비 2차 조정(단가 및 사업 조정, 5,005억원)
	'24.03. ~ '24.04.	3, 4차 턴키공사 입찰 공고(단독입찰 유찰 2회)
	'24.04.	단독입찰에 따라 입찰 재공고(계약방법 변경 : 경쟁 → 수의)
	'24.9. ~ 10.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적격심의
2025	'24.11. ~ '25.05.	본공사 실시설계
	'24.12.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25.06.	본 공사 실시설계 적격 심의
	'25.07.	각종 영향평가 협의(지하안전, 재해, 소규모환경 평가 등) 진행
	'25.08.	실시설계 적격심의 조치결과 제출
	'25.09.	발주기관 검토가격 통보
	'25.10.	본 공사 계약 체결
	'25.11.	2차공사 착수, 주민설명회 실시
'25.12.	우선시공분 준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8월 기준 2차례의 사업비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는 3,000억원에서 5,00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기존 2023~2027년에서 2023~2028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사업구간도 기존 보라매공원 ~ 대방펌프장(2개 구간)에서 보라매공원~노량진 수도자재센터(1개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용]

구분	당초 계획(2023년)	변경 후 계획(2025년)
총사업비	3,000억원	5,005억원
사업구간	보라매공원~샛강역 동광교회 ~대방 펌프장	동작구 보라매공원(도림천)~ 노량진동 수도자재센터(한강)
사업기간	2023~2027년	2023~2028.12. (시운전기간 기간 12개월 별도)
사업내용	L = 3.0km, D = 8.5m (V=17.0만 <sup>m</sup> ) L = 2.2km, D = 3.2m (V= 1.7만 <sup>m</sup> )	L = 4.5km, D = 10.4m (V=40.1만 <sup>m</sup> )
주요시설	수직구 : D=8.5m(2개소), D=4.0m(3개소)	수직구 : D=12.0m(3개소), D=10.4m(1개소), D=8.5m(1개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 실행 부진이 문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편성된 설계비 예산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30억 3,100만원도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24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5억원을 전액 서울시에 교부하였으나 서울시는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만 집행하였을 뿐 기후에너지환경부 교부예산은 전액 2025년도로 이월 처리하였다.

2025년 동 사업에 편성된 국비 50억원은 전액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이는 당초 2024년 12월 착공 예정이었던 우선 시공분 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sup>12)</sup>였고, 전액 서울특별시에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토지보상비 집행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전액 미교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교부된 국비 50억원은 2025년 12월 전액 서울시·경기도의 하천편입토지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집행되었다.

12)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내 지목별 소요면적에 대하여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지방비와의 매칭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비 50억원을 편성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 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 목 코드	
전용 (2025.12.2)	<b>도립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5338-309)</b>	<b>330-03</b>	<b>5,000,000</b>	<b>하천편입토지보상 (5333-461)</b>	<b>410-00</b>	<b>소송판결금 지급</b>
	하천재해복구비 (5340-330)	420-01	396,000	하천편입토지보상 (5333-461)	410-00	소송판결금 지급
	하천재해복구비 (5340-330)	420-01	1,066,000	하천편입토지보상 (5333-461)	410-00	소송판결금 지급
	하천재해복구비 (5340-330)	420-03	8,286,805	하천편입토지보상 (5333-461)	410-00	소송판결금 지급
	하천재해복구비 (5340-330)	420-05	155,000	하천편입토지보상 (5333-461)	410-00	소송판결금 지급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 사업은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109억 4,200만원 중 88억원이 감액되어 21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2026년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5,000	10,942	2,142	△8,800	<p>○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109억 4200만원)은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303억원)할 것으로 보이며, '26년에는 공사비 등으로 약 21억원(국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인 바, 이를 감안하여 88억원 감액</p> <p>* 도림천 유역의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분류인 한강으로 배출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지자체 자본보조, 25%)</p> <p>[ 2026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소요예산 변경 현황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2026년</th> </tr> <tr> <th>당초예산안 (A)</th> <th>검정계획 (B)</th> <th>이월예산액 (C)</th> <th>소요예산안 (B-C, D)</th> <th>조정필요액 (D-A)</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43,788</td> <td>38,882</td> <td>30,300</td> <td>8,582</td> <td>△35,186</td> </tr> <tr> <td>국비(25%)</td> <td>10,942</td> <td>9,720</td> <td>7,575</td> <td>2,145</td> <td>△8,797</td> </tr> <tr> <td>지방비(75%)</td> <td>32,836</td> <td>29,162</td> <td>22,725</td> <td>6,437</td> <td>△26,389</td> </tr> </tbody> </table> <p>※ 서울시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재협의 후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예정</p>	구분	2026년					당초예산안 (A)	검정계획 (B)	이월예산액 (C)	소요예산안 (B-C, D)	조정필요액 (D-A)	합계	43,788	38,882	30,300	8,582	△35,186	국비(25%)	10,942	9,720	7,575	2,145	△8,797	지방비(75%)	32,836	29,162	22,725	6,437	△26,389
구분	2026년																																
	당초예산안 (A)	검정계획 (B)	이월예산액 (C)	소요예산안 (B-C, D)	조정필요액 (D-A)																												
합계	43,788	38,882	30,300	8,582	△35,186																												
국비(25%)	10,942	9,720	7,575	2,145	△8,797																												
지방비(75%)	32,836	29,162	22,725	6,437	△26,389																												

자료: 2026회계연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따라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지역지원계정)<sup>1)</sup>은 생태자원이 우수한 국립공원에 체험, 교류, 교육 등 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11억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생태관광 체험시설 조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13,678	13,678	-	-	13,678	13,546	42	90	11,970
생태관광 체험시설 조성	11,104	11,104	-	-	11,104	11,104	-	-	9,39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국립공원 내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탐방원이란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국민들에게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생태체험 종합시설이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3-301의 내역사업

[2025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계약일 ~ 2026.12.31.
사업예산	11,104백만원
사업대행자	국립공원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역무대행)
사업대상	계룡산, 속리산, 태안해안,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 - (주요기능) 생태관광자원 체험 및 교육 등 - (주요시설) 강의실, 체험학습실, 사무실, 생활관 및 옥외 체험공간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까지 총 9개의 생태탐방원이 조성완료되었으며, 2025년에는 4개의 생태탐방원이 조성 중에 있었으며, 2025년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조성완료되었다. 2026년에는 덕유산, 주왕산에 신규로 생태탐방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5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개요]

구분	공원명	조성 위치	수용인원 (명)	대지면적 (㎡)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북한산	서울 도봉구	숙박84명 (교육216명)	11,173	'10~'11년	10,700	'11.08.준공 '11.06.개원
2	지리산	전남 구례군	숙박104명 (교육328명)	31,523	'12~'14년	12,000	'14.12.준공 '15.03.개원
3	설악산	강원 인제군	숙박96명 (교육298)	25,281	'13~'17년	11,880	'17.10.준공 '18.04.개원
4	소백산	경북영주 시	숙박96명 (교육214명)	15,624	'13~'17년	13,170	'17.09.준공 '18.05.개원
5	가야산	경북성주 군	숙박88명 (교육100명)	93,701	'14~'18년	8,763	'17.11.준공 '18.11.개원
6	무등산	광주북구	숙박72명 (교육280명)	23,891	'14~'18년	14,644	'18.07.준공 '18.11.개원
7	한려 해상	경남 통영시	숙박86명 (교육208명)	24,311	'14~'18년	14,678	'18.06.준공 '18.10.개원
8	내장산	정북 정읍시	숙박84명 (교육220명)	24,662	'15~'19년	12,700	'19.08.준공 '19.11.개원
9	변산 반도	전북 부안군	숙박127명 (교육100명)	24,000	'19~'23년	16,600	'23.06.준공 '23.07.개원
10	계룡산	충남 공주시	숙박66명 (교육60명)	27,027	'21~'25년	19,900	'25.07.준공 '25.12.개원
11	속리산	충북 괴산군	숙박72명 (교육80명)	24,095	'22~'26년	14,100	공사중 '26.12. 준공예정
12	태안 해안	충남 태안군	숙박80명 (교육80명)	28,418	'23~'28년	17,600	공사착공 '28.12. 준공예정
13	월출산	전남 영암군	숙박72명 (교육100명)	28,560	'23~'28년	17,800	실시설계 '28.12. 준공예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이 국가사무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사업범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sup>2)</sup>,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용
설치목적	·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
계정구분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예산 편성 절차 <sup>1)</sup>	<pre> graph TD     A[지방자치체] -- "소관부처와 지방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4.30까지)" --&gt; B[부처]     A -- "지방위의 평가결과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gt; C[지방위]     B -- "지자체신청 및 지방위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5.31까지)" --&gt; D[기획예산처]     C -- "예산편성 관련의견을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통보 (6.15까지)" --&gt; E[과기정통부]     E -- "R&amp;D사업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6.30까지)" --&gt; D     </pre>

주: 1) 일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한이므로 당해연도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은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편성되며, 계정 내 사업은 모두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구체적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사업범위는 ①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과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sup>1)</sup>]

- ①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용자
- ②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③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④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⑤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⑥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⑦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⑧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 ⑩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⑪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⑫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⑭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⑮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⑯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주: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자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한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역무대행으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이며,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탐방원에 숙박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 명소 탐방, 마을 체험<sup>3)</sup>, 지역 밥상 제공 등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탐방객 체류시간 극대화를 통한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 상생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성사업을 통해 완성된 생태탐방원은 그 관리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며, 생태탐방원 이용수입도 국립공원공단에 귀속<sup>4)</sup>된다. 2025년 기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1831-306)에서 생태탐방원 사업수입 30억 1,300만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생태탐방원 운영비용 54억 3,900만원도 동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다.

또한,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 중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은 대부분 출연·보조 또는 용자의 형태로 추진될 것을 규정하며,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제6호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은 출연·보조 또는 용자 형태의 사업일 것으로 규정된 반면,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공단을 통한 직접수행사업으로 그 형식에도 벗어난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본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3-302)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이 202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과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세부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된 사업이나, 그 사업의 성격이 지역지원계정의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3) 사과 따기, 도자기 체험, 인삼주 만들기, 전통 한복체험 등

4) 2025년 기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1831-306)에서 생태탐방원 사업수입 30억 1,300만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음.

## 가. 현황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사업<sup>1)</sup>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곰 사육 종식 및 동물원 이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제한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69억 2,400만원 중 26.2%인 44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1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생태관광 체험시설 조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	51,825	51,825	10,052	60	61,937	48,890	6,399	6,648	44,164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10,681	10,681	6,243	-	16,924	4,431	6,344	6,150	2,33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하였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의 내역사업

[「곰 사육 종식 협약」(‘22.1.)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 (지자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 (서천군·구례군)
-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sup>2)</sup>되어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5년 12월 기준 동물단체에서 사육곰 34마리를 매입하였으며, 11개 농가에서 남은 199마리가 사육 중에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199마리 전 개체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성한 사육곰 보호시설은 전남 구례 1개소가 있으며, 동 내역사업을 통해 서천군에 약 70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 예정이다.

[사육곰 보호시설 현황]

구분	면적	사육곰 수용규모	비고
전남 구례	약 24천㎡	약 49개체	
충남 서천	약 85천㎡	약 70개체	2027년 준공 예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곰 사육 종식에 따라 시급히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부터 사업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고, 2025년 집중 호우로 시설공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2024년 1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24일 시행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준비 미흡으로 매년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5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2~2025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900	-	-	50	-	950	-	802	148
2023	7,600	-	802	-	-	8,402	802	7,590	10
2024	7,640	-	7,590	-	-	15,230	8,135	6,243	852
2025	10,681	-	6,243	-	-	16,924	4,431	6,344	6,1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2022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동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9월 발생한 집중호우 사고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에서 2027년까지로 변경되었다.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및 붕괴사고 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츠퍼리) 조성사업
사업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125번지 일원
면적	대지면적 84,846㎡, 건축연면적 4,862㎡
사업내용	동물사(내실 및 방사장), 검역치료센터, 방문자시설 및 사무동 등 설치
총사업비	25,424백만원(공사비 21,648, 보상비 652, 시설부대경비 3,124)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사고일시	2025년 9월 7일(일) 04:30

구분	내용
사고장소	<p>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125번지 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조성사업 현장 내 검역치료센터 건설부지</p>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동 사고로 인해 기성부분의 피해 6억 2,700만원, 사고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1억 3,300만원이 발생하여 이후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필수시설(급사육동, 검역치료센터 등) 공사를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건물 철거 등 추가 발생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기성부분	철거및폐기물
I.직접공사비	401	356	45
II.간접비	182	162	20
III.관급자재비	109	109	-
IV.폐기물처리비	68	-	68
V.총공사비	760	627	13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2월까지 동 사업의 전체 공정은 52.71% 완료되었으며, 2026년 2월 기준 54.19% 완료되었다.

[2025~2026 월별 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연도	월	전월 공정	금월 공정	누계 공정	비 고
2025	1월	1.06	2.32	3.38	
	2월	3.38	3.99	7.37	
	3월	7.37	5.56	12.93	
	4월	12.93	4.50	17.43	
	5월	17.43	6.29	23.72	
	6월	23.72	5.03	28.75	
	7월	28.75	9.03	37.78	
	8월	37.78	6.76	44.54	
	9월	44.54	4.21	48.75	검역치료동 부상 사고발생
	10월	48.75	1.42	50.17	
	11월	50.17	1.28	51.45	
	12월	51.45	1.26	52.71	
2026	1월	52.71	1.38	54.09	
	2월	54.09	0.1	54.1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2025년동안 전체 공정의 50%를 완료하였으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고품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이 손상되고 손상된 시설 철거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 월별 공사 추진현황을 봤을 때 2026년 2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공사 진척도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까지 필수시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사업<sup>1)</sup>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곰 사육이 종식됨에 따라 몰수되는 사육곰 및 유기·방치되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4,300만원 중 99.6%인 8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생태관광 체험시설 조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9,275	29,275	465	△60	29,680	29,205	159	316	24,917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843	843	-	-	843	840	-	3	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이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시설공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11월에 다수의 자산을 취득하였는바, 향후에는 공정률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적기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4의 내역사업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사업은 보호시설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 의료기기 5억 3,900만원, 검역장비 1억 5,400만원, 사육관리 장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사업 개요]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사업목적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과 동시에 동물 입식 및 관리를 위해 의료 장비 구입 필요
사업기간	2025년(단년도 사업)
사업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125 일대
사업비	843백만원(자산취득비) * 동물병원 의료기기(539백만원), 검역장비(154백만원), 사육관리 장비(15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초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자산취득을 진행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 고가의 장비들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5년 9월 집중호우 사고로 인해 보호시설 일부가 손상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 이후에도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2025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남은 사업예산 4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다른 자산을 전부 취득하였다.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사업 자산별 취득 현황]

(단위: 천원)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지출금액	지출일자	취득일자
합계	839,049	-	839,049	-	-
동물이송케이지	49,700	'25.04.18	49,700	'25.07.28	'25.07.24
동물용이동형초음파진단장치	42,900	'25.04.11	42,900	'25.05.21	'25.05.14
건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18,700	'25.04.16	18,700	'25.06.02	'25.05.22
안압계	8,300	'25.05.16	8,300	'25.05.28	'25.05.22
현미경	27,906	'25.05.23	27,906	'25.07.31	'25.07.30

(단위: 천원)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지출금액	지출일자	취득일자
원심분리기, 유전자증폭장치	42,240	'25.05.23	42,240	'25.07.30	'25.07.29
검역장비	34,004	'25.05.09	34,004	'25.07.08	'25.06.26
수익용위장비디오내시경	49,995	'25.05.22	49,995	'25.07.17	'25.07.02
포터블엑스레이	12,100	'25.05.28	12,100	'25.07.03	'25.06.27
가스흡입식전신마취기, 환자감시장치	42,000	'25.05.29	42,000	'25.08.11	'25.08.08
동물의료용치과영상출력기	21,857	'25.05.23	21,857	'25.09.22	'25.09.20
<b>응급의료장비</b>	<b>46,530</b>	<b>'25.11.06</b>	<b>46,530</b>	<b>'25.12.22</b>	<b>'25.12.08</b>
<b>영상진단장비</b>	<b>27,000</b>	<b>'25.11.06</b>	<b>27,000</b>	<b>'25.12.15</b>	<b>'25.12.08</b>
<b>혈액검사장비</b>	<b>42,000</b>	<b>'25.11.12</b>	<b>42,000</b>	<b>'25.12.11</b>	<b>'25.12.08</b>
<b>대동물용 마취장비</b>	<b>46,850</b>	<b>'25.11.19</b>	<b>46,850</b>	<b>'25.12.15</b>	<b>'25.12.08</b>
<b>마취총 보관함</b>	<b>3,333</b>	<b>'25.11.06</b>	<b>3,333</b>	<b>'25.12.30</b>	<b>'25.12.08</b>
<b>지게차</b>	<b>49,500</b>	<b>'25.11.12</b>	<b>49,500</b>	<b>'25.12.22</b>	<b>'25.12.08</b>
<b>노령동물치료장비</b>	<b>4,750</b>	<b>'25.11.18</b>	<b>4,750</b>	<b>'25.12.22</b>	<b>'25.12.01</b>
<b>찬장</b>	<b>1,720</b>	<b>'25.11.18</b>	<b>1,720</b>	<b>'25.12.22</b>	<b>'25.12.19</b>
<b>식기건조대</b>	<b>19,800</b>	<b>'25.11.18</b>	<b>19,800</b>	<b>'25.12.22</b>	<b>'25.12.19</b>
<b>가정용전기레인지</b>	<b>209</b>	<b>'25.11.18</b>	<b>209</b>	<b>'25.12.22</b>	<b>'25.12.19</b>
<b>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b>	<b>5,920</b>	<b>'25.11.18</b>	<b>5,920</b>	<b>'25.12.22</b>	<b>'25.12.19</b>
<b>냉장고(634L)</b>	<b>3,900</b>	<b>'25.11.18</b>	<b>3,900</b>	<b>'25.12.22</b>	<b>'25.12.19</b>
<b>냉장고(516L)</b>	<b>3,600</b>	<b>'25.11.18</b>	<b>3,600</b>	<b>'25.12.22</b>	<b>'25.12.19</b>
<b>냉장고</b>	<b>1,996</b>	<b>'25.11.18</b>	<b>1,996</b>	<b>'25.12.22</b>	<b>'25.12.19</b>
<b>공기청정기</b>	<b>8,715</b>	<b>'25.11.18</b>	<b>8,715</b>	<b>'25.12.22</b>	<b>'25.12.19</b>
<b>동력예취기</b>	<b>19,800</b>	<b>'25.11.18</b>	<b>19,800</b>	<b>'25.12.22</b>	<b>'25.12.19</b>
<b>카메라용렌즈, SEL2470GM</b>	<b>3,800</b>	<b>'25.11.18</b>	<b>3,800</b>	<b>'25.12.22</b>	<b>'25.12.19</b>
<b>카메라용렌즈, SEL100400GM</b>	<b>5,000</b>	<b>'25.11.18</b>	<b>5,000</b>	<b>'25.12.22</b>	<b>'25.12.19</b>
<b>육외용벤치</b>	<b>9,900</b>	<b>'25.11.18</b>	<b>9,900</b>	<b>'25.12.22</b>	<b>'25.12.19</b>
<b>액정모니터</b>	<b>5,580</b>	<b>'25.11.18</b>	<b>5,580</b>	<b>'25.12.22</b>	<b>'25.12.19</b>
<b>문서세단기</b>	<b>723</b>	<b>'25.11.18</b>	<b>723</b>	<b>'25.12.22</b>	<b>'25.12.19</b>
<b>비디오프로젝터</b>	<b>4,290</b>	<b>'25.11.18</b>	<b>4,290</b>	<b>'25.12.22</b>	<b>'25.12.19</b>
<b>접이식의자</b>	<b>6,180</b>	<b>'25.11.18</b>	<b>6,180</b>	<b>'25.12.22</b>	<b>'25.12.19</b>
<b>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b>	<b>4,120</b>	<b>'25.11.18</b>	<b>4,120</b>	<b>'25.12.22</b>	<b>'25.12.19</b>
<b>텔레비전</b>	<b>3,660</b>	<b>'25.11.18</b>	<b>3,660</b>	<b>'25.12.22</b>	<b>'25.12.19</b>
<b>캠코더</b>	<b>2,300</b>	<b>'25.11.18</b>	<b>2,300</b>	<b>'25.12.22</b>	<b>'25.12.19</b>
<b>제습기</b>	<b>1,155</b>	<b>'25.11.18</b>	<b>1,155</b>	<b>'25.12.22</b>	<b>'25.12.19</b>

(단위: 천원)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지출금액	지출일자	취득일자
상업용식기세척기	2,100	'25.11.18	2,100	'25.12.22	'25.12.19
주방기구소득기	305	'25.11.18	305	'25.12.22	'25.12.19
상업용조리대1	4,700	'25.11.18	4,700	'25.12.24	'25.12.22
상업용조리대2	2,300	'25.11.18	2,300	'25.12.29	'25.12.22
상업용싱크대1	8,750	'25.11.19	8,750	'25.12.24	'25.12.22
상업용싱크대2	782	'25.11.19	782	'25.12.22	'25.12.19
전기화물트럭	44,580	'25.11.19	44,580	'25.12.15	'25.12.10
전기다목적승용차	42,310	'25.11.20	42,310	'25.12.15	'25.12.10
전자복사기	8,140	'25.11.21	8,140	'25.12.22	'25.12.19
데스크톱컴퓨터	31,521	'25.11.21	31,521	'25.12.22	'25.12.19
디지털카메라	4,928	'25.11.25	4,928	'25.12.22	'25.12.19
이동식치과용유닛	6,600	'25.04.02	6,600	'25.07.15	'25.07.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공사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추가적인 보관비용을 발생시키고, 보관기간동안 도난·분실·훼손·부적정 사용 등의 우려가 있으며, 고가의 의료장비 등은 보관 과정에서 노후, 손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공사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사업예산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자산을 야생동물 보호시설 위탁 운영 예정인 서천소재국립생태원에 의료장비, 실험장비, 사무비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각기 보관기능에 부합한 시설에 보관관리 중이며, 원심분리기와 유전자증폭장치 등 실험장비들은 실험실(전문보관장소)에 보관 중이고, 향후 사용개시 전 검교정 등을 통해 장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설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시설의 공정률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적기에 자산 등을 취득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sup>1)</sup>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361억 8,700만원 중 96.6%인 34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4,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8,953	53,604	514	-	54,118	51,655	548	1,915	64,078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1,536	36,187	-	-	36,187	34,945	-	1,242	44,84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경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저공해 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장 총량 관리제도 운영,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첨단감시장비 운영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등의 1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역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4·5종 사업장<sup>2)</sup>)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의 내역사업

2)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려는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기후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훈령 제 1323호),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사업비	<p>31,536백만원(국비)</p> <p>〈산출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백만원(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방지시설 설치비)×220개소(지원사업장수)×50%</li> <li>○ 720백만원(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지원 방지시설 설치비)×10개소(지원사업장수)×50%</li> <li>○ 40백만원(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지시설 설치비)×20개소(지원사업장수)×50%</li> <li>○ <b>4백만원(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7,268개소(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수)×50%</b></li> <li>○ 100백만원(연료전환 지원)×20개소(지원사업장수)×50%</li> <li>○ 100백만원(대·중소 지역대기질개선 상생협력 방지시설 등 설치비)×50개소(지원사업장수)×20%</li> </ul> <p>※ 별도 추경예산: 국비 4,651백만원(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부착지원)</p>
지원형태	<p>지자체 자본보조(국고보조금 50%, 지방비 40%, 자부담 10%)</p> <p><b>*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25년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 시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적용</b></p> <p>** 대중소 지역대기질개선 상생협력 사업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10% 적용</p>
추진절차	교부신청(지자체)→교부(지방·유역청)→집행(지자체)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b>4종 사업장</b>	<b>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b>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sup>3)</sup>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대기 4, 5종)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감시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 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가동개시를 신고한 사업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sup>4)</sup>.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원심력집진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 부칙 제2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이하 “중견사업자”라 한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 및 기한]

구분	내용		
부착대상	아래 방지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부착기한	가동개시일자	사업장 종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법 시행 이전 가동개시 사업장(~22.5.2.)	4종	'25.6.30.까지
		5종	
	법 시행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22.5.2.~)	4종	'23.6.30.까지
		5종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7억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46억 5,100만원만 반영되어 총 191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5회계연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기후부 증액요청안	국회 확정안
총 예산	· 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 7,268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수) × 국고보조율 50% = 14,536	· 14,536 + <b>17,700</b> = 32,236	· 14,536 + <b>4,651</b> = 19,187
증액 내역	-	· 4백만원 × 8,850개소 × 국고보조율 50% = 17,700백만원	· 4백만원 × 2,907개 × 국고보조율 40% = 4,651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50%에서 40%로 감소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자부담률은 10%에서 40%로 늘어나 자부담액이 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조기 이행 사업장(부착기간 연장 이전 부착 사업장)과 부착기간 연장 이후 부착 사업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변경한 것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 보조율 현황]

구분	국고보조금(비율)	지방비 비율(비율)	자부담 비율(비율)
2025 본예산	200만원(50%)	160만원(40%)	40만원(10%)
2025 추경 이후	160만원(40%)	80만원(20%)	160만원(4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2025년 12월 기준 사업 실적행률이 60%에 못미치고, 의무 불이행률이 30%에 달하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에 대한 설치 지원을 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사업 실적행률은 59.1%로 저조한 상황이다.

[2025회계연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B)	
합계	14,536	19,187	19,187	<b>19,187</b>	<b>11,338</b>	<b>59.1</b>
서울	218	218	218	218	168.6	77.3
부산	625	753	753	753	599.9	79.7
대구	621	781	781	781	247.7	31.7
인천	1,177	1,337	1,337	1,337	1,076.1	80.5
광주	116	180	180	180	115.7	64.3
대전	121	361	361	361	119.9	33.2
울산	296	653	653	653	291.9	44.7
세종	39	39	39	39	38.6	99.1
경기	5,088	6,483	6,483	6,483	4,051.9	62.5
강원	320	320	320	320	270.1	84.4
충북	1,274	1,674	1,674	1,674	1,052.4	62.9
충남	1,007	1,007	1,007	1,007	778.6	77.3
전북	595	947	947	947	502.3	53.0
전남	524	604	604	604	507.5	84.0
경북	1,277	1,341	1,341	1,341	367.1	27.4
경남	1,156	2,407	2,407	2,407	1,075.4	44.7
제주	82	82	82	82	74.3	90.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의무 대상 사업장 39,3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수는 27,306개소이고, 12,013개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의무 불이행률이 30.6%에 달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 의무이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의무 대상 사업장수	이행 사업장수	불이행 사업장수	불이행률
<b>합계</b>	<b>39,319</b>	<b>27,306</b>	<b>12,013</b>	<b>30.6</b>
서울	699	631	68	9.7
부산	1,619	1,203	416	25.7
대구	1,515	1,006	509	33.6
인천	3,146	1,407	1,739	55.3
광주	571	460	111	19.4
대전	398	302	96	24.1
울산	751	595	156	20.8
세종	201	180	21	10.4
경기	14,015	9,378	4,637	33.1
강원	932	839	93	10.0
충북	2,804	1,972	832	29.7
충남	2,710	1,751	959	35.4
전북	1,490	1,159	331	22.2
전남	1,428	1,003	425	29.8
경북	3,279	2,411	868	26.5
경남	3,551	2,817	734	20.7
제주	210	192	18	8.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착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은 부착계획,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sup>5)</sup>하였으며, 2026년에도 17,095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73억 4,900만원을 편성<sup>6)</sup>하였다.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부칙 제2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6) 편성내역: 4백만원 × 17,095개 × 40% = 27,349백만원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무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한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집행률 제고를 통해 의무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노후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sup>1)</sup>은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70억 1,300만원 중 89.6%인 152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42,366	42,366	1,506	-	43,872	40,202	2,437	1,232	31,376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16,781	16,781	232	-	17,013	15,251	1,146	615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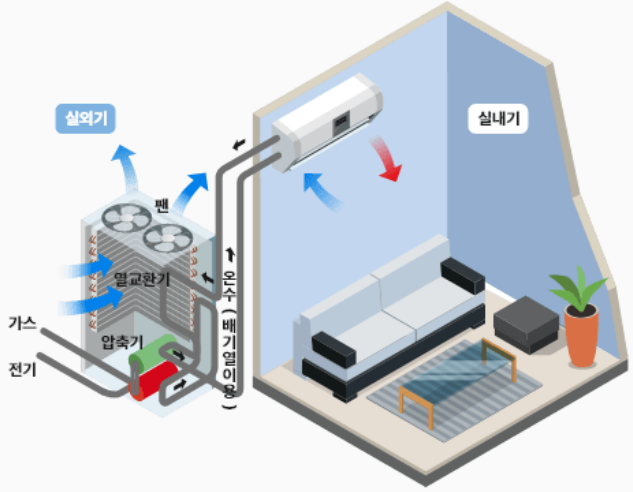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경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부문의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악취실태조사’,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총 1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역사업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가스히트펌프(Gas Heat Pump, GHP)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구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3의 내역사업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요]

구분	내용
정의	-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장점	- 낮은 전기소비량과 저운전비로 높은 경제성 발휘 (전기히트펌프 대비 전기소비량 1/10, 운전비 약 70%) - 저렴한 운전비로 EHP <sup>1)</sup> 와의 투자비차액을 2~4년이면 회수가 가능함 -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없고, 옥상 또는 외부에 실외기 설치 가능
단점	- 엔진을 가동하여 압축기를 기동해 배기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정기적으로 엔진오일, 필터, 벨트, 점화플러그 교환 등 주기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이 발생
참고자료	

주: 1) Electric Heat Pump, 전기히트펌프

GHP는 2011년 전후부터 전력피크 완화와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 속에서 학교, 공공기관, 중소형 건물 중심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GHP가 질소산화물, 메탄 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GHP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제되면서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었고, 해당 의무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내역사업이 추진되었다.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추진경위]

연도	주요 내용
2011년 전후	- 전력피크 완화와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 속에서 GHP가 학교·공공기관·중소형 건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됨
2010년대	- GHP가 냉난방 설비로 계속 보급되며, 설치 편의성·전력대체 효과 때문에 현장 수요가 유지됨
2020년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사업 관련 규정 정비가 논의되기 시작함
2021년	-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됨
2021년 9월	- 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방향의 제도개편이 예고됨
2021년 말	- 환경부가 2022년도 예산에 GHP 저감장치 개조지원사업을 반영함
2022년 상반기	- 교육부-환경부 협력 아래 학교 등 공공시설 중심 시범·초기 지원이 추진됨
2022년 6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며 제도 전환이 본격화됨
2022년 하반기	- GHP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지자체 공고 형태로 확산됨
2023년	- 기존 설치 GHP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반복 추진됨
2024년	- 공공·민간 건물 대상 지원사업이 2차, 3차 공고로 이어짐
2025년 1월	- 기존 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본격 적용되는 단계에 들어감

동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지원을 통해 자부담이 10%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 나. 분석의견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은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2025년 실적행률이 65%로 저조하고,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GHP도 15.6%에 달하고 있으며, 16년 이상 노후화된 GHP도 다수 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GHP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3년에 시작되어 2025년 종료되는 사업이나,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실적행률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다. 2023년에는 제도시행 초기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제작사 최초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23.11월 1개사 최초인증, '24.1월 4개사 인증)으로 거의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이후에도 실적행률은 60% 전후로 유지되었고, 3년간 불용액도 48억 9,400만원에 달했다.

[2023~2025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적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3	8,750	8,328	-	8,328	-	8,328	-	8,169	159	-
2024	17,500	17,483	8,175	25,658	17,886	17,483	10,482	6,499	1,273	59.9
2025	15,635	15,022	6,494	21,516	15,477	15,022	9,764	2,577	3,462	6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2월 기준 관리대상 GHP 57,916대 중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48,854대로 미부착률은 15.6%이다. 다만,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대상은 '22.12.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지만, 16년 이상 운영된 노후 GHP의 경우 노후화 정도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의무이행 현황<sup>1)</sup>

(단위: 대, %)

계	신규제품 <sup>2)</sup> (저감장치 有) (‘23~’25)	부착대상			노후제품 <sup>3)</sup> (16년 이상)
		소계	부착 완료	부착 미완료	
106,482	25,354	57,916	48,854	9,062	23,212

주: 1) 2025년 12월 기준

2) 2023년 이후 제품의 경우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됨

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을 의미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2025년 12월 기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미부착률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 서울 등은 미부착률이 10%대로 양호하나, 경북, 부산 등은 미부착률이 30% 내외로 의무이행률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부산의 경우 대도시로서 면적 대비 GHP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의 경우 미부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GHP 설치대수가 14,997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 대수도 3,120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회계연도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지역별 의무이행 현황<sup>1)</sup>

(단위: 대, %)

지역	GHP 설치대수	저감장치 설치대수	저감장치 미부착	미부착률
<b>합계</b>	<b>57,916</b>	<b>48,854</b>	<b>9,062</b>	<b>15.6</b>
서울	10,804	9,839	965	8.9
부산	2,871	2,173	698	24.3
대구	2,539	2,287	252	9.9
인천	3,868	3,396	472	12.2
광주	1,496	1,271	225	15.0
대전	2,449	2,279	170	6.9
울산	2,772	2,439	333	12.0
세종	1,137	929	208	18.3
경기	14,997	11,877	3,120	20.8
강원	1,488	1,213	275	18.5
충북	1,839	1,557	282	15.3
충남	1,799	1,769	30	1.7

(단위: 대, %)

지역	GHP 설치대수	저감장치 설치대수	저감장치 미부착	미부착률
전북	1,998	1,710	288	14.4
전남	1,389	1,181	208	15.0
경북	3,350	2,305	1,045	31.2
경남	2,907	2,419	488	16.8
제주	213	210	3	1.4

주: 1) 2025년 12월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5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되기 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당시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GHP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히 유예기간을 부여(~'26.12.31)하였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2022.6.30.> 제3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종전운영자”라 한다)는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스열펌프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에 관한 계획**(이하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 인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한”이라 한다)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한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등에게 한 차례만 개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GHP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배출 문제는 저감장치가 미부  
착된 GHP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는 중대한 사안  
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착 미완료된 GHP 및 노후 GHP를 신규 GHP로 교  
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GHP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sup>1)</sup>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환경친화적 재활용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5억 8,100만원 중 6.8%인 5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8,748	8,748	4,487	-	13,235	6,167	2,550	4,518	26,081
전기차 전주 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 터 구축	3,094	3,094	4,487	-	7,581	513	2,550	4,518	17,23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EU에서 배터리법 시행<sup>(23.8.)</sup>에 따라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 전주기 전자기록 제시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여권제<sup>2)</sup>가 2027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EU 등 통상규제 대응을 위한 부처합동대책<sup>3)</sup>을 발표하였고, 2027년까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구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15의 내역사업

2) 제조-유통-운행-재활용 등 배터리 수주기 동안의 이력관리(재생원료 사용, 탄소발자국 등)

3)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sup>(24.7.10, 기재·환경·국토·산업부)</sup>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2년 ~ '27년(6년)
사업부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내
사업비	233억원(국비 121억원, 지방비 12억원)
사업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는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조사·분석·연구, 교육·홍보 등 사용자 총괄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통상규제 대응 및 국내 산업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및 시스템 주요 기능]

- **(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조사·분석·연구, 교육·홍보 등 **사용자 총괄지원체계 구축**으로 **통상규제 대응 및 국내 산업육성 지원**
  - ① **(운영·관리)** 배터리 여권센터 운영, 국내외 규제 **상호인증 체계 구축**,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용자 민원 대응 등
  - ② **(조사·분석·연구)** EU 배터리 여권제 등 관련 **제도 대응 방안 연구**, 현장검증 등을 통한 LCI·DB<sup>1)</sup> 분석 시 국내 DB 구축 필수)갱신
  - ③ **(교육·홍보)**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대상으로 LCA 분석도구 프로그램 실습 등 **교육 운영** 및 정책 홍보 전시·체험관 운영
- **(시스템)** 전기차 및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전과정평가 기반 **탄소발자국 계산**, 기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 ① **(이력관리)** 쉐주기 **이력 데이터를 연계·수집한 통합환경정보** 관리
  - ② **(전과정평가)**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통합LCI·DB)** 구축 및 자동차 전주기 단계별 탄소발생량 산정·검증
  - ③ **(정보제공)** 여권정보, 탄소발자국, 안전·성능정보 등 **통계·예측정보 제공**

주: 1)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 제품/서비스의 전주기 동안의 투입·배출물(양)을 목록화한 데이터로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분석 시 국내 DB 구축 필수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54억 1,900만원이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이후 건축물 내 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면적 감소 및 임대사무실, 전산실 등을 삭제하여 공사비 감액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사업비가 425억 6,7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26년 4월에는 총사업비 2차 조정협의 결과 시스템 구축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총사업비가 233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증감내역)
				%	
총사업비	45,419	23,251	△22,168	△48.8	(당초) 건설 및 시스템구축 (변경) 시스템구축 부문을 총사업비에서 제외(일반사업으로 추진)
사업기간	'22~'27	'22~'27	-	-	
사업내용 (연면적)	6,825㎡	5,921㎡	△904	△13.2	임대사무실, 전산실 등 삭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 2024	2025	2026	2027
<총사업비>	23,251	2,221	14	8,005	13,011
설계비	969	969			
공사비	19,281			7,462	11,819
감리비	1,693			501	1,192
부대비	68	12	14	42	
보상비(지방비)	(1,240)	(1,24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조달청 적정성검토 및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협회가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집행이 저조하고, 2026년 공사 일정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3년 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다. 먼저 동 사업은 2023년 10월 수시배정 후 총사업비 등록, 공공건축 심의 등 필수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 2024년 3월에 설계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2023년 예산 10억원을 이월하였다. 이후 2024년은 설계 미준공<sup>4)</sup>에 따라 2024년 공사비 등 44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년에는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절차가 연내 미완료 되어 2025년 예산 45억 1,800만원<sup>5)</sup>을 불용처리 하였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추진 경과]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3년	예산수시배정(10월, 기재부) → 총사업비 신규등록(11월) → 맞춤형서비스 체결(11월, 조달청) → 설계공모 사전협의, 공공건축사업계획 심의(11월, 조달청) → 설계공모(12월, 조달청)
'24년	설계공모결과 승인(2월, 조달청)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3월)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8~10월, 조달청)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4.12~'25.2., 조달청)
'25년	1차 총사업비 조정협의(3~7월, 기재부)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8~11월, 조달청) → 2차 총사업비 사전협의(11월~'26.4월, 기재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2025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 결산 현황]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1,000	-	1,000	93	1,093	85	1,000	8
2024	5,000	-	5,000	1,000	6,000	1,482	4,487	31
2025	3,094	-	3,094	4,487	7,581	513	2,550	4,51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동 사업은 2026년 예산 심의 당시 2025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10월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172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11월부터 2차 총사업비 사전협의를 실시함에 따라 2025

4) 설계기간: 2024년 3월 ~ 2025년 9월

5) 2024년 이월예산 39억 7,400만원, 2025년 본예산 5억 4,400만원

년 공사비 전액을 이월 및 불용하였고, 2026년 4월 13일에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재원협의를 완료되었으며, 이후 2026년 8월부터 건설공사 및 시스템 구축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년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환경정보센터 구축 월별 업무 추진 계획]

항목	202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사업비 조정 재원협의												
실시설계용역					설계 준공							
건설공사 착공						공고		계약 착공				
시스템 구축 착공				과업 심의 (자체)	보안성 검토 등	공고		계약 착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 부진 및 예산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2026년에도 당초 예상보다 총사업비 재원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공사 시작 시점이 8월로 늦어지게 되었다.

변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에 약 20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행정절차 지연과 장마 등 기후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sup>1)</sup>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30~50%, 지자체 자본보조)<sup>2)</sup>하여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폐기물 처리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를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866억 1,500만원 중 96.1%인 2,75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8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25,499	286,493	796	-	287,289	276,117	342	10,830	219,61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24,825	285,819	796	-	286,615	275,443	342	10,830	216,94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6의 내역사업

2) 사업별 지자체 보조비율 설정 기준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1) 소각시설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2)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	40	60	
3)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포함)	30 (50)	70 (50)	매립시설은 30%지원
4)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포함)	50	50	
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0	50	
6)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자료: 2023년도 폐기물처리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동 사업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공사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고 공기 단축 효과가 기대되는 7개 사업을 선정하여 609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

[2025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5년 예산 산출내역	'25년 추경안 산출내역
○ 자치단체 자본보조 : 224,825 가. 매립시설 29,417 (계속 15, 신규 2) <b>나. 소각시설 140,477</b> <b>(계속 39, 신규 5)</b> <b>다. 매립지 정비 26,738</b> <b>(계속 8, 신규 4)</b> 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14,781 (계속 6) 마. 친환경에너지타운 10,862 (계속 9, 신규2) 바. 에너지융복합 2,550 (계속 1)	○ 자치단체 자본보조 : 285,819 가. 매립시설 29,417 (계속 15, 신규 2) <b>나. 소각시설 195,771</b> <b>(계속 39, 신규 5)</b> <b>다. 매립지 정비 32,438</b> <b>(계속 8, 신규 4)</b> 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14,781 (계속 6) 마. 친환경에너지타운 10,862 (계속 9, 신규2) 바. 에너지융복합 2,550 (계속 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정확한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였다.

첫째, 2025년 종료 예정 사업에 충분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이 추가편성된 사례가 있다. 김해시 소각시설은 2025년

준공 완료 사업으로, 잔여 공사비 전액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공사비가 불충분하게 편성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였다.

이는 2025년 예산편성시기에서는 총사업비 중 남은 잔여국비 157억 700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총사업비가 992억 8,700만원에서 1,080억 7,4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원 국비도 496억 4,400만원에서 532억 2,700만원으로 증가하여 35억 8,300만원을 더 국비로 보조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김해 소각시설 '25년도 예산편성 및 '24년 말 총사업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25년 예산편성					변경 총사업비 ( '24.12월)		
총사업비	국비(A)	'25년 잔여국비	반영	검토의견	총사업비	국비(B)	차액 (B-A)
99,287	49,644	15,707	15,707	잔여국비 전액 반영	108,074	53,227	3,58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둘째, 2025년 본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여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다. 서산시 소각시설과 목포시 소각시설, 성남시 소각시설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다. 이후 추경안에서 소각로 본체를 현장 외부에서 미리 제작하는 '소각로 사전제작'을 위해 울산, 대구, 목포, 성남에 총 494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5년 5월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기간	현재상황	25년 5월 집행 현황					추경안
			본예산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			59,360	54,063	55,207	26,277	47.6	60,994
남원 매립 정비	25- 27	설계 ( '24.12.~ '25.10.)	300	300	300	10	3.3	5,700
서산 소각	18- 26	공사중 ( '22.11.~ '26.6.)	3,380	3,380	3,380	3,380	100.0	2,766

(단위: 백만원, %)

사업	기간	현재상황	25년 5월 집행 현황					추경안
			본예산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김해 소각	20- 25	공사중 ( <b>'23.01~ '25.12.</b> )	15,707	13,138	13,138	0	0.0	3,095
울산 소각	20- 26	공사중 ( <b>'23.05~ '26.10.</b> )	13,280	13,280	14,312	7,090	49.5	10,000
대구 소각	20- 26	공사중 ( <b>'23.05~ '26.05.</b> )	12,133	10,000	10,112	1,832	18.1	9,433
목포 소각	21-27	공사중 ( <b>'25.02.~ '27.08.</b> )	13,526	12,931	12,931	12,931	100.0	15,000
성남 소각	19-27	공사중 ( <b>'24.08~ '27.11.</b> )	1,034	1,034	1,034	1,034	100.0	15,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셋째,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들 중 2025년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다. 2025년 제2회 추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울산시 소각시설, 성남시 소각시설, 남원시 매립지정비 사업은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남원시 매립지정비 사업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

## [2025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기간	현재상황	본예산	추경안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남원 매립 정비	25- 27	설계 ( <b>'24.12.~ '25.10.</b> )	300	6,000	-	6,000	10	0.2
서산 소각	18- 26	공사중 ( <b>'22.11.~ '26.6.</b> )	3,380	6,800	-	6,800	6,800	100.0

(단위: 백만원, %)

사업	기간	현재상황	본예산	추경안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김해 소각	20- 25	공사중 ( '23.01~ '25.12.)	15,707	18,802	-	18,802	18,802	100.0
<b>울산 소각</b>	<b>20- 26</b>	<b>공사중 ( '23.05~ '26.10.)</b>	<b>13,280</b>	<b>23,280</b>	<b>1,032</b>	<b>24,312</b>	<b>12,601</b>	<b>51.8</b>
대구 소각	20- 26	공사중 ( '23.05~ '26.05.)	12,133	21,566	112	21,678	21,078	97.2
목포 소각	21-27	공사중 ( '25.02.~ '27.08.)	13,526	28,526	-	28,526	28,526	100.0
<b>성남 소각</b>	<b>19-27</b>	<b>공사중 ( '24.08~ '27.11.)</b>	<b>1,034</b>	<b>16,034</b>	<b>-</b>	<b>16,034</b>	<b>8,871</b>	<b>55.3</b>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정확성을 제고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교부하는 등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총 6,110억 9,300만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164,577	164,577	-	-	164,577	164,577	-	-
2024	160,023	160,023	-	-	160,023	155,563	796	3,664
2025	225,499	286,493	796	-	287,289	276,117	342	10,830
계	550,099	611,093	796	-	611,889	596,257	1,138	14,49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고 지원 지자체 선정을 위하여 최적화추진단과 사전 예산협의<sup>3)</sup>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추진의 사전 준비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하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여부, 주민의견 선(先)반영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② 처리시설 계획시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가능여부 ③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진다.

그런데,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적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현액 3,039억 4,200만원 중 1,890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평균 62.2%의 실적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매립시설 설치 및 매립지 정비 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사업<sup>4)</sup>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실적이 더 부진하였다.

3) 사전 예산협의 업무절차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중 발췌)



4)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NIMBY)과 에너지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임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유형별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처리시설 유형별	지자체(보조사업자 집행 기준)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b>매립시설</b>	<b>43,739</b>	<b>5,486</b>	<b>49,225</b>	<b>19,868</b>	<b>27,293</b>	<b>2,064</b>	<b>40.4</b>
소각시설	171,533	15,304	186,837	132,661	48,147	6,029	71.0
음식물처리시설	1,721	-	1,721	1,721	-	-	100
<b>매립지정비</b>	<b>20,822</b>	<b>4,000</b>	<b>24,822</b>	<b>8,446</b>	<b>14,185</b>	<b>2,191</b>	<b>34.0</b>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8,233	100	28,333	20,584	7,649	100	72.7
<b>친환경 에너지타운</b>	<b>9,395</b>	<b>3,609</b>	<b>13,004</b>	<b>5,739</b>	<b>6,849</b>	<b>416</b>	<b>44.1</b>
계	275,443	28,499	303,942	189,019	104,123	10,800	62.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실적행 부진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이외에도 주민민원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2025년도 지자체 실적행이 0%인 집행부진사유]

내역사업명	지자체	부진사유
소각시설	보령시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
소각시설	영동군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25.6~'26.3)
소각시설	옥천군	○ 공법선정 등 행정절차 지연
소각시설	거창군	○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에 시간 소요('26.1월 완료)
소각시설	합천군	○ 실시설계 후 재원조정 검토·협의를 시간 소요('24.7~)
소각시설	장흥군	○ 시설용량 변경(30→25톤일)에 따른 설계내역 조정, 재원협의 등 시간 소요
소각시설	남양주시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지연
매립지정비	세종시 (유천리)	○ 지방비 미확보로 예산 미집행(지자체 재정 어려워 우선순위에서 밀림)
매립지정비	고령군 (순환형)	○ 사업방식 변경(재정→민투)함에 따라 사업 중단

내역사업명	지자체	부진사유
매립지정비	청도군 (원정리)	○ 건설기술심의 지연
매립지정비	청도군 (순환형)	○ 기술공법 선정 지연으로 실시설계 지연
매립지정비	장성군	○ 설계용역 발주절차 지연
친환경에너지타운	부안군	○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무안군	○ 사업 취소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태백시	○ 설계 변경으로 사업 지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주민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별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나 주민협의 지연, 집행 경과 등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교부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 차질없는 건강피해조사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가. 현 황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sup>1)</sup>은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재결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2025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1,000만원 중 76.9%인 1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2,110	2,110	-	-	2,110	1,623	23	464	1,99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1991년에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24.3.19.)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2025년에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7138-302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24.3.19 시행) 제4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소속	-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시·도에 두는 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기능	<p>-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관련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p> <p>▶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피해조사</li> <li>2. 환경분쟁의 조정</li> <li>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li> <li>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li> <li>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li> <li>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li> <li>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li> </ol>
위원회 구성	<p>-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지방위원회는 30명 이내)</p> <p>*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며,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p>
분과위원회	<p>-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직도〉</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포함 100명 이내, 대통령 임명·위촉, 2년)"]     B["건강피해조사 분과위원회"]     C["환경오염 분야"]     D["석면분야"]     E["살생물제 품분야"]     F["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G["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     H["조정·재정·중 재위원회"]      A --- B     A --- C     A --- D     A --- E     C --- F     D --- F     E --- F     F --- G     A --- H     </pre> </div>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각 법률·기관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였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전후 수행 주체 비교]

구분	(기존) 환경분쟁조정	(이관, 신규) 건강영향조사(청원)	(이관, 신규)피해구제		
			석면	환경오염	살생물제품
근거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91~)	환경보건법 (‘09~)	석면피해구제법 (‘11~)	환경오염피해구 제법 (‘16~)	화학제품안전법 (‘21~)
목적	국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환경피해의 모니터링	피해자 및 유족의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총괄	중조위	환경부	환경부		
접수	중조위	환경부	환경부(기술원)		
조사	중조위	과학원	환경부(기술원)		
심의	조정·재정·중재 위원회	보건위원회	석면판정위, 피해구제심사위, 피해구제재심사위	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 피해구제정책위,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개정 전, 전체 위원수 총 145명(개별 피해구제위 115명, 중앙조정위 30명 등)



개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5개 분과위 + 조정·재정·중재위(100명 이내, 대통령 위촉·임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건강영향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의 기능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나 실질적인 조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는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 집행절차]

업무	부처	집행	사업수행주체
건강피해조사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500백만원, 재배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오염피해구제		=> (820백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제피해구제		=> (324백만원)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 (150백만원)	
원스톱서비스 추진 교육·홍보		=> (4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건강피해조사는 조직, 제도 정착이 지연됨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하여 건강피해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 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사업에서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강피해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선금 지급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원을 불용하였다.

[2025년 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내역
분쟁조정피해구 제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백만원</li> <li>① 분과위원회 운영 1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 위원·전문가 자문비 107백만원</li> <li>- 분과위원회 임차료 1백만원</li> <li>- 조사단 현지조사 및 위원회 참석 여비 17백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84백만원</li> <li>① 분과위원회 운영 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 위원·전문가 자문비 51백만원</li> <li>- 분과위원회 임차료 1백만원</li> <li>- 조사단 현지조사 및 위원회 참석 여비 17백만원</li> </ul> </li> </ul>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내역
	- 분과위원회 운영비 1백만원 <b>② 건강피해조사 500백만원</b> - 1개소X500백만원 = 500백만원  ③ 환경오염피해조사 820백만원 - 예비조사 1,200명×90천원=108백만원, 본조사 1,503명×474천원= 712백만원  ④ 살생물제피해조사 324백만원 - 피해조사 200명×1,620천원=324백만원  ⑤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백만원  ⑥ 원스톱서비스추진 교육·홍보 40백만원	- 분과위원회 운영비 1백만원 <b>② 건강피해조사 80백만원</b> - 「건강피해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선금 지급 80백만원  ③ 환경오염피해조사 820백만원 - 예비조사 1,200명×90천원=108백만원, 본조사 1,503명×474천원= 712백만원  ④ 살생물제피해조사 324백만원 - 피해조사 200명×1,620천원=324백만원  ⑤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백만원  ⑥ 원스톱서비스추진 교육·홍보 4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2025년 건강피해조사 수행건수가 전무하여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피해조사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sup>2)</sup>와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sup>3)</sup>로 나뉘는데, 2025년에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는 두 유형에 따른 조사 건수가 전무하였다.

또한, 2022~2025년간 건강피해조사 현황을 보면, 4년간 총 4건의 청원 접수 건수가 있었으나, 이 중 수용(조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5 건강피해조사 청원조사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2	'23	'24	'25
계	4	-	1	-	3
수용	0	0	0	0	0
불수용	2	-	1	-	1
불수리	1	-	-	-	1
기타 (반복·이중청원 등)	1	-	-	-	1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건강피해조사 청원이 3건 접수되었으나 불수리(요건 불충족)·불수용(분과위 심의·의결) 결정으로 청원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및 분과위 구성 지연, 조사 운영기반 마련 등 제도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장 직권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①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건강피해조사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청원일	지역	조사기간	소요예산	조사내용	
〈'09~'24.12.31. 「환경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12.9.18.	대구	'13.4.~'14.6.	500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14.8.4.	강원 동해	'15.6.~'16.6.	428	강원 동해시 동해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17.2.28.	인천	청원 '17.12.~'18.8.	270	사월마을 주변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직권 '18.12.~'19.8.	230		
'17.4.17.	전북 익산	'17.12.~'19.4.	246	장점마을에 인근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9.4.22.	충북 청주	청원 '19.12.~'20.12.	1,070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로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직권 '22.7.~'23.12.	932		
'20.2.25.	강원 횡성	'20.10.~'21.10.	320	양적리 가축분뇨 퇴비공정 주변 주민 건강피해조사	
'20.3.30.	충남 천안	청원 '20.10.~'21.10.	280	장산리 전선 및 필름제조공장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직권 '21.12.~'22.6.	230		
〈'25.1.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4.12.30.	인천 미추홀	청원	불수용	-	인천 미추홀구 상수도관 연결부위 납밀봉으로 인한 건강피해
'25.2.12.	강원 횡성	청원	불수리	-	횡성군 우천 일반산단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25.10.14.	경기 여주	청원	불수리	-	폐기물 처리업체 등 인근업체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주: 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간 중의 취하, 불수리, 불수용건 등은 자료에서 제외  
 2) 지역별 조사 예산은 조사대상 주민 수, 배출원 크기, 조사기간 등에 따라 상이  
 3) 주민요구, 정책적 결정에 따라 추가·보완조사(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직권조사 등)도 실시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3건의 신규 접수예상 건에 대해 검토 중이며, 2026년부터는 해당 접수예상 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피해조사 신규 접수예상 건]

청원피해 분류	민원 내용
A지역 폐기물매립장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으로 주민 암발생 등 조사요청
B지역 선박도금업체	조선도금 업체로부터 비산된 도료·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 요청
C지역 산업폐기물 소각장	30년 이상 운영해온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 요청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다만, 건강피해조사는 건강피해발생이 비정기적이라는 점, 소요예산 규모가 조사 대상 주민 수, 배출원 크기, 조사기간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연차별 조사계획 수립, 적극적인 위원장 직권조사 수요 발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차질없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에너지바우처 사업<sup>1)</sup>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요금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 제고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815억 4,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에너지바우처	481,541	481,541	-	-	481,541	481,541	-	-	494,027	504,257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2025년까지 하절기바우처(7월~9월)와 동절기바우처(10월~차년도 5월)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sup>2)</sup> 2026년부터는 이를 통합(7월~차년도 5월)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2월 취약에너지(등유, LPG) 이용 가구 평균 단가 36.7만원을 14.7만원 인상하여 가구 평균 51.4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하였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6-301

2) 다만, 제도 운영은 2025년부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 ~ 26.5.)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예산	(‘23) 2,201억원 → (‘24) 5,706억원 → (‘25) 4,770억원 → (‘26) 4,980억원
지원대상	- (‘26)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sup>1)</sup> 약 144만 가구
지원단가	(‘23) 34.7만원 → (‘24) 38.2만원 <sup>2)</sup> → (‘25) 36.7만원 → (‘26) 36.7만원 <sup>3)</sup>
지원방법	실물카드 :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구매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예산지원기간	당해연도 7월 ~ 차년도 5월

주: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2) 2024년도의 경우 한시적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가구)

3) 2025.12. 취약에너지(등유·LPG) 이용 가구 단가 14.7만원 인상  
등유·LPG 지원단가: 36.7만원 → 51.4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계정확성 제고 등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예산편성 당시와 달리 세 차례의 내역변경을 통해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2025회계연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변경 (2025.7.30.)	동절기바우처	1,261	사업운영비	바우처 미사용 가구 등에 효과적으로 바우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 수급자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사용지원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조정
내역변경 (2025.10.21.)	동절기바우처	526	사업운영비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9.15)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조정
내역변경 (2025.12.23.)	동절기바우처	901	사업운영비	대통령 지시사항(12.20) 및 경제관계장관회의(12.24)에 따라 도시가스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에너지공급사 요금할인이 없는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카드 발급, 홍보추진 등을 위해 조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먼저, 2025년 7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절기바우처 예산 12억 6,1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내역변경하였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찾아가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2025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및 홍보 추진을 위해 동절기바우처 5억 2,6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내역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가스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에너지공급사 요금할인이 없는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을 위한 카드발급, 홍보추진 등을 위해 동절기바우처 9억 1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내역변경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을 위한 단가상승은 당시 예상 불용액 44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등유·LPG 바우처 단가를 14.7만원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등유·LPG의 열량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40% 가량 높은 점<sup>3)</sup>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내역사업 동절기바우처는 편성 당시 4,103억 9,800만원에서 4,077만원 1,000만원으로 26억 8,800만원 감소되어 집행되었으며, 사업운영비는 편성 당시 18억 7,200만원에서 45억 6,000만원으로 26억 8,800만원 증액되어 집행되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내역 사업명	편성내역	집행내역
하절기 바우처	○ 69,271백만원 (130.7만 가구 × 5.3만원)	○ 69,271백만원 (130.7만 가구 × 5.3만원)
동절기 바우처	○ <b>410,398백만원</b> (130.7만 가구 × 31.4만원)	○ <b>407,710백만원</b> (129.9만 가구 × 31.4만원)
사업 운영비	○ <b>1,872백만원</b> - 시스템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운영(502.7백만원), 에너지복지홍보(448백만원), 패널조사(131.7백만원), 전달체계구축(34.6백만원), 협력기관지원(50백만원)	○ <b>4,560백만원</b> - 시스템고도화(1,429.4백만원), 콜센터운영(1,109.4백만원), 에너지복지홍보(1,569.5백만원), 패널조사(132.2백만원), 전달체계구축(99.5백만원), 협력기관지원(219.5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사업집행 방식의 변경은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4 회계연도 당시에도 기후부는 동절기바우처 사업에서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 등유·LPG구입지원, 사업운영비로 총 1,103억 4,500만원을 내역변경한바 있다. 이에 대해 2024년도 결산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3)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23.83원/MJ, LPG용기 요금 2,445원/kg, 실내등유 1,334.92원/L를 열량단가로 환산 시 1:1.85:1.39이며, 등유·LPG를 통합으로 가중평균 시 1:1.4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관련 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바우처(5146-301)	주의
시정 요구명	국회 예산 심의·의결 취지가 훼손되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	
지적 사항	○ 2023년 동절기바우처 단가 인상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고, 2024년 상반기부터 과다편성분 1,103억 4,500만원을 등유·LPG,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으로 조정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음 - 특히, 등유·LPG 구입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860억 1,600만원을 연중 임의로 추진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변경 (2024.8.21.)	동절기바우처	19,500	하절기바우처	역대급 폭염 발생으로 하절기 단가 추가 인상 결정('24.8)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변경 (2024.11.6.)	동절기바우처	2,238	연탄쿠폰	연탄쿠폰 지원단가 인상 결정('24.8)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변경 (2024.1.5.)	동절기바우처	86,016	등유·LPG구입지원	에너지위기 장기화로 등유·LPG 지원 사업 연장 실시('24.1)에 따른 예산조정
내역변경 (2024.1.5.)	동절기바우처	2,591	사업운영비	등유·LPG 지원사업 연장 시행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 반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는 한편,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sup>1)</sup>은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체계 구축·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암모니아 유통구조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5,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다.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sup>2)</sup>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해외 현지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암모니아 기반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2026 본예산
	본예산	추경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2,150	2,150	-	-	2,150	-	-	2,150	1,935
해외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1,650	1,650	-	-	1,650	-	-	1,650	1,48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들은 2022년 11월 9일 개최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러·우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신에너지인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소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는 기반·제도를 구축하여 기존의 수소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10

2)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18

업으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구축하고, 국내와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내용 중 일부

②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마련

- 대용량의 수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 수소 플랜트(연 4만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한다.
- '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③ 국내와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구축

-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하여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해외이송을 지원하여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 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 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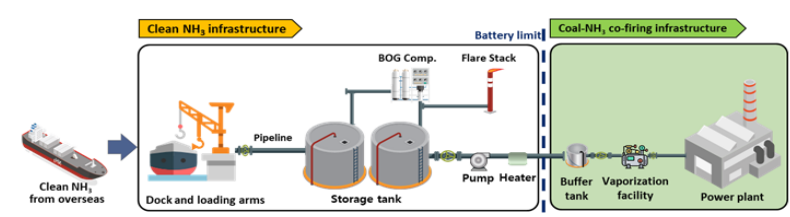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사업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은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한 청정 암모니아 인수·저장·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후 인근 발전소 및 산업 단지에 청정 암모니아 공급 유통망을 위한 거점형 유통 인프라로 확대 예정이다.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한 청정 암모니아 인수·저장·공급 인프라 구축</li> <li>- 향후 인근 발전소 및 산업단지에 청정 암모니아 공급 유통망을 위한 거점형 유통 인프라로 확대 예정</li> </ul>
시설개요	- 암모니아 저장탱크 3.5만톤급 2기 및 부대 시설 1식(6만톤급 부두, 공정 설비 등)
투자비	- 3천억원 추정(개념설계 결과 및 CHPS <sup>1)</sup> 참여 방식/구조에 따라 변동 가능)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개념설계 수행</li> <li>- 2023년: 영흥 발전소를 대상부지로 선정. 남동발전과 공동개발협약 체결</li> <li>- 2024년: 기본설계 완료 및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li> <li>- 2025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재참여 검토 및 정책 부합형 사업 조정 검토 &lt;암모니아 유통 터미널 개념도&gt;</li> </ul>
참고자료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암모니아 유통 터미널 조감도&gt;</p>  </div>

주: 1)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석유공사가 남동발전과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영흥(남동발전 부지)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공급용 암모니아 인수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나, '25.8월 양사 공동개발 협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영흥 인수기지 EPC<sup>3)</sup> 비용으로 편성된 '25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이는 공동개발 사업자이자 수요처인 남동발전이 2024년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에서 미낙찰됨에 따라 2025년 CHPS에서는 남동발전 독자 인수기지 개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25.8월 양사 간 공동 인수기지 개발사업을 해지하였기 때문이다. CHPS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를 발전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으로 2024년도 CHPS에서는 남부발전의 삼척 혼소 발전사업이 유일하게 낙찰되었고, 2025년도 CHPS는 10월 17일 한국전력거래소가 CHPS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하여 낙찰 발전사가 없었으며, 2026년 CHPS는 올해 하반기 공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편성 당시 동 사업은 2025년에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말 인수기지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CHPS 미낙찰 및 공동개발 협약 해지로 인해 2026년부터 다시 신규 기본설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동남아, 중동, 북미, 호주 등 청정수소 생산량 및 단가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

3) EPC: 설계, 조달, 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및 新에너지 안보 강화
사업방식	- 석유공사는 정부 출자예산 기반으로 민간기업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시설 구축 및 국내도입 사업 추진
사업기간	- '23년 ~ '27년 (생산시설 타당성조사/설계/건설)
수행주체	- SPC 및 컨소시엄 (한국석유공사+민간기업)
생산규모	- 청정(그린/블루) 암모니아 80만톤/년 생산시설 구축
총사업비	- 약 2.5조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이 사업은 그간 말레이시아 사라왁, 오만 살랄라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수요 확보 어려움 등으로 최종 투자결정(FID)이 지연되어 프로젝트 계속 추진 비용(생산시설 기본설계 등 우리 측 비용 부담분 등)으로 편성된 '25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다.

두 사업은 모두 청정수소를 활용한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통점이 있다.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수소발전 단가가 저렴한 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이를 암모니아로 합성하고, 합성한 암모니아를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암모니아 터미널을 통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해 두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사업 집행 부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의 경우 2023년 발전사와의 공동개발협약 체결, 기본설계 용역 지연, 설계 규모 증가 등으로 사업종료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했고, 2025년 발전사의 CHPS 미낙찰로 사업종료기간을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두 차례 변경한 적이 있으며,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은 2023년 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였다.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4,000	4,000	-	-	4,000	3,100	77.5	77.5	-	900
2024	6,000	6,000	-	-	6,000	1,400	23.3	23.3	-	4,600
2025	1,650	1,650	-	-	1,650	-	-	-	-	1,650
2026	1,485	-	-	-	-	-	-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로 인해 2025년에는 두 사업 모두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은 새로 기본설계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은 사업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초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수립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탄소암모니아 유통구조구축시범연구사업의 경우 2026년부터 신규부지로 이전하여 석탄혼소발전이 아닌 수소 전소, 수소-LNG 혼소 발전에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변환용 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으로 변경('26년 예산 19.35억원은 신규 기본설계에 사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검토한 후, 2026년 기본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 경제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고, 이후 사업추진을 함께 있어 전액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sup>1)</sup>은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2)에 근거하여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55억 4,700만원 중 69.0%인 31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1억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석면피해 구제급여	45,520	45,520	27	-	45,547	31,408	30	14,109	45,462	45,462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에 신규 석면피해 인정자 수가 전년 대비 13% 급증하면서 구제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을 인상('22년 0.003%→'23년 0.004%→'24년 0.006%)하고 정부전입금을 대폭 상향('22년 5억원→'23년 30억원→'24년 120억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석면 안전관리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하였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석면피해구제기금 2205-301

2)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의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인정자 수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과거 지속적인 지출 증가에 따른 기금 고갈 우려에 대응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인상 및 정부전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나, 2024년 이후부터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집행률은 69.0%로 전년에 비해 더욱 하락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지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2025회계연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18,185	27,437	-	27,437	27,424 [27,080]	99.9	99.9	-	13
2023	27,669	33,899	-	33,899	33,885 [32,543]	99.9	99.9	-	14
2024	45,520	45,520	-	45,520	34,183 [33,870]	75.1	75.1	27	11,310
2025	45,520	45,520	27	45,547	31,408 [30,932]	69.0	69.0	30	14,109
2026	45,462	45,462	-	-	-	-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2025회계연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지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순수입 <sup>1)</sup> (A)	17,506	15,559	16,390	16,778	16,483	17,964	27,181	49,216	51,870
순지출 <sup>2)</sup> (B)	16,201	17,884	21,466	21,407	25,993	32,871	39,261	36,820	33,937
수지차(A-B)	1,305	△2,325	△5,076	△4,629	△9,510	△14,907	△12,080	12,396	17,933

주: 1)석면피해구제분담금+정부전입금+기타경상수입(여유자금회수, 기금예탁원금회수 제외)

2)석면피해구제급여+건강영향조사 등 사업비(여유자금운용, 공자기금예탁 제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했던 피해인정자 규모에 비해 실제 석면피해자로 인정되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규 인정자 수는 2023년 874명, 2024년 637명, 2025년 43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수급자 및 구제급여 지급액도 2025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7~2025 석면피해구제급여 피해신청자 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피해신청자	신규인정자	인정자누계	급여수급자(증감%)	구제급여 지급액(증감%)
2017	717	<b>508</b>	2,842	1,373	105
2018	752	<b>569</b>	3,411	1,688	123
2019	1,027	<b>726</b>	4,137	1,932	158
2020	947	<b>687</b>	4,824	2,151	163
2021	1,380	<b>898</b>	5,722	2,556	202
2022	1,639	<b>1,018</b>	6,740	2,916	271
2023	1,562	<b>874</b>	7,614	3,118	325
2024	1,371	<b>637</b>	8,251	3,177	338
2025	1,193	<b>437</b>	8,688	2,933	30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상 석면피해인정자 전망<sup>3)</sup>에 따르면, 석면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취소자는 감소추세에 있는 한편, 신규인정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30년 신규인정자는 72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예상 석면피해인정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① 신규인정자 및 특별유족

- (신규인정) 최근 10년간('16~'25) 증감률을 반영해 계산

(단위: %)

구 분	악성종피종	폐암	석면폐증1급	석면폐증2급	석면폐증3급
연평균 증감률	7.3	12.4	2.6	5.2	12.4

- (특별유족) 최근 7년간('18~'24) 평균 특별유족 인정자 수를 적용

② 사망자: 최근 10년간 사망률(생존 인정자 중 사망자 비율)을 반영해 계산

(단위: %)

구 분	악성종피종	폐암	석면폐증1급	석면폐증2급	석면폐증3급
사망률	22.4	14.0	8.1	2.7	1.3

③ 취소자(사망 외 사유로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된 사람) : 5년 이상 생존율 및 유효기간 갱신율을 반영하여 계산

(단위: %)

구 분	악성종피종	폐암	석면폐증 1,2,3급
5년 이상 생존율	24.3	39.4	완치 가능성이 작아 대부분 유효기간 갱신
유효기간 갱신율	78.3	38.8	되므로 취소자 없는 것으로 간주

[예상 석면피해인정자 전망]

(단위: 명)

연도	구분	합계	석면피해	특별유족
2026 (예측)	신규인정자	522	449	73
	취소자	57	57	-
	사망자	253	253	-
2027 (예측)	신규인정자	565	492	73
	취소자	82	82	-
	사망자	242	242	-
2028 (예측)	신규인정자	614	541	73
	취소자	57	57	-
	사망자	238	238	-
2029 (예측)	신규인정자	667	594	73
	취소자	42	42	-
	사망자	240	240	-
2030 (예측)	신규인정자	726	653	73
	취소자	17	17	-
	사망자	247	247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상 석면피해인정자 전망이 증가추세인 반면, 실제 신규인정자가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은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한 측면도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과 같이 잠재적 석면피해자에 대한 발굴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면노출 우려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정도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피해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와 연계하기 위해 석면 건강영향조사<sup>4)</sup>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인상 및 정부전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4) 코드: 석면피해구제기금 2205-302

[2022~2024회계연도 의료기관 중심 석면폐암(석면질병) 감시체계 운영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200	200	-	200	192 [192]	96	96	-	8
2023	200	200	-	200	190 [190]	95	95	-	10
2024	180	180	-	180	-	-	-	-	18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석면건강영향조사 사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내역사업으로 의료기관 중심 석면질병 감시체계 운영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4년 계약 불발로 인해 불용 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석면질병 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총 1,051명의 석면피해 의심자를 발굴<sup>5)</sup>했으며, 이를 통해 총 303명의 석면피해자 확인 및 인정이 이루어졌다.

[석면질병 감시체계 운영사업을 통한 석면피해자 인정 현황]

(단위: 명)

년도	합계 (a+b+c)	석면폐암(a)	악성중피종(b)	석면폐증(c)
2017	28	16	6	6
2019	86	27	13	46
2020	57	16	28	13
2021	25	6	18	1
2022	63	14	34	15
2023	44	11	21	12
합 계	303	90	120	9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5) '17년: 109, '19년: 322, '20년: 226, '21년: 96, '22년: 142, '23년: 15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부진에 대해 기금 규모는 확대됐으나, '24.2월부터 '25.10월까지 이어진 장기 의료 파업의 여파로 석면질병 진단 자체가 급감하고, 전문의가 사업을 홍보하고 환자를 발굴하는 '의료기관 중심 석면질병 감시체계 운영 사업(17~'23)'마저 중단되면서, 신규 신청이 줄어 전년 대비 구제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석면 질환의 긴 잠복기(15~40년)와 의료 시스템 정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자 및 지급액이 다시 증장기 추계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료 시스템 정상화에 맞춰 진단 및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중단된 환자 발굴 사업을 재개하거나 석면 노출원 주변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잠재적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인정률의 변동성을 고려한 면밀한 지출 소요 추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sup>1)</sup>은 기금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연기금투자펀드를 포함한 금융기관을 통한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sup>2)</sup>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 이르기까지 전국 4대강 수계별로 설치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각 수계관리기금별로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여유자금의 규모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443억 8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223억 4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667억 6,4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921억 1,600만원 등 총 2,254억 9,200만원이다.

[2025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계
2025	44,308	22,304	66,764	92,116	225,492

주: 결산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한강수계관리기금 97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700, 금강수계관리기금 97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700

2) 각각의 수계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톤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지출되는 예산과 비교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 규모가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의 본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유자금 운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각 유역별 상황에 맞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물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지역의 토지이용규제와 각종 수질개선사업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지불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성 기금이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으로는 규제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기타수질개선 지원 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원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사업, 친환경 청정사업<sup>3)</sup> 등이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sup>4)</sup>은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이고, 규모가 과도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3년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 규모를 보면 2023년 1,810억 6,500만원, 2024년 1,771억 6,200만원, 2025년 2,254억 9,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사업 지출액과 대비한 여유자금 운영비율은 2023년 17.6%, 2024년 17.9%, 2025년 24.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3)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의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만 수행되고 있다.

4)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최근 3년간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기금사업비 (A)	주민지원사업	147,117	146,200	140,664
	환경기초시설	510,995	495,548	464,252
	기타수질개선지원	90,350	77,582	66,376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203,108	199,030	193,075
	오염총량관리	24,255	24,757	23,708
	친환경청정사업	34,044	28,273	20,653
기금운영비(B)		18,011	17,208	17,169
<b>기금사업 지출액(C=A+B)</b>		<b>1,027,880</b>	<b>988,598</b>	<b>925,897</b>
<b>여유자금 운영(D)</b>		<b>181,065</b>	<b>177,162</b>	<b>225,492</b>
<b>여유자금 운영비율(D/C)</b>		<b>17.6</b>	<b>17.9</b>	<b>24.4</b>
총 지출액(E=C+D)		1,208,945	1,165,760	1,151,41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그런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690억 1,900만원, 2024년 799억 7,300만원, 2025년 921억 1,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 지출액 대비 여유자금 운용비율도 4대강수계관리기금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 75.8%, 2024년에는 89.6%, 2025년 101.7%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매년 수입액은 늘어나는 데 비하여 지출액은 큰 변동없이 유지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3년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수입액	지출액 (A)	여유자금 운용규모 (B)	여유자금 운영비율 (B/A)
2023	160,046	91,027	69,019	<b>75.8</b>
2024	169,197	89,224	79,973	<b>89.6</b>
2025	182,662	90,546	92,116	<b>101.7</b>

주: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출액의 경우 기금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등 타 수계관리기금과 비교해 살펴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다른 수계기금과 달리 여유자금 운용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2025년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443억 800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9.1%의 운용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부터 3년간 평균 운용비율은 8.5%를 보였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2025년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223억 400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10.0%의 운용비율을 차지하였고 3년간 평균 운용비율은 6.1%로 나타났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2025년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667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54.6%의 운용비율을 보였으며 3년간 평균 운용비율은 42.1%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에는 2025년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921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101.7%를 차지하였고, 3년간 평균 운용비율도 89.0%로 나타나 타 수계보다 훨씬 큰 비율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3년간 수계관리기금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3년 평균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출액(A)	559,656	540,308	489,123	529,696
	여유자금 운용규모(B)	60,701	30,409	44,308	45,139
	운용비율(B/A)	<b>10.8</b>	<b>5.6</b>	<b>9.1</b>	<b>8.5</b>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출액(A)	237,776	229,745	224,042	230,521
	여유자금 운용규모(B)	5,604	14,435	22,304	14,114
	운용비율(B/A)	<b>2.4</b>	<b>6.3</b>	<b>10.0</b>	<b>6.1</b>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출액(A)	139,421	129,321	122,186	130,309
	여유자금 운용규모(B)	45,741	52,345	66,764	54,950
	운용비율(B/A)	<b>32.8</b>	<b>40.5</b>	<b>54.6</b>	<b>42.1</b>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출액(A)	91,027	89,224	90,546	90,266
	여유자금 운용규모(B)	69,019	79,973	92,116	80,369
	운용비율(B/A)	<b>75.8</b>	<b>89.6</b>	<b>101.7</b>	<b>89.0</b>

주: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출액의 경우 기금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한편 금강수계관리기금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2023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금존치평가에서 증기가용자산 규모가 과다하여 여유자산이 적정규모를 초과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sup>5)</sup>.

하지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에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신규사업이 전무<sup>6)</sup>하여, 과다한 여유자금 운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기금 고유사업에 지출되는 규모에 대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비율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지출 측면에서 보면 해당 기금이 본래 목적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적시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거나, 수입 측면에서는 부담금 등의 수입이 과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기금 운용으로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으며, 물이용 부담금 납부자의 정책 신뢰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의 본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의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각 유역별 상황에 맞게 물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5) 2023년 실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증기가용자산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 6,649백만원, 최대기준 1,372백만원으로 평가되는데, 동 기금의 증기가용자산은 64,225백만원이므로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에도 증기가용자산 적정 규모는 최소기준 - 3,897백만원, 최대기준 6,028백만원으로 평가되는데, 동 기금의 증기가용자산은 50,508백만원이므로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6) 금강수계관리기금도 동일하게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다.

### 가. 현 황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sup>1)</sup>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은 4조 163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4,016,300	4,016,300	-	4,016,300	4,016,300	-	-	4,516,30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sup>2)</sup>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9조 8,331억 1,200만원으로 계획액 10조 4,062억 2백만원에 비해 5,730억 9,000만원 감소하였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003-840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5회계연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결산	2025			증감	
		계획		결산 (B)	B-A	(B-A)/A
		당초	수정(A)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970,616	10,406,202	10,406,202	9,833,112	△573,090	△5.5

주: 총계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수입원별 결산을 살펴보면, ①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는 당초 4조 9,713억 9,600만원에서 4,552억 3,100만원 감소한 4조 5,161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고, ②기금예탁원금회수는 당초 3조 8,663억원 보다 224억원 증가한 3조 8,887억원이 수납되었다. ③법정부담금의 경우 당초 8,449억 5,700만원보다 720억 100만원 감소한 7,729억 5,600만원이며, ④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수입은 당초 3,374억 3,500만원 전액 수납되었다. ⑤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의 경우 당초 1,503억 9,100만원 대비 177억 6,300만원 감소한 1,326억 2,800만원이고, ⑥기금예탁이자수입은 당초 1,061억 9,200만원에 비해 19억 9,900만원이 증가한 1,081억 9,100만원이 수납되었다. ⑦기타잡수입은 당초 881억 8,400만원보다 247억 2,300만원 감소하여 634억 6,100만원이었고, ⑧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초 413억 4,700만원 대비 277억 7,100만원 감소한 135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025회계연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원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증감	
	계획		결산 (B)	B-A	(B-A)/A
	당초	수정(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971,396	4,971,396	4,516,165	△455,231	△9.2
기금예탁원금회수	3,866,300	3,866,300	3,888,700	22,400	0.6
법정부담금	844,957	844,957	772,956	△72,001	△8.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37,435	337,435	337,435	0	0.0
기타재산이자수입	150,391	150,391	132,628	△17,763	△11.8
기금예탁이자수입	106,192	106,192	108,191	1,999	1.9
기타잡수입	88,184	88,184	63,461	△24,723	△28.0
기타경상이전수입	41,347	41,347	13,576	△27,771	△67.2
계	10,406,202	10,406,202	9,833,112	△573,090	△5.5

주: 총계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분석의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동 기금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제외 대상이라는 점, 공적자금 예탁으로 인해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제1항4)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2009년 1월 기금이 설치된 이후 2010년부터 계속 여유자금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해 왔다.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고, 2022년~2024년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대비 예탁 규모를 증액해 왔다.

구체적으로, 동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2021년 2조 5,000억원에서 2025년 4조 163억원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고,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체 운용액(9조 8,331억 1,200만원)의 40.8% 수준이다.

[2021~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집행액	기금운용계획 변경일자
	당초(A)	수정(B)	증감(B-A)		
2021	2,500,000	2,500,000	-	2,500,000	-
2022	2,500,000	2,880,000	380,000	2,880,000	2022.5.12.
2023	3,300,000	3,367,000	67,000	3,367,000	2023.11.29
2024	3,760,000	3,888,700	128,700	3,888,700	2024.12.9.
2025	4,016,300	4,016,300	-	4,016,30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확대는 기금의 성격, 수익률,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 기금의 성격

「국가재정법」 제13조5)는 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5)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9개 특별회계·기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회계-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9개 특별회계·기금에 포함된다.

동 조항에서 회계-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해당 특별회계·기금이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고, 급작스런 대규모 지출 발생, 중장기적 지출규모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출입 제외 대상으로 2008년에 추가되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상기 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공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탁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2) 기금 운용 수익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중 대부분을 연기금투자펀드와 기타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운용하고 있다. 2025년 동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9.61%, 2024년 8.81%, 2025년 10.87%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3~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3	4,405,977	3,862,596 (9.61)	217,667 (5.21)	1,442,256 (9.98)	2,202,672 (9.72)
2024	4,853,599	4,328,992 (8.81)	1,000 (4.50)	787,855 (6.68)	3,540,137 (9.29)
2025	5,610,923	5,303,680 (10.87)	-	200,419 (2.58)	5,103,261 (11.2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율은 예탁 개월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3.205%~3.975% 사이에서 결정되었고, 2024년 이자율은 2.530~3.505%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2025년 이자율은 2.683~2.975%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연기금투자 등을 통해 운용하였다면 약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기회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자기금 예탁규모	공자기금 예탁이자 수입액(A)	여유자금으로 운용 가정 시 수익(B) (수익률 10.87% 가정)	차액 (B-A)
2025년	4,016,300	108,191	436,572	328,381

**(3)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에 대해서는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에서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 축소 및 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 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형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 금 예탁 비중 축소 및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 사업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3-840)	제도 개선
	지적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기금의 법적 취지와 수익성 제고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음</li> <li>-2024년 예탁 규모는 3조 8,887억원으로 전체 기금 운용액(8조 9,706억원)의 43.3%에 달하며, 이는 타 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1.2%, 임금채권보장기금 9.9%)과 비교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li> <li>-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원자력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목적상 전출·전입 제외 대상 기금임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높은 비율로 예탁하는 것은 법적 취지와 상충함</li> <li>-공공자금관리기금이 아닌 연기금투자펀 등 대체 운용 시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 운용방식은 수익률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li> </ul>	
	시정요 구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증가시킨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예탁 규모를 축소할 것	

자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2025년 예탁 비중을 축소하여 편성하였고, 추후에도 적정 수준의 예탁금 편성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조치
적정수준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예탁 비중 축소 필요	<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 : 조치완료 ○ 방폐기금의 설치 목적, 공자기금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재부와 협의 끝에 '25년 예탁 비중 축소 편성 완료 - 추후에도 적정 수준의 예탁금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2025년에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예탁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그 규모 자체는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전년 대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증가하여 2025년 대비 5,000억원이 증가하였다. 2026년 확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규모는 11조 131억 3,700만원이고, 이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비중은 41.0%인데, 일반적으로 결산 규모는 당초 기금계획 규모에 비해 작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2026년 예탁비중은 2025년 대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금규모(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계획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집행액(B)	예탁비중 (B/A)
		당초	수정		
2021	6,412,005	2,500,000	2,500,000	2,500,000	39.0
2022	7,030,931	2,500,000	2,880,000	2,880,000	41.0
2023	7,958,269	3,300,000	3,367,000	3,367,000	42.3
2024	8,970,616	3,760,000	3,888,700	3,888,700	43.3
2025	9,833,112	4,016,300	4,016,300	4,016,300	40.8
2026	11,013,137 <sup>1)</sup>	4,516,300			

주: 1) 2026년 기금규모는 확정 규모가 아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편성된 규모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 기금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제외대상이라는 점, 공적자금 예탁으로 인해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 2025년 결산

기존 예탁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예탁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sup>1)</sup>은 고품질 폐기물의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산업 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291억 1,800만원 중 88.4%인 257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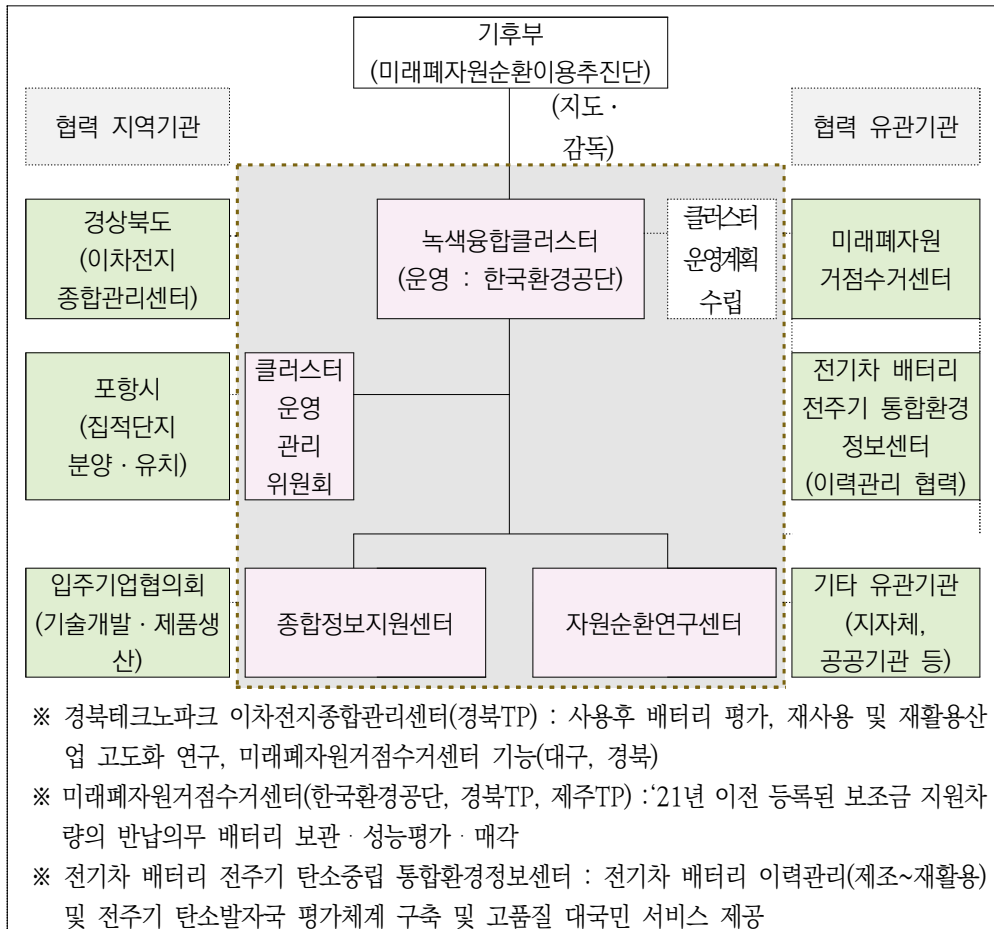
사업명	2025							2026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4,836	24,836	4,282	29,118	25,745	652	2,720	160 <del>44</del>	160 <del>44</del>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4,311	14,311	4,272	18,583	16,330	48	2,205	-	-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120	1,120	10	1,130	10	605	515	2,864	2,864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1,454	1,454	-	1,454	1,454	-	-	1,503	1,503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6,630	6,630	-	6,630	6,630	-	-	8,970	8,970
전기차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운영	1,321	1,321	-	1,321	1,321	-	-	2,707	2,707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 사업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후 배터리 실증화시설을 통한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인재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 운용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025년 6월 완공되어 2025년 11월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종합정보지원센터(기업 지원)와 자원순환연구센터(기술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내 자원순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자원순환산업 연구·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 진흥센터(관련 산업 지원), 실증화단지(자원순환 및 운영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시설 배치), 기타 시설(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제주도 밖으로 유상반출하여 처리 중인 폐플라스틱·비닐,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수소 생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LFP 배터리재활용 체계 구축사업은 국내 LFP 배터리 재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재활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접부지에 기술개발 실증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 17-1.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가. 현황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선별, 열분해 유화·가스화 실증 등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는 연구개발 단지로서, 환경부는 2021년 공모에 선정된 부산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9공구 내에 부지 2만 6,400㎡, 연면적 9,100㎡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시설 설치						
위치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1278-7번지(국제산업물류단지 9공구)						
사업기간	'21년 ~ '28년						
규모	부지면적 26,400㎡, 연면적 9,136.82㎡(교육연구시설) - 진흥시설(건물 1동), 실증시설(물질재활용동 1동/ 화학적 재활용 부지/ 자유설계구역 부지)						
사업비	485.33억원(국비 100%) - 건축비 30,943백만원, 토지매입비 16,187백만원, 실시설계비 1,403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4	'25	'26	'27	'28
	<b>계</b>	<b>48,533</b>	<b>16,985</b>	<b>605</b>	<b>2,864</b>	<b>15,487</b>	<b>12,592</b>
	설계비	<b>1,403</b>	798	605	-	-	-
	토지매입비	<b>16,187</b>	16,187	-	-	-	-
	감리비	<b>2,124</b>	-	-	137	1,062	925
	공사비	<b>28,720</b>	-	-	2,725	14,360	11,635
시설부대비	<b>99</b>	-	-	2	65	32	
주요기능	①자원순환 기술혁신(기업 창업 및 인·검증 사업화), ②네트워크 구축(산학연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 ③인프라 구축(실증화 시설 조성, 기본장비 등 지원)						
사업내용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진흥시설, 실증시설 등)						
사업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클러스터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센터’, 자원순환 실증시설을 배치한 ‘실증화 단지’와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각종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 시작년도인 2021년에는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년 7월 중간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결과 물가 상승 및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463억원에서 568억원(105억원 증액, 약 23%)으로 변경되었고, 「국가재정법」 제50조2)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게 되어 사업기간이 늘어나 2028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4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12월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함에 따라 2026년부터 실시설계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 ⑤ (생략)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⑥ (생략)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0.1월 : “신규 환경융합거점단지 발굴 및 로드맵 수립” 용역(녹색국) 결과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지 선정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 '20.7월 : 3차추경 심의과정 중 기재부와 협의 과정 등에서 클러스터 입지선정부터 신규로 연구용역 추진 결정
- '20.10월 : 자원순환 클러스터 입지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1.2~4월 :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공모 및 최적지 선정(4.30, 부산광역시)
- '21.5~10월 : 클러스터 조성계획(안) 마련 및 타당성조사
- '21.12월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공공건축 심의, 설계 입찰공고
- '22. 3월 : 설계용역 착수 및 용역 일시정지('22.3.22~8.21.)
- '22. 8월 : 설계용역 변경계약 및 용역 재개
- '22.11월 : 계획설계 완료 및 적정성검토
- '23. 3월 :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부산도시공사), 중간설계 완료 및 적정성검토(~'23.7)
- '23. 5월 : 사업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23. 9월 : 총사업비 조정 등 재원협의 추진(기재부)
- '24. 2월 : 타당성재조사 시행(기재부 통보)
- '25. 6월 :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 준공
- '25. 12월 : 타당성재조사 철회
- '26. 1. : 총사업비 1차 조정(462.51억원→485.33억원)
- '26. 1. ~ 4. : 실시설계(설계내역 조정)
- '26. 4. : 실시설계 재개 및 설계용역 계약 변경(기간연장)
- '26. 5. ~ 7. : 건축인허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준공
- '26. 8. : 공사 사업공고
- '26. 10. : 공사계약 및 착공
- '27. : 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정
- '28. : 공사 준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분석의견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타당성조사 철회를 위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설비 및 연구 장비를 축소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업 실효성 저하 및 향후 운영상의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간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결과 물가 상승 및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463억원에서 568억원(105억원 증액, 약 23%)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비 조정, 연구장비 삭제 등을 통해 총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하였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보면, 중간설계 결과 총사업비는 567억 6,200만원으로 산정되어 당초 기본계획 대비 105억 1,100만원 상승했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래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증연구장비, 악취제거설비 등을 삭제하여 총사업비를 485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주요 조정 내역을 보면, 물리적재활용 연구장비 일부 삭제 36억 6,800만원, 악취제거설비 삭제 13억 9,000만원, 장비/설비 설치공사비 2억 8,800만원 등 전체 감소액 82억 2,900만원 중 약 65%에 달하는 53억 4,600만원이 클러스터에 도입될 연구장비, 시설에서 조정되었다.

[2025회계연도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증감 (B-A)	증감사유
	당초 (기본계획) (2021)	중간설계 (타재)A (2023)	1차조정 (타재철회)B (2025)		
공사비	기본공사비	21,820	25,618	23,871	<b>Δ1,747</b> 물가상승율=2,051 자재 수량/사양조정 및 삭제=Δ3,798
	신재생에너지	10	48	-	<b>Δ48</b> 전기차충전기 임대=Δ48
	물리적재활용 연구장비	5,413	7,113	3,445	<b>Δ3,668</b> 연구장비 일부 삭제= Δ3,668
	연구장비 기반시설	0	2,553	1,163	<b>Δ1,390</b> 악취제거설비 삭제= Δ1,390
	연구시설 품질향상		529	241	<b>Δ288</b> 장비/설비 설치공사비= Δ288
	<b>계</b>	<b>27,243</b>	<b>35,861</b>	<b>28,720</b>	<b>Δ7,141</b>
<b>보상비</b>	<b>16,187</b>	<b>16,187</b>	<b>16,187</b>	<b>0</b>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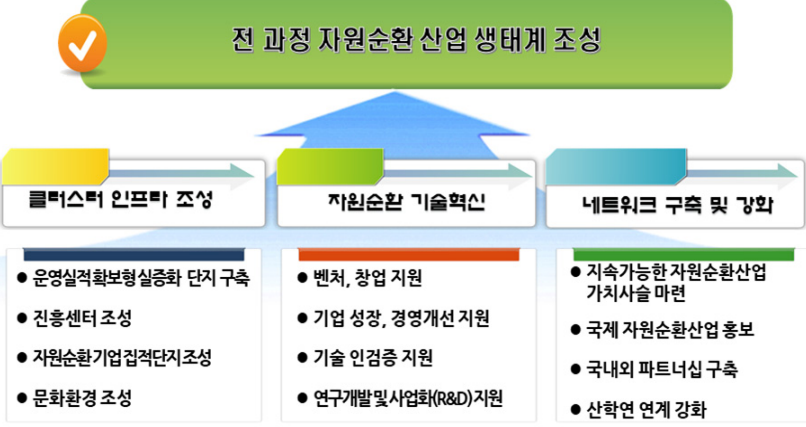
구분	총사업비			증감 (B-A)	증감사유	
	당초 (기본계획) (2021)	중간설계 (타재)A (2023)	1차조정 (타재철회)B (2025)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1,403	1,403	1,403		
	감리비	1,368	3,187	2,124	<b>△1,099</b>	공사비 증감반영= △1,099
	시설부대비	50	124	99	<b>△25</b>	공사비 증감반영=△25
	<b>계</b>	<b>2,821</b>	<b>4,714</b>	<b>3,626</b>	<b>△1,088</b>	
<b>합계</b>	<b>46,251</b>	<b>56,762</b>	<b>48,533</b>	<b>△8,229</b>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흩어져 있는 재활용산업의 업체들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효율화와 집적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고가 장비를 공유·이용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핵심 기능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충분한 연구장비 등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기본방향, 개념 및 비전]

구분	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현재 산발적 영세업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①재활용 산업의 효율화 및 집적화, ②관련 R&amp;D, 실증화 촉진으로 환경산업 육성</li> <li>○ (주요기능) 자원순환 기술혁신(창업, 인·검증,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전·후방 산업, 산·학·연 연계,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구축(실증화 단지 조성, 기본장비 등 지원)</li> </ul>

구분	내용
클러스터 개념 및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및 기능) 진흥센터(관련 산업 지원), 실증화단지(자원순환 및 운영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시설 배치), 기타 시설(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li> <li>○ (비전)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전 과정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b>클러스터 인프라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적확보형실증화 단지 구축</li> <li>● 진흥센터 조성</li> <li>● 자원순환기업집적단지조성</li> <li>● 문화환경 조성</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b>자원순환 기술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 창업 지원</li> <li>● 기업 성장, 경영개선 지원</li> <li>● 기술 인검증 지원</li> <li>● 연구개발및사업화(R&amp;D)지원</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b>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산업 가치사슬 마련</li> <li>● 국제 자원순환산업 홍보</li> <li>●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li> <li>● 산학연 연계 강화</li> </ul> </div> </div> </div>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효율화 및 집적화를 위한 연구장비 등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목표로 했던 재활용 사업의 효율화 및 집적화, 관련 R&D, 실증화 촉진 등 환경산업 육성 및 향후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주요 연구장비(예시)]

<p>〈A-04 발리스틱 선별기〉</p> 	<p>〈A-09 로봇선별기〉</p> 
<p>〈A-15 근적외선 자동 선별기〉</p> 	<p>〈A-39 플라스틱 압축기〉</p> 
<p>〈D-01 분쇄기〉</p> 	<p>〈D-03 세척기〉</p> 
<p>〈D-05 건조기〉</p> 	<p>〈D-07 비중선별기〉</p>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둘째,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은 이월, 감액 등이 지속되었고, 2025년에도 설계용역비를 이월하는 등 사업 집행 지연에 따라 예산 집행 부진이 지속되었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설비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업 집행 지연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 감액, 불용되고 있다. 2021년에는 설계일정 변경으로 12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 설계용역에 필요한 추가조사 등으로 169억 2,800만원을 전액 감액 변경하였고, 2024년에는 75억 1,800만원 감액 변경하였다.

2025년에는 타당성재조사 철회로 운영계획수립 용역 사업 공고, 협상 등의 용역계약 행정절차기간 절대 부족으로 일반연구비 5억원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설계용역 재개 및 준공 지연으로 설계용역비 준공금 6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다.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 최근 5개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1	1,520	0	96	1,616	205	1,294	117
2022	16,928	0	1,294	1,294	689	-	605
2023	18,917	16,187	-	16,187	16,187	-	-
2024	7,568	50	-	50	40	10	-
2025	1,120	1,120	10	1,130	10	605	51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에는 당초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28억 6,4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24,836	12,680	15,544	2,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인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미반영, 전년대비 11억 2,000만원 감액)은 국내 자원순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자원순환산업 연구·실증 지원 인프라를 부산에 구축하려는 것임</li> <li>○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및 재생원료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성재조사 철회 후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28억 6,400만원 증액 필요</li> </ul>

자료: 2026회계연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그러나 동 사업의 2026년 향후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6년 7월에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8월에 공사 사업공고를 한 뒤, 10월에야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향후 계획]

- '26. 1. : 총사업비 1차 조정(462.51억원→485.33억원)
- '26. 1. ~ 4. : 실시설계(설계내역 조정)
- '26. 4. : 실시설계 재개 및 설계용역 계약 변경(기간연장)
- **'26. 5. ~ 7. : 건축인허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준공**
- **'26. 8. : 공사 사업공고**
- **'26. 10. : 공사계약 및 착공**
- '27. : 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정
- '28. : 공사 준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적으로 건축인허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는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동절기 공사도 기후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6년에도 예산 집행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동 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조정 후 총사업비도 485억 원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인상될 경우 재차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허가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공사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17-2.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가. 현황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은 리튬인산철(LFP)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핵심광물 확보로 원료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LFP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인산철(LFP)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핵심 광물 확보로 원료공급망 안정성 강화</li> <li>-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Test Bed 역할의 LFP 배터리 재활용 Pilot 시설 설치</li> </ul>
사업기간	'25년 ~ '27년
사업규모	LFP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600톤/년)
사업부지	포항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접부지
사업비	15,600백만원(부지 포함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FP 배터리 재활용 설비 공사비 130억원, 기타 설계·감리·시설부대비·역무대행 수수료 등 26억원</li> <li>* (파일럿 설비 산출내역) 1개 라인 600ton/년 재활용 기준</li> <li>- 전처리 공정(30억원) 열처리 13억원, 파분쇄 10억원, 집진·가스처리 등 7억원</li> <li>- 후처리(습식공정 LFP Cell 600톤/년 * Li함유량 1.3%*5 = 탄산리튬 약 40톤/년 생산기준) 약 100억원</li> </ul>
사업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역무대행)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분석의견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은 당초 2026년까지로 예정되어 2026년 예산안에 잔여 사업비 89억 7,0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으나, 2025년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5년 실적행은 5억 8,400만원으로(실집행률 8.8%) 60억 4,600만원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2025년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5	6,630	6,630	-	6,630	6,630 [584]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달청 협의 과정 중 당초 계획보다 용역 기간이 증가(4개월)하여 설계용역 및 실증연구장비 구매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12월 15일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은 2027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2025년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사업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li> <li>- `25.07월 : 설계 용역 착수 및 현장조사</li> <li>- `25.08월 :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관·업체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li> <li>- `25.09월 : 기본설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li> <li>- `25.10월 : 기본 설계 수행</li> <li>- `25.11월 : 실증연구장비 발주</li> <li>- `25.12월 : 설계용역 중지(사유: 포항시 ↔ LH 토지사용승낙 지연)</li> <li>- `26.01월 : 용역 재개(`26.1.22.)</li> <li>- `26.02월 : 실시 설계 수행</li> <li>- `26.03월 :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li> </ul>
---

- '26.0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자문회의
- '26.0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6.06월 : 시설공사 발주
- '26.7~8월 : 시설공사 입찰 진행
- '26.09월 : 시설공사 착공
- '27.11월 : 시설공사 준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부대비용과 공사비 전액인 89억 7,000만원을 2026년 계획안에 편성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sup>1)</sup>가 2026년에도 연장적용될 경우 선금으로 공사비를 100%를 지급하여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2026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총액(A+B)	2025년(A)	2026년(B)
<b>총 계</b>	<b>15,600,000,000</b>	<b>6,630,000,000</b>	<b>8,970,000,000</b>
<b>[물건비]</b>	<b>100,000,070</b>	<b>49,893,200</b>	<b>50,106,870</b>
<b>운영비</b>	<b>59,347,000</b>	<b>29,480,000</b>	<b>29,867,000</b>
1) 일반수용비	33,440,000	16,480,000	16,960,000
2) 임차료	25,907,000	13,000,000	12,907,000
<b>여비</b>	<b>40,653,200</b>	<b>20,413,200</b>	<b>20,240,000</b>
1) 국내여비	40,653,200	20,413,200	20,240,000
<b>[자산취득]</b>	<b>15,045,631,000</b>	<b>6,387,000,000</b>	<b>8,658,631,000</b>
<b>건설비</b>	<b>15,045,631,000</b>	<b>6,387,000,000</b>	<b>8,658,631,000</b>
1) 설계비	700,000,000	700,000,000	0
2) 공사비	13,238,000,000	5,677,000,000	7,561,000,000
3) 감리비	1,052,000,000	0	1,052,000,000
4) 시설부대비	55,631,000	10,000,000	45,631,000
<b>[일반관리비]</b>	<b>454,368,930</b>	<b>193,106,800</b>	<b>261,262,130</b>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선금지급한도가 100분의 70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은 2025년에도 절차지연으로 90%가 넘는 예산이 이월되었고, 2026년 예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종료에 따라 선금지급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어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이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472억 1,900만원이며, 3,565억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1.8%인 1,490억 9,000만원을 수납하고, 2,052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1억 6,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5,397	325,397	325,397	315,408	119,666	193,573	2,168	37.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562	94	467	-	1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822	21,822	21,822	40,534	29,319	11,216	-	7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10	10	-	-	100.0
합 계	347,219	347,219	347,219	356,515	149,090	205,257	2,168	41.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6,456억 5,100만원이며, 이 중 96.8%인 6조 4,338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78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718,293	5,960,488	5,962,589	5,763,395	3,953	195,241	96.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6,620	131,669	131,669	131,660	-	9	1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2,902	152,902	152,902	151,432	-	1,470	99.0
고등·평생교육자원특별회계	398,491	398,491	398,491	387,386	-	11,105	97.2
합계	6,326,306	6,643,550	6,645,651	6,433,874	3,953	207,825	96.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54조 8,035억 8,000만원으로, 계획현액 54조 8,035억 8,000만원 중 54조 7,199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9%인 46조 4,671억 4,500만원을 수납하고 7조 8,923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604억 6,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 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7,695,504	27,695,504	27,695,504	25,847,414	23,713,281	2,056,539	77,592	91.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3,418,118	23,418,118	23,418,118	20,416,883	18,902,515	1,410,808	103,560	92.5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27	914,227	914,227	5,324,492	956,723	4,197,720	170,048	18.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82,936	2,182,936	2,182,936	2,402,068	2,366,359	32,784	2,926	98.5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23	592,795	592,795	729,107	528,269	194,505	6,334	72.4
합계	54,776,908	54,803,580	54,803,580	54,719,962	46,467,145	7,892,357	360,460	84.9

자료: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54조 8,035억 8,000만원으로 계획현액 54조 8,036억 2,500만원 중 84.8%인 46조 4,67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83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7,695,504	27,695,504	27,695,525	23,713,279	148	412,072	85.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3,418,118	23,418,118	23,418,142	18,902,515	172	23,538	80.7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27	914,227	914,227	956,723	12	32,000	10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82,936	2,182,936	2,182,936	2,366,359	-	112	108.4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23	592,795	592,795	528,269	-	20,648	89.1
합 계	54,776,908	54,803,580	54,803,625	46,467,145	332	488,370	84.8

자료: 고용노동부

####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7,380억 7,600만원(5.0%)이 감소한 33조 1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2,578억 3,400만원(4.0%)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2,561	347,209	347,209	149,082	△198,127	△63,479
기금	31,529,722	34,390,974	34,390,974	32,851,035	△1,539,939	1,321,313
합계	31,742,283	34,738,193	34,738,193	33,000,117	△1,738,076	1,257,83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971억 8,400만원 (1.8%)이 감소한 37조 3,54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8,080억 1,400만원(8.1%)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712,100	5,754,924	6,072,168	5,862,492	△209,676	150,392
기금	28,834,760	29,590,265	31,979,887	31,492,382	△487,505	2,657,622
합계	34,546,860	35,345,189	38,052,055	37,354,874	△697,181	2,808,01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산은 53조 4,323억 4,600만원, 부채는 44조 5,425억 8,600만원으로 순자산은 8조 8,897억 6,0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49조 9,542억 700만원, 유무형자산 3조 4,527억 8,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7,339억 6,800만원(7.5%) 증가하였다.

부채는 차입부채 8조 2,117억 500만원, 총당부채 411억 4,600만원, 기타부채 36조 2,897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5,091억 8,600만원 (6.0%)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3,432,346	49,698,379	3,733,968	7.5
Ⅰ. 금융자산	49,954,207	46,269,738	3,684,470	8.0
Ⅱ. 유무형자산	3,452,783	3,408,805	43,978	1.3
Ⅲ. 기타자산	25,356	19,836	5,520	27.8
부 채	44,542,586	42,033,400	2,509,186	6.0
Ⅰ. 차입부채	8,211,705	9,396,064	△1,184,359	△12.6
Ⅱ. 총당부채	41,146	34,118	7,028	20.6
Ⅲ. 기타부채	36,289,734	32,603,217	3,686,517	11.3
순 자 산	8,889,760	7,664,979	1,224,782	16.0
Ⅰ. 기본순자산	1,642,626	1,643,105	△479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09,223	440,269	△1,749,491	△397.4
Ⅲ. 순자산 조정	8,556,357	5,581,605	2,974,752	53.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조 2,124억 2,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9조 1,315억 8,2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4,544억 600만원, 비배분비용 5,997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429억 8,400만원, 비배분수익 2조 3,899억 3,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0조 403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4조 7,174억 400만원(14.1%) 증가한 38조 2,527억 8,3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8,588,597	33,652,207	4,936,391	14.7
가. 프로그램 총원가	39,131,582	34,428,140	4,703,441	13.7
나. 프로그램 수익	542,984	775,934	△232,949	△30.0
II. 관리운영비	1,454,406	1,388,001	66,405	4.8
III. 비배분비용	599,710	504,515	95,195	18.9
IV. 비배분수익	2,389,931	2,009,344	380,586	18.9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38,252,783	33,535,379	4,717,404	14.1
VI. 비교환수익 등	30,040,364	29,139,102	901,261	3.1
VII. 재정운영결과(V-VI)	8,212,420	4,396,277	3,816,143	86.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7조 6,649억 7,900만원이고, 기말순 자산은 8조 8,897억 6,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2,247억 8,000만원(16.0%) 증가하였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조 6,122억 5,0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490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조 9,810억 9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62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7,664,979	4,946,037	2,718,941	55.0
II. 재정운영결과	8,212,420	4,396,277	3,816,143	86.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463,160	6,112,567	350,592	5.7
IV. 조정항목	2,974,042	1,002,651	1,971,391	196.6
V. 기말순자산(I-II+III+IV)	8,889,760	7,664,979	1,224,782	16.0

자료: 고용노동부

##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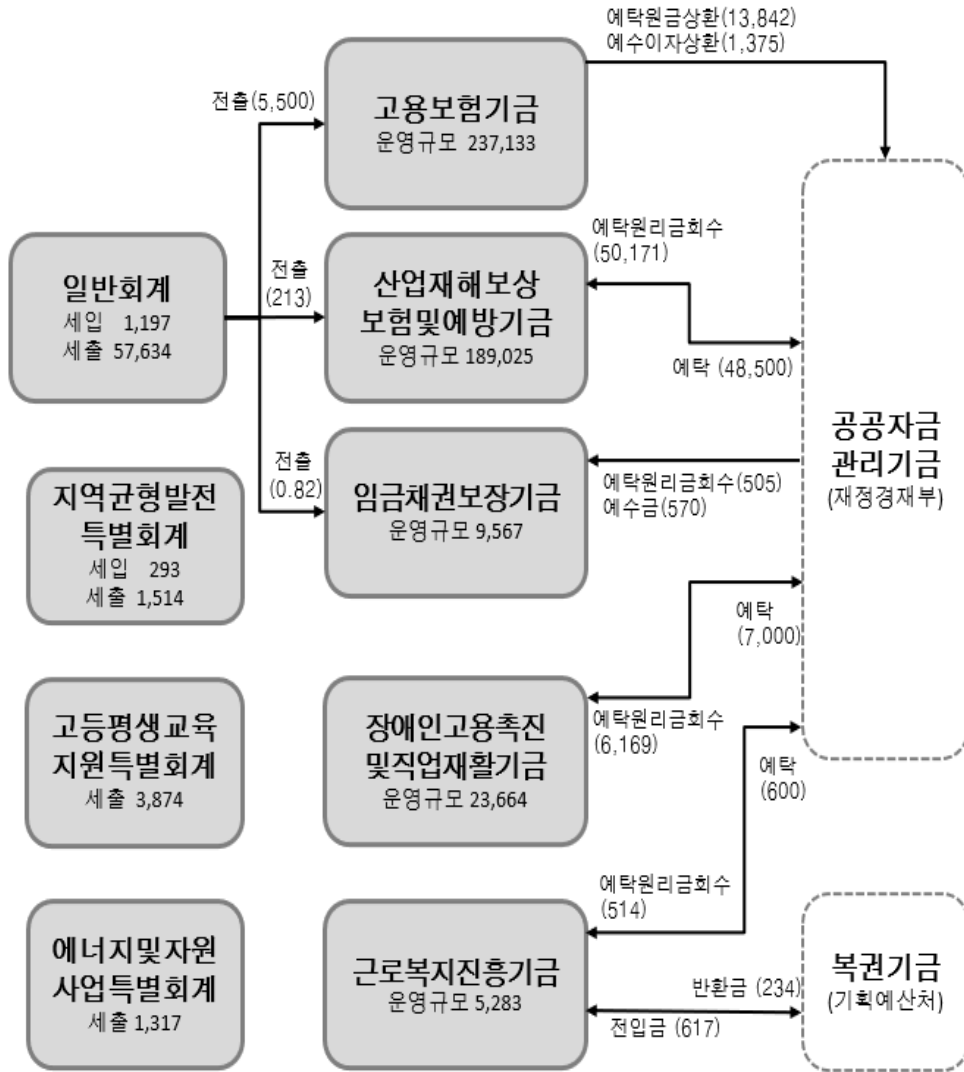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5,5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21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00만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원금 1조 3,842억원, 예수이자 1,375억원을 상환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85억원을 예탁하고 501억 7,100만원의 예탁원리금을 회수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리금 505억원을 회수하고 570억원을 예수받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고 6,169억원의 예탁원리금을 회수하였으며,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514억원의 예탁원리금을 회수하였다. 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617억원을 전입받아 234억원을 반환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②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③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등이 있다.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은 해외인턴형 일경험 사업 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61억원이 감액(2,979억원→2,918억원)되었고,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억원이 감액(3,057억원→3,007억원)되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69억원이 감액(1,701억원→1,632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직장적응 지원 사업**, ②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 ③ **탄력운영제 사업** 등이 있다.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입사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함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 시행할 것”,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연수지역을 국내로 한정하고, 연수기간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탄력운영제 사업은 “탄력운영제 운영을 위해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고용노동부는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② 신산업,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④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및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근로자 복지 증진** ⑤ 재해근로자의 신속·공정한 보상 및 사망 **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본예산 편성 당시 규모도 집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II유형 중 청년 유형과 건설업 퇴직자 유형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는바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편성 단계에서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내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해 사망·사고 발생건수나 사고사망만인율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산재예방 사업의 설계가 필요하다 보인다.

다섯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유자금 운용 등 비중이 높고 사업비 비중은 이에 맞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바, 조성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 규모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추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된 규모도 미집행**

가. 현황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sup>1)</sup>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 8,025억 9,700만원 중 111억 7,100만원을 인건비 부족에 따라 본부인건비, 노동위원회 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로 이용하였고, 계획 현액 7,914억 2,600만원 중 7,188억 1,900만원을 집행 726억 700만원을 불용(9.2%)하였다.

[2025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77,181	802,597	-	△11,171	791,426	718819	-	72,607	907,959	925,126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애로청년<sup>2)</sup>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까지 I·II 유형으로 구분되어 II유형의 경우 이른바 ‘빈일자리업종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업종’ 취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항]

구분	2025		2026	
지원 수준	기업	I·II유형: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청년	II유형: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최대 480 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180만원 (최대 480~720만원)
기업 요건	I·II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 자수×1,900만원’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 험자수×1,900만원’ 이상	
취업 애로 청년	I유형	적용	수도권	적용(청년일경험지원·일학 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II유형	적용하지 않음	비수도권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기업	I·II유형 : 6·9·12개월(3회차) 고용 유지(최대 720만원)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 6·9·12개월(3회차) 고용 유지(최대 720만원)
	청년	II유형 : 6·12·18·24개월(4회차) 근속(최대 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 6·12·18·24개월(4회차) 근속(최대 72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 수료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 3)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면서 지원인원을 전체 10만명에서 10.7만명으로 확대하고(I유형 55,000명 → 58,850명, II유형 45,000명 → 48,150명),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에 대한 장기근속인센티브를 기존 18·24개월 차에 각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 대신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25년에 지출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254억 1,600만원(사업주 지원금 85억 7,100만원(I유형 47억 1,500만원 + II유형 38억 5,700만원), II유형 청년지원금 159억 8,600만원) 증액한 바 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추경안	
	단일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I유형	II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좌동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좌동	좌동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720만원 (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만 지원)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000명	45,000명	58,850명	48,150명
		10만명		10.7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된 규모도 집행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025년 목표인원을 최근 청년고용 상황과 최근 도약장려금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만명(I유형 5., II유

형 4.5만명5)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25년 3월 당시 청년고용률이 44.5%로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률은 7.5%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쉬었음 청년 인구가 45.5만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동 사업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당시의 금액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7,771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4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7,188억 1,900만원만을 집행하고 111억 7,100만원은 본부 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로 이용, 726억 7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77,181	802,597	-	△11,171	791,426	718,819	-	72,607	907,959	925,12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777,181	802,597	-	△11,171	791,426	718,819	-	72,607	907,959	925,126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불용이 상당 규모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동 사업 지원금은 해당 사업 연도에 대한 신지원금과 이전 사업 연도에 대한 잔여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년 신규 지원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추경 증액분을 포함한 신규지원금은 모두 집행완료되었으나, 잔여지원금에서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잔여지원금에서 불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① 동 사업 지원금은 청년이 취업한 근속 6개월에 1회차 지원금, 9개월에 2회차 지원금, 12개월에 3회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기업에 따라 12개월차에 1~3회차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추계시에는 해당 사업 연도 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차년도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sup>6)</sup>, ② 동 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위적

5) 2022~2023년 지원실적 중 빈일자리 업종 비율 평균값이 46.7%였던 점을 고려하여 유형별 인원을 설정하였다.

감원 등 지원제외요건<sup>7)</sup> 등<sup>8)</sup>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인위적 감원으로 지원제외요건에 해당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절차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 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 마감
25.2.23.	25.8.22.	25.10.31.	25.11.22.	26.1.31.	26.2.22.	26.4.30.

-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턴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턴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턴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불용 사유로 제시한 것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 구조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22년도부터 동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고, 기존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차년도에 지급하는 경우 및 지원제외요건에 해당되어 탈락되는 사업주가 있었는바 추경예산 대비 837억 7,800만원(10.4%)의 예산을 불용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을 불용하고 있어 더욱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 
- 6) 고용노동부는 기업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기업지원금 및 청년근속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신청 기간이 도래한 기업에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임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령을 위해 기업이 인위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업은 첫 청년 고용 3개월 전부터 마지막 청년 고용 1년 후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 8) 이외에도 중복 지원, 상습 체불·산재 발생 기업, 기업의 자진 중단 등의 이유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연도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A/B)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542,820	542,769	-	-	542,769	233,321	43.0	309,448
2023	889,078	889,078	-	-	889,078	719,429	80.9	169,649
2024	657,680	657,680	-	-	657,680	537,609	81.7	120,071
2025	777,181	802,597	-	△11,171	791,426	718,819	90.8	72,607
2026	907,959	925,126	-	-	925,126	-	-	-

주: 2022년~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추경 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일부 이용하였다.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의 발생으로 예산 이용이 불가피하였던 점과 연말 본예산의 불용이 확실시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해 증액한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9).

[2025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2.1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043-301)	310-04	11,171	본부인건비 (7001-100)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자료: 고용노동부

9) 다만 고용노동부는 신규 근로감독관 직제 반영(25.8.24.)과 추경 편성(25.5.1., 25.7.4.) 사이의 시차가 존재해 추경 편성 당시 인건비의 추가 소요를 알 수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경상적·의무적 성격의 인건비를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것은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산 이용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해결이 어려워 추경과 무관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내일배움카드(일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도 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등

### 가. 현 황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sup>1)</sup>은 급격한 기술발전예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계획현액 5,961억 6,100만원 중 5,938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 22억 8,200만원을 불용(0.4%) 하였다.

[2025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일반)	580,161	580,161	-	-	596,161	593,841	38	2,282	627,325	778,545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8,116	478,116	-	△500	477,616	476,994	-	622	521,313	573,703
첨단산업· 디지털 기초 역량훈련	20,000	20,000	-	-	20,000	19,525	-	475	20,000	20,000
돌봄서비스 훈련	33,100	33,100	-	500	33,600	33,577	-	23	29,440	29,440
일반고 특화훈련	45,557	61,557	-	-	61,557	60,619	-	938	55,383	55,383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	900	900	-	-	900	900	-	-	-	-
K-뉴딜 아카데미	-	-	-	-	-	-	-	-	-	98,830
운영비	2,488	2,488	-	-	2,488	2,218	38	232	1,189	1,189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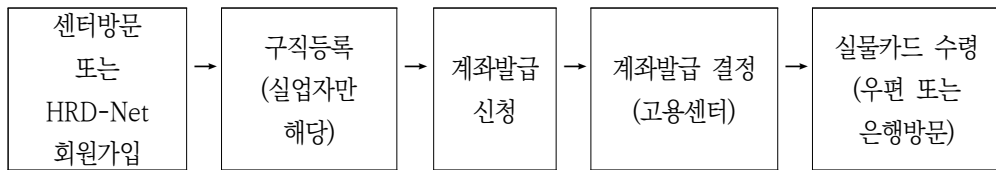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일부를 제외하면<sup>2)</sup> 모든 국민이 발급 대상이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sup>3)</sup>에서 회원가입한 후 절차를 완료하고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이며 참여자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sup>4)</sup>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고,<sup>5)</sup>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2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그리고 특별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담 훈련비)가 아닌 정부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 등이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2)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 <https://www.k-hrd.net/landingpage/main.html>

4) 원칙적으로는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나,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2023.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하는 등이다.

특별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2025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개요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훈련과정 참여기간
지원요건	출석률에 따른 훈련비 및 단위기간별 80%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 등 지원
지원수준	훈련비 전액 지원(1회),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지급
지원목표	45,125명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집행실적을 확인하면 목표인원 45,125명의 93.5%에 이르는 42,191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예산액 4,781억 1,600만원 중 99.8%에 이르는 4,769억 9,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결산		
	목표인원	실시인원	지원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1	24,015	11,727	48.8	221,832	81,205	36.6
2022	28,521	22,394	78.1	305,562	232,967	76.2
2023	36,580	31,922	87.3	414,260	369,114	89.1
2024	44,000	37,628	85.5	475,688	475,499	100.0
2025	45,125	42,191	93.5	478,116	476,994	99.8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훈련기관 확대가 미흡하여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훈련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2025년 기준 전체 훈련 기관<sup>6)</sup> 중 7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5년 수도권의 훈련기관은 130개소에서 25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것에 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훈련기관은 55개소에서 82개소로 상대적으로 인프라 확보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연도별·지역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현황]

(단위: 명, %)

지역	2022		2023		2024		2025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수도권	130 (70.3)	19,356 (86.4)	194 (73.8)	28,306 (88.6)	252 (75.7)	34,323 (91.2)	252 (75.4)	44,244 (92.7)
비수도권	52 (28.1)	2,948 (13.2)	65 (24.7)	3,513 (11.0)	75 (22.5)	3,230 (8.3)	77 (23.1)	3,391 (7.1)
인구감소지역	3 (1.6)	96 (0.4)	4 (1.5)	113 (0.4)	6 (1.8)	94 (0.2)	5 (1.5)	83 (0.2)
합계	185 (100.0)	22,400 (100.0)	263 (100.0)	31,932 (100.0)	333 (100.0)	37,647 (100.0)	334 (100.0)	47,71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는 대학, 직업훈련전문기관, 기업들을 중심으로 훈련기관을 선정한다.

7)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2026년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운영기관 공모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관 9개를 신규 선정하는 등 비수도권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나 지역 소재 기업 등과 협업해 훈련기관과 훈련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일배움카드 예산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분리되어 편성되고 있는데 분리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현재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누어 편성되고 있으며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사업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돌봄서비스 훈련이,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sup>8)</sup> 사업은 일반직종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이 편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일반)	580,161	580,161	-	-	596,161	593,841	38	2,282	627,325	778,545
내일배움카드 (고보)	603,198	603,198	-	-	603,198	543,371	37	59,690	508,979	508,979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 회계별 주요 훈련 목록]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직종훈련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돌봄서비스 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

자료: 고용노동부

8) 고용보험기금 1151-352

동일하게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두 회계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일배움카드가 2019년까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분리되어 운영된 것에 기인한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가입 이력’ 유무를 기준으로 고보가입 이력이 있으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력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지원하였으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훈련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는 훈련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에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 방식이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성격, 목적의 특화 여부 등에 따라 회계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유사한 훈련 내용이 상당한바<sup>9)</sup>,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오히려 현재와 같이 유사한 사업을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면 동 사업의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상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편성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기존 편성 방식대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9)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중복 직종 훈련 폐지 등 사업 간 중복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음.

10)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2026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두 사업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인원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이관하여 편성 및 전환하였고, 2027년 훈련 심사 공고에서도 해당 중복 직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규 선발에서 제외하였다는 설명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가.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sup>1)</sup>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8,457억 900만원이었으나 202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따라 1,651억 5,600만원이 증액(19.5%)되어 예산현액은 1조 108억 6,5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9,20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898억 9,000만원(8.9%)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정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 지원제도	845,709	1,010,865	-	-	1,010,865	920,975	-	89,890	1,012,880	1,092,933
Ⅰ 유형	714,087	853,100	-	-	864,842	817,948	-	46,893	873,620	952,243
Ⅱ 유형	130,657	156,800	-	-	145,058	102,022	-	42,996	138,245	138,245
전산망강화	965	965	-	-	965	965	-	-	965	965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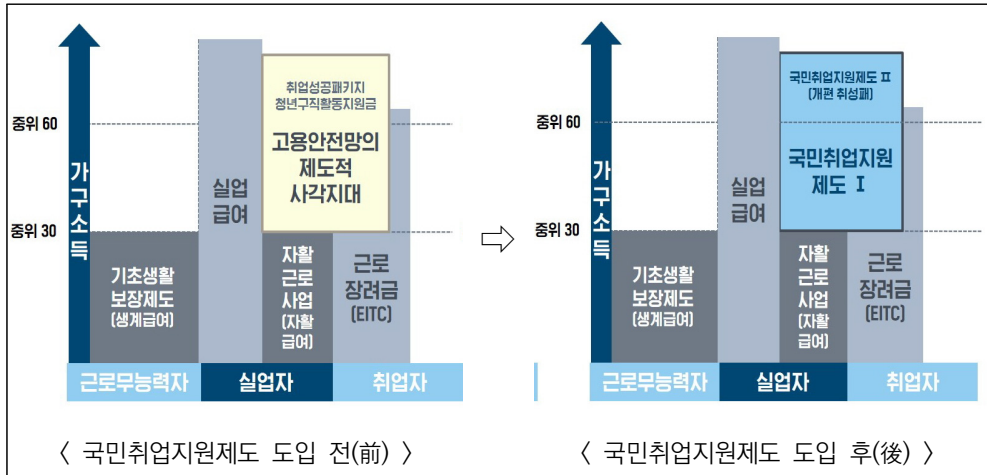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sup>1)</sup>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 유 형	특정계층 <sup>2)</sup>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sup>1)</sup>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능함 2)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15~25만원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	<b>본예산 215,000명 → 제2회추경 242,000명</b>		<b>본예산 90,000명 → 제2회추경 118,000명</b>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	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I 유형과 달리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을 제공하지 않고 참여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I 유형이 취업촉진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 달리, II유형은 취업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I 유형 대상 인원을 215,000명, II유형 대상 인원을 90,000명으로 하였으나, 202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통해 I 유형 대상 인원을 27,000명 늘려 242,000명으로, II유형 대상 인원을 90,000명에서 28,000명 늘려 118,000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종 실업자 증가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업 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sup>2)</sup>(대상인원 1만명)하였다.

[202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목표인원 변경내역]

(단위: 명)

구분		당초 목표인원	변경 목표인원
I 유형	요건심사형	90,000	117,000 (+27,000)
	선발형(비경험)	20,000	20,000 (변동 없음)
	선발형(청년)	105,000	105,000 (변동 없음)
	소계	215,000	242,000 (+27,000)
II 유형	특정계층	12,000	12,000 (변동 없음)
	<b>청년층</b>	68,000	78,000 <b>(+10,000)</b>
	중장년층	10,000	18,000 (+8,000)
	<b>건설업 퇴직자</b>	-	10,000 <b>(+10,000)</b>
	소계	90,000	118,000 <b>(+28,000)</b>

자료: 고용노동부

2) 건설업 퇴직자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참여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훈련참여수당도 월 최대 20만원을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의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청년층 목표인원이 다소 도전적인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증가 가능성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방고용관서 등과 협업을 통해 건설업 퇴직자의 동 사업 참여를 제고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II유형-청년층의 경우 본예산 당시 목표 인원이었던 68,000명에도 못 미치는 달성률을 보였을뿐만 아니라, II유형-건설업 퇴직자의 경우 목표 인원의 10.2%를 달성하는 것에 그쳤다.

[2025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집행결과]

(단위: 명, %)

구분		목표인원 (A)	참여인원 (B)	달성률(B/A)
I 유형	요건심사형	117,000	106,220	90.8
	선발형(비경험)	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	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II 유형	특정계층	12,000	15,032	125.3
	청년층	78,000	<b>56,831</b>	<b>72.9</b>
	중장년층	18,000	16,672	92.6
	건설업 퇴직자	10,000	<b>1,019</b>	<b>10.2</b>
	소계	118,000	<b>89,554</b>	75.9

자료: 고용노동부

II유형-청년층의 경우 연도별 참여인원을 확인하면 꾸준히 4만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동 사업의 별다른 내용 개편 없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목표인원을 평소 참여인원 대비 2배에 가깝게 증가시킨바 편성 당시부터 목표 미달성 및 예산 불용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II유형의 목표인원을 확대해 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려 했었다는 입장이나, 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단순히 사업의 목표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구조 변경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	1,650	6,407	4,342	3,342	3,163	3,493	3,289	2,803	2,583	2,457	2,312	2,044	37,885
2022	2,884	2,928	3,540	2,647	4,032	3,844	3,231	2,996	1,216	4,461	3,300	2,632	37,801
2023	2,666	2,866	3,403	3,082	4,526	4,086	3,571	3,197	2,917	3,294	3,512	2,589	39,709
2024	3,149	2,664	3,012	3,244	4,262	3,772	4,266	3,268	3,112	4,130	2,746	2,634	40,259
2025	2,875	3,119	3,286	4,486	3,937	3,621	9,897	7,702	5,782	4,204	3,843	4,079	56,831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건설업 퇴직자의 경우에도 매년 2,500명 내외의 인원만이 사업에 참여하였던바 고용노동부가 계획한 목표인 1만명은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참여수당 10만원의 추가지급과 훈련비 20만원 인상 지급을 인센티브로 제시하였으나,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보다는 즉각적인 근로 및 금전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참여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데, 건설업 근로자가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2025년 기준 약 월 193~198만원<sup>3)</sup>을 수급하게 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수당으로 2025년 기준 약 월 83만원<sup>4)</sup>을 수급하는 것에 그쳐 구직급여 수급 대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

3) 6만 4,192원\*30일=192만 5,760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2025년 참여자들에게 참여수당 15~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000원으로 월 최대 53만 4,000원을 제공하였고, 건설업 퇴직자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참여수당 1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건설업 퇴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하는 경우 총 월 최대 83만 4,000원을 수령하였음.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현황]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특정계층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115	114	107	108	119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이 건설관련 업종인 경우*	2,744	1,908	2,168	2,237	2,465
합계	2,859	2,022	2,275	2,345	2,584

※ 2025.12월 마감 자료 기준

\* (산출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사업장(상용)이 해당 업종인 자이거나, 3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고 마지막 일용근로 사업장이 해당 업종인 자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참여자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인원만 확대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재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같은 사유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필요

### 가. 현 황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sup>1)</sup>은 근로감독 인프라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춘 근로기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 등 근로 감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133억 2,600만원으로 13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원(1.6%)를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근로감독 역량강화	13,311	13,311	15	-	13,326	13,114	-	212	54,453	54,453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2조<sup>2)</sup>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sup>3)</sup>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9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근로감독관은 「사

정환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 1) 코드: 일반회계 3032-306
- 2)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15개 법률<sup>4)</sup>에 대한 근로 조건 기준 확보 여부를 현장 근로감독하고, 진정·고소사건 상시 접수·수사, 노사분규 예방·지도 등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4개 법률<sup>5)</sup>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신고사건 처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수사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수시직제를 통해 근로감독관 기준 정원을 당초 2,241명에서 2,686명으로 450명 증원하였고, 산업안전감독관 기준 정원을 당초 892명에서 1,442명으로 550명 증원하였다. 2026년도에는 근로감독관의 경우 350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기준 정원을 3,03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산업안전감독관은 650명 증원하여 기준정원을 2,09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원계획]

	기존 정원	수시직제 (2025)	2026년 총원계획
근로감독관	2,236명	+450명	+350명
기준정원	2,236명	2,686명	3,036명
산업안전감독관	892명	+550명	+650명
기준정원	892명	1,442명	2,092명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 근로감독관 인력 총원에 따라 사업장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관리·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5)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불임금 청산 업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진정 접수 및 처리 업무, 비정형적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등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특히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체불임금 사건 증가 등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하게 되는 신고 사건 수가 연간 185건에 이르는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 임금체불 사건의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건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체불액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임금 증빙자료 확인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바 개별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연도별 근로감독관 인원 및 업무 현황]

(단위: 명, 개소,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로감독관 정원		2,307	2,283	2,260	2,236	2,249
근로감독관 현원		2,001	2,126	2,141	2,141	2,051
신고사건 처리 건수	접수	346,486	335,279	400,800	429,663	373,953
	처리	322,994	310,805	370,653	398,041	377,942
인허가·체불청산지원· 신고및심사 건수		223,464	216,169	529,511	289,833	238,875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고사건 접수	314,308	305,519	371,116	394,145	373,953
신고사건 처리	322,994	310,805	370,653	398,041	377,942
임금체불	278,331	264,820	333,995	365,474	341,652
직장내괴롭힘	7,301	9,292	10,696	13,380	16,649
직장내성희롱	844	871	1,112	1,175	1,197
그 외 유형	47,124	46,822	38,111	34,438	36,483

자료: 고용노동부

개별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접수와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부담으로 실제 사업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업무 역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하나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적 해결에 해당하는바, 사전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시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점검 횟수는 저조한 편이다<sup>6)</sup>.

[주요국가의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

(단위: 건)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
근로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	19.6	55	104	55.2	28

주. 다만 산업안전감독 분야를 제외한 노동분야 근로감독관의 감독·점검 건수는 연간 14.3회 수준  
 자료: ILOSTAT,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참조('25. 4. 1. 발표 '23년말 기준)

향후에도 신고사건 접수 건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증원된 인력이 신고사건 처리에 편중되어 사업장 감독·점검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다만, 우리나라 근로 감독의 경우 단순 점검 방식이 아니라 19개 노동·산업안전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감독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황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sup>1)</sup>은 노동자 직무능력 및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3,006억 7,000만원 중 2,917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88억 7,100만원(3.0%)를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 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300,670	300,670	-	-	300,670	291,799	-	8,871	249,668	249,668
일반훈련	195,424	211,351	-	-	211,351	206,860	-	4,491	210,237	210,237
혁신형 기업훈련	51,867	38,867	-	-	38,867	35,535	-	3,332	-	-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32,706	29,279	-	-	29,279	28,431	-	849	35,899	35,899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19,041	19,541	-	-	19,541	19,446	-	95	-	-
운영비	1,632	1,632	-	-	1,632	1,527	-	105	3,532	3,532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2-350

내역사업인 일반훈련 사업은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직무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 장기유급휴가훈련,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장기유급휴가훈련은 일반 장기유급휴가훈련과 외국인력 특화훈련으로 구분된다. 일반 장기유급휴가훈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장기간 유급휴가를 주고,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① 직무향상 과정, ② 직무향상 과정 및 디지털 융합훈련, ③ 노동전환의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 등을 공동훈련센터 또는 민간훈련기관에서 최소 4주 이상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인력 특화훈련은 입국 1년 이내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유자)에 대하여 직무기초, 산업안전, 한국어 및 문화 등에 대하여 1~4주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 288억 3,200만원 중 247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41억 2,900만원이 불용(14.3%)되었다.

[장기유급휴가훈련 개요]

구분		장기유급휴가 일반훈련	외국인력 특화훈련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좌동
	근로자	· 동종 업종 1년 이상, 해당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2가지 모두 충족)	· 입국 1년 이내 외국인근로자(E-9)
내용		· 직무향상 과정 또는 직무향상+디지털 신기술훈련, 직무전환, 이·전직훈련	· 직무기초+산업안전+한국어·문화
훈련기간		· 20일 이상 유급휴가, 4주 이상 실시 - 단, 최소 1주 단위로 실시 - 연속하여 4주 이상 또는 훈련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1주 단위로 분할 가능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1~4주로 운영
지원 내용	임금	· 훈련기간에 비례 일 단위 지원 · 최저임금 150% 한도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한도 미포함 · 일 6시간 이상 훈련시 8시간분 임금 지원 · 일 6시간 이상씩 1주(5일) 충족 시 주휴수당 지원	· 좌동

구분		장기유급휴가 일반훈련	외국인력 특화훈련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CS<sup>1)</sup> 기준단가 100%</li> <li>*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조선업은 NCS 기준단가 150%</li> <li>· 1인당 연 1천만원 한도</li> <li>*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한도(고용보험료 240%) 미포함(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CS 기준단가 200%</li> </ul>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식비: 1일 14,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주: 1)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은 NCS 직종 분류에 따라 설정된 NCS 기준단가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특화훈련 추진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목표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은 특정 업종의 경기 불황,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요인에 따른 기업의 핵심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시범사업으로서 2020년 경상남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중구까지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에는 지역 및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시범실시하는 등 사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16시간 이상)<sup>2)</sup>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sup>3)</sup>, 현재 16시간의 법정교육만으로는 산업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필요성은 높은 상황이다.

2) 동 교육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2022~2025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경우 조선업 수주량 증가 등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sup>4)</sup> 및 도입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훈련과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구분하여 목표인원을 각 4,000명으로 설정하고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목표인원을 6,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목표인원		지원인원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	외국인력	일반	외국인력		
2022		10,000	4,662	-	36,040	15,800 (43.8)
2023		10,000	2,927	129	36,040	10,853 (37.6)
2024	4,000	4,000	2,879	755	28,832	13,504 (46.8)
2025	2,000	6,000	5,624	1,162	28,832	24,703 (85.7)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면 2024년은 목표인원이 4,000명인것에 비해 실제 집행인원은 755명에 그쳤고, 2025년은 목표인원이 6,000명이었으나 실제 집행인원은 1,162명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해당 훈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외국인력 특화훈련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당초 예상만큼 외국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sup>5)</sup>.

[2022~2025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업무상 사고	신청	8,497	9,011	9,407	9,194
	승인	8,285	8,790	9,155	8,942
업무상 질병	신청	389	532	754	2,138
	승인	224	307	416	1,273

자료: 고용노동부

4) 조선업 외에 금형 등 일반 제조업과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규 업종인 임업, 광업, 호텔콘도업, 음식점 등 7개로 확대하였다.

E-9 비자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까지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배치 및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인원 한도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6), E-8(계절근로)7)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활용 증가로 E-9 비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제 도입인원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2024년 78,645명, 2025년 54,615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은 지속적인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5년 업종별 E-9 도입인원 한도 및 발급인원]

(단위: 명)

구 분	총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sup>2)</sup>	
2022	한도 <sup>1)</sup>	69,000	52,632	-	9,684	4,940	1,561	183	-
	발급인원	66,987	50,988	-	9,482	4,874	1,541	102	-
2023	한도	120,000	89,470	2,439	12,950	8,568	3,699	1,870	1,004
	발급인원	114,338	88,657	1,944	11,966	8,481	2,820	470	-
2024	한도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발급인원	78,645	60,091	1,509	8,753	6,227	1,283	782	-
2025	한도	98,000	72,000	2,500	10,000	8,500	2,000	3,000	32,000
	발급인원	54,615	38,083	901	8,181	5,890	1,038	522	-

주: 1) 최초배정분에서 탄력배정분 등을 반영한 조정쿼터 기준

2) 탄력배정분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특화훈련 운영기관을 2023년 6개에서 2024년 27개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허가제와 연동하여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동 훈련을 안내·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력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심사 시 가점<sup>8)</sup>을 부여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반면 일반 장기유급휴가훈련의 경우 목표인원이 2,000명이었으며 실 집행인원은 5,624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높은 집행률에 대해 2025년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및 공정 지원, 산업전환(내연기관→친환경)에 따른 공정 일시 중단,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공사 지원 등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등 업황 악화로 장기유급휴가훈련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6)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분야(예: IT·엔지니어링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주로 발급

7) 농·어업 등 계절성 업종에서 단기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로 발급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한도 변화 추이를 감안 외국인력 특화훈련 수요를 재점검하여 목표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훈련 참여 대상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2026년 기준 고용허가 점수제 평가지표]

구분	세부내용
가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li> <li>· 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li> <li>· 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 인원 비율</li> <li>·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li> <li>·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li> <li>·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li> <li>· E-9 근로자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li> <li>·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li> </ul>
감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li> <li>·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li> <li>·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li> <li>· 기숙사 요건 미충족</li> <li>·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li> </ul>

자료: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60세 이상 고령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 개편 필요

### 가. 현 황

구직급여 사업<sup>1)</sup>은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은 12조 6,070억 4,600만원이며, 이 중 12조 3,654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415억 5,700만원(1.9%)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구직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구직급여	10,917,074	12,607,046	-	-	12,607,046	12,365,489	-	241,557	11,537,611	11,537,611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한של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280-350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단기 실업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고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잦은 이직을 방지하는 한편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020년 이후로 구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로 2020~2021년 지급액이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을 제외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지출 규모를 확대해왔다.

[2020~2025 구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금액			수급자 수	
	계획액		집행액	예상인원	지급인원
	당초	수정			
2020	95,158	130,312 (+35,154)	118,556	1,368,699	1,702,725
2021	113,486	126,281 (+12,795)	120,625	1,640,954	1,774,614
2022	115,339	111,807 (△3,532)	109,105	1,717,921	1,631,270
2023	111,839	113,468 (+1,629)	113,071	1,610,766	1,671,623
2024	109,144	117,878 (+8,734)	117,403	1,594,365	1,697,150
2025	109,171	126,070 (+16,900)	123,655	1,799,406	1,722,415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업인정 방식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제도는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가 된 수급자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구직급여 수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돕는 재취업활동 촉진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제도는 단순히 구직자의 생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재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을 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수급자는 일정 기간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sup>2)</sup>. 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의 인적 특성을 감안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65세 미만은 최대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취업특강을 통한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60세 미만의 경우 자원봉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자원봉사 또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

### 2) 「고용보험법」

#### 제44조(실업의 인정)

-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온라인 취업특강, 자원봉사 실업인정 요건]

구분		실업인정 요건
온라인 취업특강	65세 미만	취업특강(2회), 직업심리검사(1회), 심리안정프로그램(1회)만 인정
	65세 이상 및 장애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횟수 제한 없음
자원봉사	60세 미만	인정하지 않음
	60세~64세	횟수: 1회 기준: 1일 4시간 이상, 같은 날 봉사활동만 합산 가능
	65세 이상 및 장애인	횟수: 제한없음 기준: 1일 4시간 이상, 같은 날 봉사활동만 합산 가능

주: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요건으로 온라인 취업특강 및 자원봉사 행위를 60세 이상의 경우 제한없이 인정하였으나, 2025년 12월 이를 개정하여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65세 이상에 한정하여 제한없이 인정하고, 자원봉사의 경우 60~64세와 65세 이상 요건을 달리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이로 인해 연도별 60세 이상 고령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내역을 확인하면,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볼 수 있다.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21년에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로 실업인정을 받는 비중은 15.4%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54.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실업인정건수	1,926,718	1,861,477	2,017,455	2,158,667	2,323,237
온라인교육(A)	289,092 (15.0)	456,806 (24.5)	716,733 (35.5)	1,006,568 (46.6)	1,205,662 (51.9)
자원봉사(B)	7,346 (0.4)	12,191 (0.7)	54,891 (2.7)	62,171 (2.9)	57,677 (2.5)
A+B	296,438 (15.4)	468,997 (25.2)	771,624 (38.2)	1,068,739 (49.5)	1,263,339 (54.4)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2,719,887	2,602,164	2,866,641	3,096,873	3,399,464
온라인교육(A)	376,076 (13.8)	664,373 (25.5)	984,589 (34.3)	1,392,850 (45.0)	1,734,200 (51)
자원봉사(B)	11,408 (0.4)	18,746 (0.7)	86,179 (3.0)	99,098 (3.2)	93,162 (2.7)
A+B	387,484 (14.2)	683,119 (26.2)	1,070,768 (37.3)	1,491,948 (48.2)	1,827,362 (53.8)

주: 1~8차 기간 동안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자료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실업인정건수 및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에서 해당 건수와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온라인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한 실업인정과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 활동이 구직급여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데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60세 이상 고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온라인교육과 봉사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각각 12.4%와 8.6%로 온라인교육, 봉사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재취업률(20.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sup>3)</sup>.

3)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온라인교육으로 최대 2회까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바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비교하였음

[재취업활동별 3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은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단위: 명, %)

재취업활동	2023		2024		2025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온라인 취업특강	145,393	12.1	168,589	12.2	208,159	12.4
자원봉사	13,367	8.5	13,212	8.7	12,478	8.6
구직 외 활동 전체	275,640	21.7	294,330	21.1	342,309	20.4
총계	434,400	18.1	476,131	17.6	562,946	17.2

주: 구직외활동 전체는 온라인취업특강, 봉사활동 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모든 구직 외 활동 중 같은 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받은 수급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취지상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60세 이상 수급자는 법정 정년 이후인 특성이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여건이 녹록지 않으므로 실업인정 요건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경제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sup>4)5)</sup>.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급여 수급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한다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재취업활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출액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sup>6)</sup>. 실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의 수지차와 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관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4) 또한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대상 구직급여는 평균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차이를 해소하는것에도 그 역할이 있어 고령자 대상 구직급여 지급요건은 완화적인 기초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5)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25년 12월 60세 이상에서도 상대적으로 구직의욕이 높고 취업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강화하여 구직외활동 인정횟수를 축소하였다.

6) 60세 이상 고령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단순 재취업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액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A)	12,062,473	10,910,504	11,307,120	11,740,341	12,365,489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액(B)	3,071,324	2,945,056	3,229,938	3,513,112	3,895,547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액 비중(B/A)	25.5	27.0	28.6	29.9	31.5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단위: 명, %)

연령대	2021		2022		2023		2024		2025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20세 미만	3,065	14.6	2,459	15.5	2,258	15.1	1,870	16.9	1,604	15.4
20세 이상 30세 미만	295,853	24.7	282,084	25.9	280,107	27.4	270,009	27	256,288	28.3
30세 이상 40세 미만	311,174	26.3	280,566	27	288,280	30.3	295,046	30.6	300,904	31.1
40세 이상 50세 미만	338,248	30.4	297,583	31.2	298,244	33.9	290,700	34.7	283,760	35.0
50세 이상 60세 미만	422,478	29.1	371,874	30.9	378,171	34.8	385,261	36.1	395,009	36.9
60세 이상 70세 미만	392,834	23.9	385,142	25.4	410,851	26	437,637	25.8	463,417	25.1
70세 이상	10,962	6.7	11,562	8.5	13,712	9.2	16,627	9.4	21,202	9.3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업급여	수 입(a)	14,814,055 (10,840,080)	13,567,529 (13,120,717)	14,387,917 (14,387,917)	14,910,478 (14,910,478)	15,682,341 (15,682,341)
	사업비(b)	14,413,779	14,132,507	14,330,660	15,154,139	17,462,266
	수지차(a-b)	400,277 (△3,573,699)	△564,978 (△1,011,790)	57,258 (57,258)	△243,662 (△243,662)	△1,779,925 (△1,779,925)
	연말적립금	4,266,495 (△3,007,480)	3,695,306 (△4,025,481)	3,752,509 (△3,968,278)	3,508,310 (△4,212,477)	1,727,484 (△5,993,303)
	적립금배율	0.3 (△0.2)	0.3 (△0.3)	0.3 (△0.3)	0.2 (△0.3)	0.1 (△0.3)

주: 괄호 안은 공공자금 예수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대상 구직급여 수급이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여건, 고령자 실업인정의 재취업지원 효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고용안정장려금 사업<sup>1)</sup>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3,908억 9,400만원 중 97.5%인 3,812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95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고용안정 장려금	390,894	390,894	-	-	390,894	381,299	-	9,595	439,394	439,394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35,826	30,726	-	-	30,726	28,051	-	2,675	58,362	58,362
·정규직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2,500	2,500	-	-	2,500	1,778	-	722	6,900	6,90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5,931	21,031	-	-	21,031	20,620	-	411	14,644	14,644
	336,637	336,637	-	-	336,637	330,850	-	5,787	359,488	359,488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

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강화 등에 따라 장려금 수요가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계획액 및 집행액, 지원인원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li> <li>· (특례)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연속 허용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지급</li> <li>· (25년 개편사항)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월 30 → 40만원)</li> </u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3번째 월 40만원) 지급</li> </ul>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li> <li>· (25년 개편사항) 육아휴직도 지원, 단가 인상(월 80만원 → 120만원)</li> </ul>
업무분담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급</li> <li>· (25년 개편사항) 육아휴직도 지원</li> </ul>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 명, 개소)

연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목표인원	지원실적		
	당초 계획	계획현액				인원	사업장	금액
2020	93,642	90,118	89,697	99.5	21,998	28,740	12,957	88,181
2021	86,381	119,396	118,750	99.5	32,613	37,910	22,980	117,210
2022	123,433	151,590	150,961	99.6	30,482	48,895	24,265	149,521
2023	135,453	172,567	172,075	99.7	45,353	54,686	30,151	170,635
2024	180,638	294,297	293,348	99.7	65,417	80,473	44,147	290,353
2025	336,637	336,637	330,850	98.3	75,977	101,813	52,690	327,850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2025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352억 3,500만원이었으나, 66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333,637	333,637	-	-	333,637	327,850	-	5,787	356,388	356,388
육아휴직 지원금	123,646	224,252	-	-	224,252	222,603	-	1,649	156,600	156,6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04	44,500	-	-	44,500	44,448	-	52	44,296	44,296
대체인력 지원금	119,352	57,266	-	-	57,266	54,124	-	3,142	130,298	130,298
업무분담 지원금	35,235	7,619	-	-	7,619	6,675	-	944	25,194	25,194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주: 동 수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역사업에서 대체인력뱅크 내내역사업을 제외하고 지원금만을 반영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이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25년 1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개요]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를 분담할 동료 노동자를 특정(1명당 최대 5명)하고, ③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15~30시간 근무)이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은 15~35시간)
  - **(지원내용)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
    -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3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2025.12.)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어려운 사유로 동료의 업무분담 증가가 뽑힌 바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사업주가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자의 미사용 사유]

(단위: %)

		대체인력 필요	동료의 업무분담 증가	추가고용 인건비부담	배타적 직장문화
전체		26.8	35.9	4.5	31.3
직장규모	5~9인 이하	25.3	37.0	3.9	31.7
	10~29인 이하	28.2	33.3	5.6	32.2
	30~99인 이하	30.8	36.8	4.2	27.2
	100~299인 이하	28.9	54.6	2.4	13.8
	300인 이상	56.8	32.8	8.6	1.8

자료: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25. 12.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집행실적을 확인해보면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집행률 6.6%, 목표인원 달성률은 9.8%에 불과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집행률 50%, 목표인원 달성률은 68.2%에 불과하다.

[2024년 및 2025년 업무분담 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2024년					
	당초계획 (A)	집행(B)	집행률 (B/A)	목표인원 (C)	지원인원 (D)	달성률 (D/C)
육아휴직	-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76	323	13.6	5,940	572	9.6
	2025년					
	당초계획 (A)	집행(B)	집행률 (B/A)	목표인원 (C)	지원인원 (D)	달성률 (D/C)
육아휴직	25,179	1,651	6.6	18,651	1,823	9.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056	5,024	50.0	6,285	4,288	68.2

주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4.7.1.,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된 제도임

주2. 3개월 단위 신청기간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4.10.1.,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4.1.부터 집행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하여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최근 신설된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및 현장 안착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활용 사업장 대상 홍보, 경제단체와 협업 등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원수준이 낮다는 현장 의견 및 인력공백 기간을 고려해 2026년부터 업무분담 지원금의 단가를 월 최대 60만원<sup>2)</sup>까지로 인상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sup>3)</sup>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3)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중,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고용노동부는 동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를 감안,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활용률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등

### 가. 현 황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sup>1)</sup>은 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단절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의 소득활동 중단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4조 3,195억 1,100만원으로 이 중 4조 3,09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5,600만원을 불용(0.2%)하였다.

[2025회계연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모성보호 육아지원	4022454	4319511	-	-	4,319,511	4,309,155	-	10,356	4072832	4072832
출산전후 휴가급여	352,497	418,356	-	-	418,356	416,299	-	2,057	379,160	379,160
유산사산 휴가급여	1,859	4,095	-	-	4,095	4,031	-	64	2,666	2,666
육아휴직 급여	3402970	3635802	-	-	3,635,802	3,629,169	-	6,633	3398598	339859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33,521	229,432	-	-	229,432	228,186	-	1,246	268,001	268,0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4,213	31,709	-	-	31,709	31,355	-	354	26,944	26,944
난임치료 휴가급여	7,394	117	-	-	117	114	-	3	2,463	2,463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8

동 사업은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sup>2)</sup>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집행액은 2020년 1조 5,614억원에서 2025년 4조 3,091억 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6% 증가하였고 지원인원 연평균 약 9.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최근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강화 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20~'25)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원	70,949	70,333	73,099	73,207	77,718	90,759	5.2
	금액	2,858	2,881	3,019	3,263	3,537	4,163	7.6
유산사산 휴가급여	인원	994	1,096	1,211	1,329	1,650	2,701	19.8
	금액	14	14	15	16	23	40	23.3
육아휴직 급여	인원	112,040	110,555	131,087	126,008	132,535	184,329	10.7
	금액	12,155	13,004	16,614	17,970	20,525	36,292	2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원	14,698	16,689	19,466	23,118	26,627	39,400	18.7
	금액	517	884	1,063	1,303	1,580	2,282	20.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원	18,720	18,270	16,168	15,797	18,241	24,412	5.9
	금액	70	68	61	62	73	314	35.8
난임치료 휴가급여	인원	-	-	-	-	-	787	-
	금액	-	-	-	-	-	1	-
합계	인원	207,401	216,943	241,031	239,459	256,771	342,388	9.6
	금액	15,614	16,850	20,772	22,615	25,738	43,092	20.6

주: 고용노동부

특히 2025년도부터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각종 모성보호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되어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 2025년도부터 개편된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적인 주요 특징은 ① 사용기간 확대, ② 지급수준 상향, ③ 유연성·탄력성 확대로 볼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에 근거

[저출생 대책 중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관련 주요 내용]

구분		기존 (~2024년)	현행
육아 휴직	기간	1년	1년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1년 6개월)
	분할사용	2회	3회
	단기 육아휴직	(신 설)	연 1회 1주 단위 사용 - 분할횟수 산정 시 미차감
	신청	(신 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한정
	급여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6+6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 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 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1개월 250만원, 그 외 좌 동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지급	(폐 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자녀연령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간	최소 3개월 최대 24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소 1개월 최대 36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급여	(주 5시간)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초과분)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초과분)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분할사용	1회	3회
	급여 지급기간	5일(중소기업 한정)	20일(중소기업 한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	3일(유급 1일)	6일(유급 2일)
	급여 지급기간	(신 설)	2일(중소기업 한정)

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첫 번째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모두 제도 사용기간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고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였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한부모 가정·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로서 장기간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부모육아휴직제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까지 확대하였다.

두 번째로, 각종 급여의 상한을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늘림으로써 지급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였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상한)에서 지급기간에 따라 최대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까지 상향하고,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시간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월 상한금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후 25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초과분의 월 상한금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을 유급 10일에서 유급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지급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의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으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2월 법이 개정되어 2026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활용이 아**

**직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두 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 수가 2024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0.99명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사용자 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수	지급금액	수급자수	지급금액	수급자수	지급금액
2021	70,319	289,479	110,555	1,297,525	16,689	89,669
2022	73,072	304,849	131,084	1,657,231	19,466	107,330
2023	73,207	326,290	126,008	1,796,995	23,118	130,324
2024	77,718	353,689	132,535	2,052,487	26,627	157,970
2025	90,759	416,299	184,329	3,629,169	39,400	228,186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제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모는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3)</sup>.

3) 동일한 조사에서 사업주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애로사항으로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움(37.0%),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23.3%)가 주요한 이유라고 답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업무 특성 상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기타
21.7	26.2	27.2	19.5	4.6	0.7

자료: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서」, 2025.12.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후 여성이나 남성이 일정 기간 육아에 전념하고 다시 일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인적자본 감소와 휴직 후 업무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 근로를 하면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비자발적 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고, 퇴직 비율이 낮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처럼 자리잡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가정 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 여부]

(단위: %)

구분	동일 직장으로 복귀	퇴직(이직)
육아휴직	80.2	19.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4.1	5.9

자료: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서」, 2025.12.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처럼 높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난임치료 휴가급여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난임치료 휴가급여 제도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우선 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상한액 168,420원)하는 제도이다. 원래 동 제도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1일 유급으로 부여하였으나, 2025.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sup>4)</sup>으로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 2일 유급으로 확대되었다.

[난임치료 휴가급여 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지원기간	최초 2일분(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 (*26년 기준 상한액 168,420원)
지원요건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자료: 고용노동부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당초 계획액 73억 9,400만원 중 1억 1,4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sup>5)</sup> 집행이 상당히 부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지원 대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sup>7)</sup>은 주로 영세한 사업장들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난임을 외부에 알리는 것의 어려움 등 문화적 요인도 작용하였다는 입장이다.

동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 난임을 알리기 어려운 문화적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편성된 예산 중 9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수요 부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해 실업급여 제정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실업급여 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사업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는 신규고용 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보험기금에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결산 내역을 확인해보면 실업계정의 경우 연말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립금배율은 0.1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5) 지출 계획 편성 당시 지원 대상 인원은 45,994명이었으나 787명밖에 지원하지 못하였음.

6)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불용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액 73억 9,400만원 중 72억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획현액은 1억 1,700만원에 불과하였음

7)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하며, 업종별로 상이하나 상시 근로자수 100~500인 이하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는 2025회계연도부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의 의결과 함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동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의 경우 2023년도 1조 7,970억원 규모에서 2025년 3조 6,292억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그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흐름은 추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연도별·계정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

계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수 입(a)	5,169,062	5,169,550	4,123,762	4,275,669	4,622,187
	사업비(b)	6,632,479	3,918,207	2,710,074	3,471,058	3,455,973
	수지차(a-b)	△1,463,417	1,251,344	1,413,688	804,610	1,166,214
	연말적립금	1,316,337	2,565,764	3,979,414	4,783,455	5,948,441
	적립금배율	0.2	0.7	1.5	1.4	1.7
실업급여	수 입(a)	14,814,055	13,567,529	14,387,917	14,910,478	15,682,341
	사업비(b)	14,413,779	14,132,507	14,330,660	15,154,139	17,462,266
	수지차(a-b)	400,277	△564,978	57,258	△243,662	△1,779,925
	연말적립금	4,266,495	3,695,306	3,752,509	3,508,310	1,727,484
	적립금배율	0.3	0.3	0.3	0.2	0.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내 자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2024년 4,000억원에서 2025년 5,500억원으로 그리고 2026년 6,000억원으로 늘리는 중이다. 그러나 지출 규모가 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지출 대비 전입금 비중은 2024년 15.5%에서 2025년 12.8%, 2026년 14.7%로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sup>8)</sup>.

8)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 5,000억원 가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6,000억원으로 조정되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A)	16,850	20,772	22,615	25,738	43,092	40,728
일반회계 전입금(B)	2,200	3,000	3,000	4,000	5,500	6,000
비율(B/A)	13.1	14.4	13.3	15.5	12.8	14.7

주: 2021~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값임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제도 도입 초기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보험료로,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sup>9)</sup>. 그런데 법 개정과 사회적 요청 등으로 모성보호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등 책임있는 재원조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속적인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단순히 모성보호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등 동기금을 통해 집행되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

9) 2001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당시 모성보호가 국민 전체의 건강 차원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항목으로 설정되었음(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160879호, 2001.8.14. 공포). 다만,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1.6.)〉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하여 우선 고용보험 적용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2.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동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 급여 제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증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주의)’,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거나 계정 간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바 있다<sup>10)</sup>.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늘리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0) 고용노동부는 노·사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고 2027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sup>1)</sup>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통해 확보된다.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2025년 결산 기준 기금 전체 수입의 약 49.5%를 차지한다. 이 중 사용자부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수입이고, 피고용자부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과거 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 부과되며, 일반적인 보험료와 같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3항<sup>2)</sup>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세출 계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동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약 0.15%의 금액을 전입받는다.

2025년도 결산 기준 총수입은 18조 9,025억 1,500만원이며, 2026년도 계획 기준 총수입은 20조 9,001억 7,300만원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요 수입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025 (A)	2026 (B)	증감	
				B-A	%
총수입	15,592,315	18,902,515	20,900,173	1,997,658	10.5
38 사회보장기여금	9,161,297	9,360,127	10,106,235	746,108	8.0
사용자부담금(38-381)	8,957,314	9,101,142	9,818,176	717,034	7.9
피고용자부담금(38-382)	203,983	258,985	288,059	29,074	11.2
91 전입금	21,300	21,300	31,300	10,000	46.9
일반회계전입금(91-911)	21,300	21,300	31,300	10,000	46.9
산재보험운영지원	6,300	6,300	6,300	-	-
산재예방사업지원	15,000	15,000	25,000	10,000	66.7
92 예탁원금회수	-	4,850,090	4,850,000	△90	△0.1

주: 2024~2025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지출은 크게 산재보험프로그램, 산재예방프로그램, 고용노동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2025년 지출액은 10조 661억 6,200만원이다. 프로그램별로 확인하면 산재보험프로그램 지출이 8조 3,191억 7,400만원으로 전체 지출 중 8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이 1조 2,890억 6,400만원으로 12.8%를, 고용노동행정프로그램 지출이 4,579억 2,400만원으로 4.6%를 차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 및 계획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출계(①+②+③)	8,412,601	9,075,333	9,566,770	10,066,162	10,471,957
산재보험프로그램①	6,913,531	7,507,440	7,857,775	8,319,174	8,482,781
산재보험급여	6,686,486	7,284,941	7,633,318	8,004,324	8,146,300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498	76,537	78,372	116,458	87,651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10,275	10,446	12,717	12,665	14,10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663	9,181	10,648	11,526	14,146
산재병원지원	54,820	32,421	32,734	79,654	130,186
산재보험시설건립	7,136	17,714	7,023	6,535	3,309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1,021	15,047	20,059	19,114	23,191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7,575	17,768	17,824	18,844	19,348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24,421	27,768	30,816	29,540	30,20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5,636	15,617	14,264	20,514	14,34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재예방프로그램②	1,073,787	1,141,048	1,272,791	1,289,064	1,519,58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40,512	458,237	471,652	496,521	537,093
산재예방시설용자	356,327	356,328	458,640	449,775	538,840
업종별재해예방	88,921	126,104	148,410	155,812	236,06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7,623	7,639	6,124	6,034	6,017
유해작업환경개선	76,290	80,441	80,765	75,238	75,032
근로자건강보호	40,111	43,043	43,145	44,292	49,21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392	404	381	383	386
안전보건문화정착	28,987	32,357	32,366	35,166	36,376
산재예방시설건립	23,006	21,025	5,544	4,199	11,395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	-	-	-	11,142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768	8,653	7,749	7,009	7,03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5,850	6,817	18,015	14,635	9,441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 건 연구개발(R&D)	-	-	-	-	1,554
고용노동행정지원프로그램 (기금운영비)③	425,283	426,845	436,204	457,924	469,596
기금관리비 인건비	139	125	128	136	159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48	509	141	181	197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068	2,089	2,100	2,306	2,686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06,756	204,371	211,083	218,708	227,2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41,751	147,232	151,107	166,609	164,624
기금운영관리	2,738	2,785	2,855	2,941	3,044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95	265	302	278	345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	756	950	884	741	855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2,820	2,812	2,572	2,458	2,431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294	35,501	37,381	36,747	39,7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670	15,418	15,905	15,053	15,378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3,097	1,752	1,304	1,304	2,8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947	647	867	867	304
산재보험 적용징수 보상	11,340	11,776	9,168	9,168	9,244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564	613	407	427	527

주: 2022~2025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산재기금 내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산재예방 사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2항3)에 따라 산재기금의 지출 계획액 중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4)에 따른 산재예방사업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용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회 계연도 산재기금 지출 10조 661억 6,200만원 중 약 12.8%인 1조 2,890억 6,400만원을 산재예방프로그램 사업에 지출하였고, 약 1.8%인 1,825억 2,9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기관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예산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20년과 2021년에 전년대비 각각 39.4%와 100.7% 규모로 크게 증가한 바 있고, 그 이후로 전년대비 6.0%, 9.8%, 7.3%, 1.8%, 16.2%로 지속적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9.15.)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다만,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한 사고재해자 수, 사고사망자 수 등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도별 산재기금 산재예방프로그램 예산 및 산재현황]

(단위: 백만원, %, ‰,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재예방 프로그램 예산	368,206 (2.8)	513,397 (39.4)	1,030,213 (100.7)	1,092,165 (6.0)	1,198,698 (9.8)	1,285,634 (7.3)	1,308,156 (1.8)	1,519,580 (16.2)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46 (△9.8)	0.46 (-)	0.43 (△6.5)	0.43 (-)	0.39 (△9.3)	0.39 (-)	0.38 (△2.6)	-
사고재해자 수	94,047 (3.5)	92,383 (△1.8)	102,278 (10.7)	107,214 (4.8)	113,465 (5.8)	115,773 (2.0)	113,305 (△2.1)	-
사고사망자 수	855 (△11.9)	882 (3.2)	828 (△6.1)	874 (5.6)	812 (△7.1)	827 (1.8)	872 (5.4)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의 발생에는 산업 특성,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바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재해자 수, 사고사망자 수 등의 지표만으로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개별 산재예방 사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지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출의 증가가 실질적인 산재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산재기금의 적립금 규모 및 여유자금 내 공자기금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과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적립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산재기금 내 산재예방사업 등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따라 적립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규모와 비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산재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체수입(A)	9,527,674 (15.0)	9,047,421 (△5.0)	10,277,507 (13.6)	10,903,936 (6.1)	11,297,597 (3.6)	11,685,988 (3.4)
전체지출(B)	8,008,283 (13.2)	8,412,601 (5.0)	9,075,333 (7.9)	9,566,770 (5.4)	10,066,162 (5.2)	10,471,957 (4.0)
수지차(A-B)	1,519,391 (25.5)	634,820 (△58.2)	1,202,174 (89.4)	1,337,166 (11.2)	1,231,435 (△7.9)	1,214,031 (△1.4)
적립금	22,222,203 (7.3)	22,838,565 (2.8)	24,033,966 (5.2)	25,365,343 (5.5)	26,595,374 (4.8)	27,809,405 (4.6)
여유자금운용	19,652,203 (3.5)	20,808,565 (5.9)	22,483,876 (8.1)	22,065,343 (△1.9)	21,745,374 (△1.5)	22,759,405 (4.7)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2,570,000 (49.1)	2,030,000 (△21.0)	1,550,090 (△23.6)	3,300,000 (112.9)	4,850,000 (47.0)	5,050,000 (4.1)

주: 2021~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적립금의 증가는 산재기금이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은 안정적인 수지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은 추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수지차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가입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수입 구조상 여유가 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재기금은 가입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 중 산재로 피해를 입은 일부 가입자에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적립금 규모를 크게 유지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인다. 오히려 적립금을 산재 관련 R&D에 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을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sup>5)</sup>.

다음으로, 공자기금 예탁금 규모 및 비중과 관련하여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체 적립금 대비 공자기금 예탁 비중은 2024년 13%에서 2025년 18.2%로 크게 증가하였다.

5) 고용노동부는 유족연금, 진폐연금 등의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 수요를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적립금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산재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자기금 예탁(A)	2,570,000	2,030,000	1,550,090	3,300,000	4,850,000	5,050,000
여유자금 운용(B)	19,652,203	20,808,565	22,483,876	22,065,343	21,745,374	22,759,405
적립금 대비 공자기금 예탁 비율(A/(A+B))	11.6	8.9	6.4	13.0	18.2	18.2

주: 2021~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재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산재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으로서 중장기자산 비중이 높고, 그 중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우호적인 자산운용 환경에서 2025년 16.65%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2025년 공자기금의 예탁 수익률<sup>6)</sup>은 1.5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공자기금 예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수익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의 연간수익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유자금 수익률	6.47	△7.31	11.63	8.18	16.65
직접운용	1.00	2.07	4.08	3.70	-
위탁운용	7.03	△8.36	12.25	8.56	16.65
공자예탁 수익률	0.81	1.95	4.20	2.45	1.58

자료: 고용노동부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은 예수금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리를 예수기간 3년 이하의 경우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수익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정 수준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산재보험급여 사업<sup>1)</sup>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 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8조 43억 2,600만원 중 8조 4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보험 급여	8004326	8004326	-	-	8,004,326	8,004,324	-	2	8146300	8146300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산재보험급여 종류]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요양 중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비(진찰, 처치, 수술 등) → 현물급여</li> <li>*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li> </ul>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균임금<sup>1)</sup>의 70% 지급 ('25년 기준)</li> <li>* 최고: 최고보상기준 고시금액(1일 258,132원)의 70%</li> <li>* 최저: 일반근로자(1일 80,240원, 최저임금 적용), 노무제 공자<sup>2)</sup>(1일 48,232원)</li> </ul>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 해당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li> <li>* 휴업급여 대신 지급</li> </ul>
요양 종결	장해 급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종결 후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li> <li>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li> <li>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li> <li>*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li> <li>*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li> <li>* 8~14급: 일시금 지급</li> </ul>
		진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li> <li>기초연금(최저임금×365×60%)<sup>3)</sup> + 진폐장해연금*</li> <li>*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li> <li>장해등급: 1급(132일), 3급(132일), 5급(72일), 7급(72일), 9급(24일), 11급(24일), 13급(24일) 지급</li> </ul>
	간병 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전문간병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li> <li>(수시) 전문간병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li> </ul>
	직업 재활 급여	요양종결 이후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비용: 훈련비(고시금액)</li> <li>· 훈련수당: 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li> <li>직장복귀지원금<sup>4)</sup></li> <li>· 1~3급(80만원), 4~9급(60만원), 10~12급(45만원)</li> <li>직장적응훈련: 45만원, 재활운동지원: 15만원</li> </ul>
사망 시	유족 급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li> <li>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li> <li>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li> <li>* 연금수급자격자 희망시 50% 일시금 지급</li> </ul>
		진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li> <li>사망 전 진폐근로자가 수급하던 진폐보상연금액</li> <li>*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장례비	유족 또는 사망자의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균임금의 120일분</li> <li>* 최고 18,685,600원, 최저 13,451,380원('25년 기준)</li> <li>* 유족이 아닌 경우 장례실비 지급</li> </ul>

- 주: 1) 산재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국민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이 아닌 별도의 급여임  
 4) 최대 12개월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장해급여 산정 시 연령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여, 장해급여가 향후 노동능력상실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경우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요양종결	장해급여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li> <li>▴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li> <li>*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li> <li>*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li> <li>* 8~14급: 일시금 지급</li> </ul>
	진폐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최저임금×365×60%) + 진폐장해연금*</li> <li>*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li> <li>장해등급: 1급(132일),3급(132일),5급(72일),7급(72일),9급(24일),11급(24일),13급(24일) 지급</li> </ul>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의 경우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2조 7,813억 2,700만원 중 2조 9,660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의 37.1% 수준이며, 2025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연도별 산재보험급여 유형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연금	전체
2024년 결산	1,540,630 (19.6)	2,072,138 (26.3)	2,703,410 (34.3)	981,157 (12.5)	324,904 (4.1)	7,876,091 (100.0)
2025년 결산	1,457,960 (18.2)	1,957,280 (24.5)	2,966,028 (37.1)	1,053,966 (13.2)	338,045 (4.2)	8,004,324 (100.0)
2026년 계획	1,418,467 (17.4)	2,047,752 (25.1)	2,977,823 (36.6)	1,107,050 (13.6)	384,744 (4.7)	8,146,300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출(계획)액에서 해당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에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피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산정될 뿐이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른 향후 노동능력상실분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sup>2)</sup>.

[산업재해 장해급여 지급 한도액]

(단위: 원)

장해등급	연금		일시금	
	일수	지급액	일수	지급액
제1급	329일분	7,077,110	1,474일분	380,486,560
제2급	291일분	6,259,700	1,309일분	337,894,780
제3급	257일분	5,528,320	1,155일분	298,142,460
제4급	224일분	4,818,460	1,012일분	261,229,580
제5급	193일분	4,151,620	869일분	224,316,700
제6급	164일분	3,527,800	737일분	190,243,280
제7급	138일분	2,968,510	616일분	159,009,310
제8급	해당없음		495일분	127,775,340
제9급			385일분	99,380,820
제10급			297일분	76,665,200
제11급			220일분	56,789,040
제12급			154일분	39,752,320
제13급			99일분	25,555,060
제14급			55일분	14,197,260

자료: 고용노동부

2) ① (장해연금)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연금일수 / 12월, ② (장해일시금)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일시금일수

이로 인해 장애급여의 평균 지급액 및 최고지급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일시금을 평균 3,215만원 지급받아 가장 높았으며, 연금의 경우 60대가 평균 266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재보험 장애급여 연령별 평균 지급액 및 최고 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만원)

구분	일시금				연금			
	지급인원	지급액	평균지급액	최고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평균지급액	최고지급액
10대	61	560	918	13,490	1	17	140	140
20대	1,970	23,284	1,182	12,601	164	2,924	149	358
30대	4,114	57,916	1,408	12,778	920	17,980	163	707
40대	7,040	113,115	1,607	17,389	4,237	97,093	191	707
50대	14,230	255,341	1,794	24,313	12,217	363,008	248	707
60대	20,946	494,577	2,361	19,024	21,939	699,464	<b>266</b>	707
70대	7,973	241,817	3,033	35,371	14,311	418,475	244	707
80대 이상	1,790	57,552	<b>3,215</b>	18,421	4,123	122,906	248	707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와 같이 평균임금과 장애등급만을 반영하여 장애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보상 기준의 일관성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연령대별로 향후 노동 가능 기간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젊은 산재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동능력상실 보전이라는 장애급여의 지급 목적과 실질적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장애급여 지급 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sup>.

3) 다만 고용노동부는 장애급여 산정 시 연령 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장애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연금 등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 보전 성격의 보험급여 체계 전반과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 마저 조정된다면 사회보장 측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바, 특정 급여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국가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전반적인 보험급여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산재병원지원 사업<sup>1)</sup>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출연 방식으로 전국 15곳의 산재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 현액은 796억 5,4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재병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병원 지원	79,654	79,654	-	-	79,654	79,654	-	-	130,186	130,186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sup>2)</sup>에 근거하여 산재근로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로 산재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산재환자 진료 외에 일반진료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14개소의 경영 상태는 다음과 같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4-35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2025년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별 경영 상태]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산재	일반	손익	수익	비용																																																																																																																															
합계	입원	489,129	134,313	△30,669	384,170	414,839																																																																																																																															
	외래	645,330	475,476				인천병원	입원	70,751	5,484	721	54,825	54,104	외래	172,194	32,838	안산병원	입원	85,718	18,688	1,467	60,630	59,163	외래	83,391	78,623	창원병원	입원	55,189	10,402	△2,987	43,244	46,231	외래	68,236	58,371	대구병원	입원	36,521	10,368	3,462	31,945	28,483	외래	73,442	16,245	순천병원	입원	50,534	17,244	△5,514	37,713	43,227	외래	25,543	47,670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인천병원	입원	70,751	5,484	721	54,825	54,104																																																																																																																															
	외래	172,194	32,838				안산병원	입원	85,718	18,688	1,467	60,630	59,163	외래	83,391	78,623	창원병원	입원	55,189	10,402	△2,987	43,244	46,231	외래	68,236	58,371	대구병원	입원	36,521	10,368	3,462	31,945	28,483	외래	73,442	16,245	순천병원	입원	50,534	17,244	△5,514	37,713	43,227	외래	25,543	47,670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안산병원	입원	85,718	18,688	1,467	60,630	59,163																																																																																																																															
	외래	83,391	78,623				창원병원	입원	55,189	10,402	△2,987	43,244	46,231	외래	68,236	58,371	대구병원	입원	36,521	10,368	3,462	31,945	28,483	외래	73,442	16,245	순천병원	입원	50,534	17,244	△5,514	37,713	43,227	외래	25,543	47,670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창원병원	입원	55,189	10,402	△2,987	43,244	46,231																																																																																																																															
	외래	68,236	58,371				대구병원	입원	36,521	10,368	3,462	31,945	28,483	외래	73,442	16,245	순천병원	입원	50,534	17,244	△5,514	37,713	43,227	외래	25,543	47,670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대구병원	입원	36,521	10,368	3,462	31,945	28,483																																																																																																																															
	외래	73,442	16,245				순천병원	입원	50,534	17,244	△5,514	37,713	43,227	외래	25,543	47,670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순천병원	입원	50,534	17,244	△5,514	37,713	43,227																																																																																																																															
	외래	25,543	47,670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대전병원	입원	33,133	16,389	△5,394	40,876	46,270																																																																																																																															
	외래	86,642	47,378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태백병원	입원	46,562	12,986	△5,083	32,021	37,104																																																																																																																															
	외래	35,680	94,520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동해병원	입원	46,114	17,579	△3,459	34,361	37,820																																																																																																																															
	외래	37,639	69,78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정선병원	입원	40,124	347	△2,979	10,068	13,047																																																																																																																															
	외래	5,656	20,446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경기요양병원	입원	24,483	7,908	△1,012	7,627	8,639																																																																																																																															
	외래	8,060	3,252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태백요양병원	입원	-	16,918	△1,679	3,596	5,275																																																																																																																															
	외래	-	219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서울의원	외래	15,033	1,104	50	2,555	2,505																																																																																																																															
광주의원	외래	16,917	1,843	22	4,223	4,201																																																																																																																															
부산의원	외래	15,509	632	△8	3,616	3,624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노후화된 산재병원 의료장비의 교체를 통해 산재피해 근로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선에 34억 7,2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에 38억 1,200만원 등을 집행하여 산재병원의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산

재병원의 시설 개선을 통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노후화된 의료 장비로 인해 반복적으로 의료차질 및 환자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가의료장비의 교체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동해병원의 경우 MRI 장비의 노후화로 고장 빈도가 잦아졌을뿐만 아니라 제조사 부품이 단종되어 안정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2025년 대구병원의 경우 CT 노후화로 인해 제조사 부품이 단종됨에 따라 주요부품 고장 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노후 MRI 및 CT 장비로 인한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 발생 사례]

연도	소속병원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 발생 내용
2021	인천병원	CT 노후화로 소음성난청의 업무관련성 여부판단을 위한 이비인후과 진단 촬영 시 영상오류 촬영중단 등으로 환자 1인이 다수로 촬영하는 사례발생
2022	창원병원	MRI 노후로 작동불가시간 증가 및 주요부품(엠프류 등) 고장으로 촬영 중단 사례 발생
2023	순천병원	MRI 노후로 헬륨감소량증가, 칠러 이상으로 인한 냉각수 온도상승 등으로 촬영 중단사례 발생
2024	동해병원	MRI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제조사 부품 단종으로 인해 작동불가시간 증가 MRI 자성을 유지시켜주는 헬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문제(칠러, 쿨드헤드 등) 촬영 중단 사례 발생
2025	대구병원	CT 노후화로 인한 작동불가시간 증가 및 제조사 부품 단종으로 인해 주요 부품(튜브, 디텍터 등) 고장 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

자료: 근로복지공단

위와 같이 매년 MRI 및 CT 등 고가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여러 병원의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제약으로 MRI 및 CT의 적시 교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MRI와 CT 장비는 각각 1대씩만 교체되는 것에 그쳤다.

[연도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개,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106	2,859	85	354	116	374	68	3,784	52	3,812
MRI	-	-	-	-	-	-	-	-	1	1,931
CT	-	-	-	-	-	-	1	1,455	-	-
DR	1	65	-	-	3	105	1	355	1	384
영상	2	297	7	168	2	490	4	736	3	528
검사	32	1,359	34	903	39	1,238	16	544	7	295
수술장치	4	176	6	185	9	220	8	149	2	40
보건	34	453	14	500	20	328	9	217	2	199
재활	21	184	19	139	36	349	22	104	32	191
기타	12	325	5	139	7	84	7	224	4	244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장비의 노후화는 병원에 산재 등으로 입원한 근로자의 치료를 늦출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외면으로 향후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적인 산재병원 경영의 개선과 산재 근로자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병원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sup>1)</sup>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급성중독 및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4,967억 9,200만원 중 4,965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100만원을 불용(0.1%)하였다.

[2025회계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81,792	496,792	-	-	496,792	496,521	-	271	537,093	537,093
안전일터 조성지원	110,707	110,707	-	-	110,707	110,659	-	48	160,607	160,607
안전동행 지원	332,000	332,000	-	-	332,000	331,999	-	1	332,000	332,000
건강일터 조성지원	35,825	50,825	-	-	50,825	50,824	-	1	40,825	40,825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사업수행 경비	3,260	3,260	-	-	3,260	3,039	-	221	3,661	3,661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 및 신기술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 보급 확산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내역사업 '안전동행 지원'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관점에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유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률 등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건설현장 추락 예방시설 임차 및 구입을 지원하는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과 끼임, 충돌 등 사망 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으로 구분된다.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의 경우 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65%를 지원하며, 제조 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된다.

동 사업은 '사업주 지원신청 →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서면·현장방문 등) →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심사위원회) → 사업주의 시설개선(투자계획에 근거하여 4개월 이내) → 공단의 투자완료확인(현장방문) → 적정성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의 절차로 집행되고 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개요]

구 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 망, 사다리형 작업발 판 등을 임대·설치·구 입 및 고소작업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한도 : 같은 사업주당 9,000만 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 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20억 ~50억원미만(50%)
제조· 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 업 제외)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 업 규모 기준 이 하인 사업장 등	▶ 사망사고 예방을 위 해 사업장에서 필요 에 따라 신청한 경 우 ▶ 감독·점검, 공단 기 술지도 등 결과 긴 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70%

자료: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5회계연도 동 사업 집행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714억 6,700만원에서 514억 6,7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총 3,871개의 사업장을 지원하였다. 제조업·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2,1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4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예산 및 결산]

(단위: 개소,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물량	목표 지원 사업장 (A)	8,100	8,900	8,900	8,900	5,769
	실제 지원 사업장 (B)	5,515	7,332	4,943	4,079	3,871
	B/A	68.1	82.4	55.5	45.8	67.1
금액	계획 (C)	65,053	71,467	71,467	71,467	71,467→ 51,467
	결산 (D)	64,464	71,467	60,108	71,467	51,467
	D/C	99.1	100.0	84.1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업) 예산 및 결산]

(단위: 개소, 백만원,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량	목표 지원 사업장 (A)	7,200	6,200	6,200	2,832	2,832
	실제 지원 사업장 (B)	10,014	6,285	11,013	7,096	2,166
	B/A	139.1	101.4	177.6	250.6	76.5
금액	계획 (C)	56,840	48,240	48,240	24,240	24,240
	결산 (D)	56,840	38,174	48,240	24,240	24,240
	D/C	100.0	79.1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건설업 분야의 경우 사업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미지원 건설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과 지원 건설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 차이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재해발생 비율 차이를 확인해보면 지원 사업장의 재해발생 비율이 미지원 사업장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sup>2)</sup>,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개선되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자체도 큰 변동이 없이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다만 미지원 사업장 대비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안전 사고 등에 보다 높은 주의를 요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p)

사고재해발생 비율	2021	2022	2023	2024	2025
미지원 사업장 재해 중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A)	32.0	32.0	33.0	32.9	34.8
지원 사업장 재해 중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B)	23.9	25.3	24.3	26.4	27.8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차이(A-B)	8.1	6.7	8.7	6.5	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발생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금액을 노후 위험공정 개선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면, 총 4,592개소를 대상으로 3,320억원을 집행하였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기업의 수가 3,383개소로 전체 지원 대상 기업의 73.7%를 차지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구분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품목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기계·설비 등 공정개선, 화재·폭발 대응 시설 등)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 업종 사업장 (뿌리공정, 기계기구·금속 제조 등 6대 업종, 1·2차 전지 제조업 등)
지원비율	50%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40%(원청 10% 부담)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선금	선금 80%(민생경제 사업)(사업장 신청 + 지급보증보험 확인)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지원금액	94.2	290.6	2,935.1
대상 기업 수	423	786	3,383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교체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을 통해 보조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신규 설비를 도입하고 위험이 있는 기존 설비를 폐기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기존 위험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타 현장에 반출 및 매각하여 산업현장에 위험을 상존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sup>3)</sup>.

또한 동 사업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험개선 목적 외의 장비 도입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기존 위험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원금액을 이용해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sup>. 이는 안전장비 도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보조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 사업의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여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026.4.29.)'에 따르면 00 사업장은 끼임/절단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이 잦은 밀링 3대에 대하여 신규 CNC 밀링 3대를 공단에게 지원받고 기존 설비(밀링)는 현장 존치 사용(총 6대 밀링)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

4)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026.4.29.)'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가적인 이유로 CNC 선반·밀링 지원 사업장 중 56개 사업장에 기존 설비 대비 70대 초과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 업종별 재해예방: 컨설팅의 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우선 수행할 필요 등

### 가. 현 황

업종별재해예방<sup>1)</sup> 사업은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 사고사망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단이 직접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핵심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지도하거나 민간전문기관<sup>2)</sup>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1,631억 5,200만원 중 1,55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4,000만원을 불용(4.5%)하였다.

[2025회계연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업종별 재해예방	163,152	163,152	-	-	163,152	155,812	22	7,340	236,062	236,062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13,386	13,386	-	-	13,386	12,506	22	858	60,234	60,234
·민간 기술지도	51,323	52,793	-	-	52,793	52,542	-	251	51,273	51,273
·화학사고 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	-	2,620	2,535	-	85	2,620	2,620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95,823	94,353	-	-	94,353	88,207	-	6,146	121,935	121,935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2)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8조, 제142조)

내역사업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이나 공단이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거나, 지역별 사업주 단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내역사업 ‘민간기술지도’ 사업은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지원하여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사망·질병예방 등 핵심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내역사업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의 내내역사업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주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공단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통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자기규율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시행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전문성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이해관계나 근로자의 편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근로 환경을 점검·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주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각종 협·단체를 중심으로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취지를 업종을 잘 아는 협·단체가 중심이 되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각종 협·단체 중심으로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지원대상	사업주 단체 등
사업내용	① 사업주단체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안전보건자료 개발, 보급 및 우수사례 확산 ② 업종별 협·단체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합동 컨설팅 제공 ③ 민간 재해예방기관 컨설턴트 대상 특화 교육 과정 운영
사업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 단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직·업종별 협회·단체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못한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일관적으로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인다. 동 사업 집행 과정에 있어 협회·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 단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 취지 달성을 위해 집행단계에서의 관리 및 사후평가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선정 협·단체	지원 협·단체(업종)	집행 내용	지원 금액
대한상공회의소	①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조선해양기자재공업) ②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장비제조업) ③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제조업)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 안전보건 개선대책 수립 교육 - 협·단체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제공 등	73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④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물관리업)	-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가이드 및 콘텐츠 제작·보급 - 건물관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68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⑤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공업)	-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 개발·보급 - 위험성평가 사례 공유 등	67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단체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역사업 ‘민간기술지도’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컨설팅의 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우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술지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요 7대 작업 현장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7대 작업 현장이란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옥상방수, 철거해체, 관로설치 현장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작업유형 대상 컨설팅이 아닌 사고 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에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2년~2025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사업의 작업유형별 사고 사망자수와 컨설팅 지원 내역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소규모 건설현장 작업지원 작업유형별 사고사망자수 및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명, %, 회, 억원)

작업유형	사고사망자수	컨설팅 지원	
		횟수	금액
지붕 개보수	118 (46.5)	32,089 (7.6)	47 (7.5)
외부도장	40 (15.7)	45,299 (10.7)	67 (10.7)
인테리어	24 (9.5)	191,949 (45.3)	287 (45.7)
리모델링	12 (4.7)	81,324 (19.2)	121 (19.3)
옥상 방수	12 (4.7)	6,379 (1.3)	8 (1.3)
철거 해체	36 (14.1)	33,151 (7.8)	49 (7.8)
관로 설치	12 (4.7)	33,183 (7.8)	49 (7.8)
계	254	423,374	628

자료: 고용노동부

사고 사망자수 대비 컨설팅 지원 횟수를 확인해보면 사고 사망자 수의 46.5%를 차지하는 지붕개보수 유형에 대한 컨설팅이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붕 개보수 대상 컨설팅 지원 비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9.5%와 4.7%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컨설팅 지원 비율은 45.3%와 19.2%를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집행 실적을 감안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고 사망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에 대한 컨설팅에 집중하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재예방시설 건립: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가. 현 황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sup>1)</sup>은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여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42억원으로 이 중 4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0.1%)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용·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예방시설 건립	4,200	4,200	-	-	4,200	4,199	-	1	11,395	11,395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sup>2)</sup>와 제31조<sup>3)</sup>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할 것을 의무로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 는 교육 과정과 교육시간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정한של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1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요]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제외 38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39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는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현재 2025년 12월에 재개관한 중부(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8개의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두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 중 3개의 교육장은 시설 노후화 및 안전문제로 이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경북 교육장은 2022년 7월, 충청 교육장은 2023년 7월, 경남 교육장은 2023년 12월부터 이용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및 경북 지역은 30년 개관을 목표로 26년 기존 교육장 해체 및 신규 부지 매입 예정이며, 충청 지역은 31년 개관을 목표로 예산 확보 노력 중이다.

[공공안전체험교육장 운영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사업비(억원)	건립규모(연면적)	비 고
1	제 천	충북 제천시	79.9	1,977.08㎡(599평)	운영중
2	담 양	전남 담양군	71.0	1,525.37㎡(462평)	
3	여 수	전남 여수시	246.2	4,642.72㎡(1,407평)	
4	익 산	전북 익산시	222.7	4,385.42㎡(1,329평)	
5	인 천	인천 부평구	190.4	3,912.38㎡(1,186평)	
6	경 남	경남 김해시	29.2	1,010.8㎡(306평)	운영중단
7	경 북	경북 경산시	35.0	2,493.32㎡(756평)	
8	충 청	충남 공주시	43.0	2,325㎡(705평)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은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 평균적으로 1인당 90,000원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데다가, 일부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관련 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이들의 이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근로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보수 공사 및 재개관이 조속히 이루어져 안전교육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의 수는 총 52개소이다.

[연도별 공공안전체험교육장 교육인원]

(단위: 명)

교육장	위치	개장일	운영중단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천	인천 부평구	'97.05.	'20.01.	-	-	-	-	-
경남	경남 김해	'02.06.	'23.12.	-	45	865	-	-
경북	경북 경산	'08.02.	'22.07.	-	-	-	-	-
충청	충남 공주	'09.04.	'23.07.	23	519	21	-	-
제천	충북 제천	'19.03.	-	-	1,763	2,868	4,987	5,165
담양	전남 담양	'23.05.	-	-	-	2,065	4,295	4,950
여수	전남 여수	'23.12.	-	-	-	-	8,775	9,942
익산	전북 익산	'24.12.	-	-	-	-	-	8,891
합계				23	2,327	5,819	18,057	28,948

자료: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정부부문 및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현 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1)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동 기금의 2025회계연도 총지출 집행액은 2조 3,663억 5,9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와 기타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운용분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8,612억 7,4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주요 단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장애인고용지원	699,663	709,783	-	-	709,783	709,783	-	-	755,123	755,123
장애인고용 인프라지원	72,649	72,649	-	-	72,649	72,649	-	-	80,193	80,193
장애인직업능력 제고	65,131	65,131	-	-	65,131	65,131	-	-	75,019	75,019
장애인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8,582	8,582	-	-	8,582	8,582	-	-	8,545	8,545
장애인고용증진 용자(용자)	1,072	1,072	-	-	1,072	977	-	95	1,232	1,232
장애인고용 정보화	4,153	4,153	-	-	4,153	4,153	-	-	4,530	4,530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헌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① 고용장려금, ②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지원, 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용자·지원 등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3)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배수제를 적용하며, 고용장려금 지급 시에는 중·경증 여부 및 성별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예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용자·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용자·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용자·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9. 지역별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용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용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填)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도입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모두 2.0%였으나,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6년 기준 정부 3.8%, 공공기관 3.8%, 민간기관 3.1%이다.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공공기관, 민간기관만 해당)												
산정 방식	부담금 총액(연간 합계액) = (의무 고용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	월별로 의무고용률 초과 시 지급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월 지급단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경증남성</td> <td>35만원</td> <td rowspan="4">월임금(60%)와 단가중 낮은 금액지급</td> </tr> <tr> <td>경증여성</td> <td>50만원</td> </tr> <tr> <td>중증남성</td> <td>70만원</td> </tr> <tr> <td>중증여성</td> <td>9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월 지급단가	비고	경증남성	35만원	월임금(60%)와 단가중 낮은 금액지급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구분		월 지급단가	비고										
	경증남성		35만원	월임금(60%)와 단가중 낮은 금액지급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산정기준		1인당 부담금(월)											
	의무고용인원 3/4 이상		1,295,000원											
의무고용인원 1/2~3/4	1,372,70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 1/4~1/2	1,554,0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 1/4 미달	1,813,0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동 현황]

구분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21	'22~'23	'24~
국가·지자체	공무원	2.0				3.0	3.2	3.4	3.6	3.8
	근로자		-	2.3	2.5	2.7	2.9			
공공기관	공기업			3.0	3.0	3.0	3.2	3.4	3.6	3.8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		2.3	2.5					
민간기업						2.7	2.9	3.1	3.1	3.1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부문(공무원) 및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5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불과하여 2025년 의무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정부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선도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정부 부문	공 무 원	헌법기관	4	25,305	723	2.86
		중앙행정기관	56	208,276	7,342	3.53
		지방자치단체	243	317,238	11,538	3.64
		교육청	17	418,976	8,018	1.91
		소계	320	969,795	27,621	2.85
	비 공 무 원	헌법기관	4	3,055	98	3.21
		중앙행정기관	43	76,019	2,260	2.97
		지방자치단체	243	161,047	16,385	10.17
		교육청	17	192,193	7,601	3.95
		소계	307	432,314	26,344	6.09

주: 장애인 고용인원 및 장애인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함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 비중은 정부부문(공무원) 18.4%, 정부부문(비공무원) 45.2%, 공공기관 23.2%, 민간기업 40.9% 수준으로서 정부부문(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경

4)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교사, 법관 등 특정직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장애인보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고 일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나, 오히려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경증·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정부 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무원		비공무원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2024	19,202 (82.0)	4,220 (18.0)	11,258 (56.7)	8,584 (43.3)	15,074 (78.9)	4,028 (21.1)	99,855 (60.8)	64,255 (39.2)
2025	19,021 (81.6)	4,300 (18.4)	10,956 (54.8)	9,033 (45.2)	15,203 (76.8)	4,586 (23.2)	100,129 (59.1)	69,414 (40.9)

주: 괄호 안은 전체 고용장애인 중 경증·중증장애인의 비중이며, 각 연도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확인해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집단 등에서 민간기업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이 확인된다. 이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대상이지는 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10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의 높은 평균임금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 수준이 고용부담금 수준에 비해 높아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

구분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대기업집단
대상기관 수	17,282	10,726	1,860	1,254	897	970
의무이행 기관 수	5,482 (31.7)	6,153 (57.4)	935 (50.3)	565 (45.1)	358 (39.9)	340 (35.1)
고용률	2.13	3.46	3.47	3.51	3.06	2.56

주1) 괄호 안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중 의무이행기관 비중을 의미함

주2) 장애인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함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자칫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금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제도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유인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동 기금의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유자금 운용 등 비중이 높고 사업비 비중은 이에 맞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바, 조성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이에 맞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기금의 자체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지출(A)					사업비 비중
	고용 부담금		사업비(B)		운영비	내부지출·여유자금 운용		
			고용 장려금					
2016	748,269	434,718	748,269	226,816	158,155	52,910	468,542	30.3
2017	833,901	453,236	833,901	256,319	164,095	52,960	524,622	30.7
2018	1,250,994	552,121	1,250,994	302,831	189,513	58,883	889,280	24.2
2019	1,182,164	619,090	1,182,164	420,378	210,560	64,519	697,267	35.6
2020	1,313,484	755,756	1,313,484	519,138	229,655	72,003	722,343	39.5
2021	1,717,843	767,611	1,717,843	610,819	252,191	75,029	1,031,995	35.6
2022	1,925,696	763,688	1,925,696	693,356	269,790	78,838	1,153,501	36.0
2023	2,095,985	829,580	2,095,985	784,648	324,272	81,305	1,230,032	37.4
2024	2,304,378	895,365	2,304,378	851,734	353,371	84,063	1,368,581	37.0
2025	2,366,359	886,222	2,366,359	861,274	377,377	85,929	1,419,155	36.4
2026	2,512,054	1,012,286	2,512,054	924,642	403,220	89,063	1,498,349	36.8

주: 2016~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수입이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비 지출 비중은 축소되면서 내부지출 및 여유자금운용 비중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여 2024년 동 기금에 대한 기금준치평가에서 동 기금의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최대규모를 초과하는 상태로 진단한 바 있다<sup>5)</sup>. 2025년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주요사업비로 지출되는 비중에 비해 정부내부지출과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존 사업확대 등 지출 증대 또는 추가적인 공자기금예탁을 권고 하였음(2024.5.)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주요 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요사업비	610,819 (35.6)	693,356 (36.0)	784,648 (37.4)	851,734 (37.0)	861,274 (36.4)	924,642 (36.8)
운영비	75,029 (4.4)	78,838 (4.1)	81,305 (3.9)	84,063 (3.6)	85,929 (3.6)	89,063 (3.5)
정부내부지출	350,000 (20.4)	600,315 (31.2)	600,000 (28.6)	600,000 (26.0)	700,000 (29.6)	800,000 (31.8)
여유자금운용 등	681,995 (39.7)	553,187 (28.7)	630,032 (30.1)	768,581 (33.4)	719,155 (30.4)	698,349 (27.8)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2,366,359	2,512,054

자료 : 고용노동부

동 기금에서 장애 지출수요나 특이사항으로 인해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할 명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개선, 연계고용 적용 대상 확대, 고용컨설팅 제공, 디지털훈련센터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등 장애인 고용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기금 지출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이 수년째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15~64세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2	49.2	49.0	50.0	48.0	49.0	50.3	49.8	48.4	48.3

주: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조사된 현황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사업 중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업<sup>1)</sup>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겐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528억 5,600만원 전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 집행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중 51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6,300만원을 불용(3.1%)하였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856	52,856	-	-	52,856	52,856	-	-	60,243	60,243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업장을 의미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②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을 전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일정 인원<sup>2)</sup> 이상을 고용하며, ③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④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전체 873개의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1만 9,639명 중 중증장애인

정한솔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3-304

2)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 + 5명, 300명 이상 5% + 20명

근로자가 15,645명(79.7%)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표준사업장	622	622	694	797	873
장애인 근로자	12,656	14,407	16,093	18,115	19,639
중증장애인 근로자	10,035 (79.3)	11,470 (79.6)	12,930 (80.3)	14,474 (79.9)	15,645 (79.7)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표준사업장 설립 시 작업·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3천만원당 장애인 1명의 신규고용 및 7년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연계고용제도에 따라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 밖에 표준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인증 후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

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도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3)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021년 0.92%에서 2025년 1.47%로,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공공부문이 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4)의 노력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 분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개념 및 범위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 30%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중증장애인 비율(규모별 차등), 최저임금 지급,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준수 필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표준사업장 인증 불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70%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생산공장 유무 등 준수 필요)
소관부처 시행기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재활시설협회
의무구매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목표 비율	목표 비율	총 구매액 0.8% 이상(물품, 용역 합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총 구매액 1% 이상(물품, 용역 합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관련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0.92	1.01	1.19	1.25	1.47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2025년 기준 전체 851개 중 230개(26.8%)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은 전체 58개 중 34개 기관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미달성률이 5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준수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기관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단위: 개, %)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합계
전체(A)	58	243	17	6	31	57	243	166	36	857
미달성(B)	34	30	2	4	3	5	68	66	18	230
미달성 비율(B/A)	58.6	12.3	11.8	66.7	9.7	8.8	28.7	39.8	50	26.8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후 자진반납 및 취소 하는 사업장의 수가 상당한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반납·취소 현황을 확인해보면 인증유지 업체 873개소 대비 206개소로 약 23.6%에 해당한다. 인증반납·취소 사유 중에는 자진 반납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준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진반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및 취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인증유지	인증반납·취소	
		폐업	
일반형	681	190	4
자회사형	191	15	4
컨소시엄형	1	1	-
합계	873	206	8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사업장의 인증 반납 및 취소 사유별 현황]

(단위: 개소)

사유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진반납	4	32	28	24	50
인증기준 부적합	22	5	8	14	15
거짓·부정한 방법	-	1	1	2	-
계	26	38	37	40	65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취소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고용의무 미이행기간을 원 할계산하여 환수되는 등 사후관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표준사업 장 인증을 빈납·취소하는 것은 표준사업장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의 운영기반별 현황을 살펴보면 1~3 년 이내에 인증취소하는 경우(202건 중 79건으로 약 39.1%)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주들이 사업 초기 표준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5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사업장의 운영기간별 현황]

(단위: 개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9	33	37	30	18	23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상	합계
8	8	15	8	13	202

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4개소를 제외한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표준사업장의 공공기관 구매의무 준수 강화·판로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대지급금 지급: 회수율을 제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대지급금 지급<sup>1)</sup>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7,190억 9,200만원 중 6,88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05억 7,300만원을 불용(4.3%)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대지급금 지급	529,346	719,092	-	-	719,092	688,519	-	30,573	746,068	746,068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은 ①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2026년도 8월 20일까지는 현행 제도와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원한도로 하나, 2026년도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을 지원한도로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한솔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p>도산 대지급금</p>	<p>[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p> <p>[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 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p>	<p>[지원내용]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sup>2)</sup>(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p> <p>[지원한도]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p>
<p>퇴 직 자</p>	<p>[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 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 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p> <p>[근로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 기 또는 (체불확인서) 1년 이내 진정 제기</p>	<p>[지원내용] ①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p> <p>[지원한도]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p>
<p>간이 대지 급금</p> <p>재 직 자</p>	<p>[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 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 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p> <p>[근로자]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 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 (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p>	<p>[지원내용]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 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p> <p>[지원한도] 700만원</p>

자료: 고용노동부

2) 2026년도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임

## 나. 분석의견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으로, 「임금채권보장법」<sup>3)</sup>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금체불액이 줄고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수지차가 개선되었으나, 2023년도부터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액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sup>4)</sup>이다.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임금체불액(A)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2,067,896
대지급금 지급액(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도산 대지급금	168,789 (36.7)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간이 대지급금	291,090 (63.3)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 3) 「임금채권보장법」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용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8042호, 2021.10.14. 시행)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4	2024	2025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사업비 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대지급금 지급 <sup>1)</sup>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688,519
수지차(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주: 1) 이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 지출액으로서, 실제 대지급금 지급액과 채권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1. 결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보수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 임금 지급에서 최종 6개월 임금 지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기금의 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지급금 규모가 지금과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지급금 회수율 지표는 유의미한 개선이 없다. 특히 최근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체불액 규모의 증가 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지급금 회수율	32.8	32.2	31.9	30.9	30.0	29.7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2	39.8	40.7	41.1	41.2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2.8	14.6	16.0	16.4	17.0	18.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상황을 감안해 변제금 미납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를 부과하거나,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5)' 사업의 체불청산지원 용자요건을 완화<sup>6)</sup>해 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용자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sup>7)</sup>).

대지급금 지출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회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향후엔 대지급금 사업 자체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바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6) 체불청산지원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의 요건을 삭제하였음(2024.8.7.)

7) 체불사업주 용자 사업의 경우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직접 용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구조로, 대지급금 지급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보다 회수가 용이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대비 3~4배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2.8	14.6	16.0	16.4	17.0	18.1
체불사업주 용자 회수율	52.5	53.0	56.9	57.4	56.0	55.5

자료: 고용노동부

8) 다만, 아직까지 대지급금 지급 규모에 비해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규모는 약 1/10 규모로 작은 편이다.

[체불청산지원용자 및 대지급금 지급 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체불청산 지원용자 금액	18,046	19,240	40,979	33,177	72,786	76,918	85,911
사업주 용자	18,046	19,240	21,255	14,259	25,579	39,806	53,224
근로자 용자	-	-	19,724	18,918	47,207	37,112	32,687
대지급금 지급액(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도산 대지급금	168,789 (36.7)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간이 대지급금	291,090 (63.3)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 가. 현황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기업계정, 신용보증사업계정, 실업대책사업계정으로 구분된다. 2025년도 계획현액은 5,927억 9,500만원이며 이 중 5,28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06억 4,800만원을 불용(5.0%)하였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sup>1)</sup>에 따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③ 근로복지공단이 조성한 실업대책자금, ④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주요 용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sup>2)</sup>에 따라 ① 근로자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 1) 「근로복지기본법」

#####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 2)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 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②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 ③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⑤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등이다.

동 기금은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퇴직연금운영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복지계정', ② 근로자의 생활자금대출 등의 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사업계정', ③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대책사업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에 따라 각 계정 자금은 독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자금은 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92조제3항은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중소복지계정' 및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자금을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4)</sup>

-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다만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제3항은 예외적으로 '중소복지계정' 및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자금을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계정별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계정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근로복지 진흥기금	566,123	592,795	-	2672	592,795	528,269	-	20,648	541,905	564,486
중소복지 계정	448,945	448,945	-	-	448,945	387,874	-	20,647	432,864	432,864
신용보증 사업계정	70,937	97,609	-	2672	97,609	92,841	-	1	59,937	82,518
실업대책 사업계정	46,241	46,241	-	-	46,241	47,554	-	-	49,104	49,104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동 기금 중 실업대책사업계정은 2022년도부터 별도의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상당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동 기금의 2021~2025년까지 각 계정별 사업비 지출을 보면, 실업대책사업계정의 경우 2021년 방문돌봄중보자 한시지원금 사업으로 513억 8,900만원을 집행한 외에 사업이 집행된 적이 없다. 실업대책계정 사업의 2025년도 집행 내역 및 2026년 지출계획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근로복지진흥기금 계정별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계정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중소복지계정	179,053	261,769	202,545	167,841	150,745	154,345
신용보증사업계정	19,156	28,343	33,550	30,343	86,479	60,463
실업대책사업계정	51,389	-	-	-	-	-

주: 기금운영비, 기금간 거래(공자기금예탁, 복권기금전출 등), 계정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등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			2026계획
		당초	수정	결산	
실업대책사업계정	45,738	46,241	46,241	47,554	49,104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24,000	40,000	40,000	40,000	40,000
여유자금운용	21,738	6,241	6,241	7,554	9,104
통화금융기관예치	1	2	2	1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737	6,239	6,239	7,553	9,10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실업대책 계정은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의 발생에 따라 갑작스럽게 지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바 이에 대응한 준비라는 입장이며, 위기상황이 아닐 때엔 현재와 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을 통해 타 재정사업에 운용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오히려 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계정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업대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계정인바 수년째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한 채 자금운용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다수의 사업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의 경우 실업대책사업 계정의 사업으로 편성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과 달리 복권기금 전입금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구조로 재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인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여유자금 일부를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용보증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율을 개선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황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sup>1)</sup>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sup>2)</sup> 및 제26조<sup>3)</sup>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863억 3,1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 대위변제	31,659	86,331	-	-	86,331	86,331	-	-	37,734	60,315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②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 ③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④ 전직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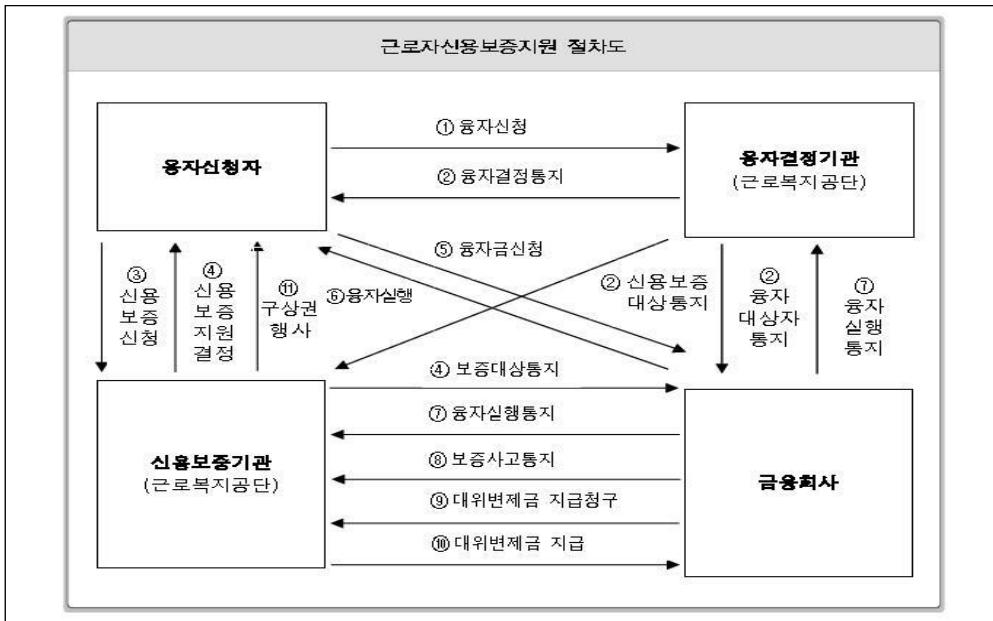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 사업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받기 위해서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한 용자 및 보증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여 용자 신청자에게 용자결정 통보를 하고 대행금융기관에게 용자대상자를 통지한다. 이후 각 기금으로부터 용자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용자대상자에게 용자를 실시하고, 용자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 기금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일 원리금 연체 등 용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동 사업 계획액에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용자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위변제한 원리금을 회수한다.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첫째, 향후 신용보증 규모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바,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신용보증 현황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34,833명의 근로자들이 1,701억 3,0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기금별·사업별 분류를 보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가장 큰 규모의 924억 4,8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326억8,700만원,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

계비 용자 244억 8,100만원,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205억 1,4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면 신용보증금액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취약계층 용자지원 수요가 확대되어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연도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용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생활안정자금용자 (근로복지진흥기금)	24,801	143,946	41,639	220,676	30,639	165,030	20,306	118,234	15,781	92,448
직업훈련생계비용자 (고용보험기금)	20,383	173,005	8,405	53,848	13,103	78,953	10,053	25,055	12,570	24,48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산재보험기금)	1,588	15,481	1,580	15,636	1,637	15,617	1,515	14,265	2,185	20,514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임금채권보장기금)	2,842	19,724	3,080	18,918	5,910	47,207	4,734	35,391	4,297	32,687
신용보증합계	49,614	352,157	54,704	309,078	51,289	306,807	36,608	192,945	34,833	170,130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신용보증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대한 회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생활안정자금용자 (근로복지진흥기금)	13,176	4,726	17,432	5,088	18,346	4,742	16,301	5,147	49,699	5,961
직업훈련생계비용자 (고용보험기금)	3,874	1,482	8,788	1,696	12,510	1,784	10,975	2,139	32,186	2,79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산재보험기금)	1,368	880	1,399	931	1,739	747	1,529	780	1,527	728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60	-	39	-	26	-	20	-	22
장애인차량구입/직 업생활안정자금용자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	60	-	39	-	26	-	20	-	22
합 계	18,418	7,148	27,711	7,754	33,034	7,299	29,555	8,086	85,802	9,505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대위변제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 역시 저조한 수준으로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했을뿐만 아니라, 불납결손액도 63억 3,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도별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1	18,418	7,147	38.80	11,271	4,170
2022	27,711	7,756	27.99	19,955	6,532
2023	33,035	7,320	22.16	25,715	6,942
2024	29,555	8,173	27.65	21,382	7,463
2025	85,803	9,647	11.24	76,156	6,334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용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타 기금의 용자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손실분에 대하여 용자사업 소관 기금별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 사업은 타 기금의 용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2020~2025년 동안 누적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에 382억 6,600만원의 손실을 유발하였다.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다른 3개 기금 용자사업에 대한 대출상환 위험을 부담하여 3개 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연도별 신용보증사업 기금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고용보험기금	7,210	△4,183	△6,806	△7,524	△28,228	△39,531
산재보험기금	△56	△33	△538	△189	△26	△842
임금채권보장기금	580	614	1,067	665	△986	1,940
장애인고용기금	60	39	26	20	22	167
합계	7,794	△3,563	△6,251	△7,028	△29,218	<b>△38,266</b>

주: 장애인고용기금 소관 용자사업은 종료되어 대위변제금 회수만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sup>4)</sup>이 가진 수입 구조의 취약성<sup>5)</sup>과 동 기금 내 다른 사업의 집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타 기금 용자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 보인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은 다른 기금의 용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에 따라 1% 이내의 보증료를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보증료를 통한 수입과 구상채권 회수액을 매년 초과하고 있음에 따라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재원이 부족하여 이를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으로부터 전출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이후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578억 8,700만원, 627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4) 근로복지진흥기금은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퇴직연금운영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복지계정', ② 근로자의 생활자금대출 등의 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사업계정', ③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대책사업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보증사업에 따른 보증료, 사업주의 기부금, 기금 자체 수익금 등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타 기금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연도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출금	4,000	-	10,700	20,200	35,352	57,887	62,753

주: 2020~2025년도 결산값 기준 작성, 2026년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중소기업계정도 타 기금 대비 기금의 규모가 작고 복권기금 전입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수입구조가 다소 취약하므로,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정은 퇴직연금사업,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등 여러 자체 사업을 집행 중인데, 이와 같은 과도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로 인해 중소기업계정 내 자체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타 기금 용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각 기금별 용자사업에 대한 손실분은 각 소관 기금에서 자체부담하거나,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중소기업계정이 아닌 타 기금에서 분담하는 방안<sup>6)</sup> 등을 마련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7)</sup>.

6)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의 출연 근거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각 기금별 용자사업의 신용보증을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전담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개별 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이를 감안해 「신용보증지원사업 체계 개선 연구」(2023.12.)를 수행한 바 있다. 다만, 기금별로 별도의 신용보증 수행시 기금별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위변제금 지급, 구상채권 회수,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등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8억 2,800만원이며, 100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 3,200만원을 수납하고 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828	8,828	8,828	10,033	10,032	1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21억 6,100만원이며, 이 중 97.8%인 4,618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68,435	468,435	470,744	460,840	1,155	8,750	97.9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363	1,363	1,416	1,042	372	2	73.5
합계	469,798	469,798	472,161	461,881	1,527	8,752	97.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기상청의 자산은 1조 361억 6,000만원, 부채는 251억 9,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109억 6,9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09억 7,500만원, 유무형자산 1조 238억 6,000만원, 기타 자산 13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6억 1,300만원(0.7%) 증가하였다. 이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등 건설중인 자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251억 8,500만원, 기타부채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52억 3,000만원(152.9%)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공항 라이다 도입 등에 따른 금융리스부채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036,160	1,028,547	7,613	0.7
Ⅰ. 금융자산	10,975	11,348	△373	△3.3
Ⅱ. 유·무형자산	1,023,860	1,013,634	10,226	1.0
Ⅲ. 기타자산	1,325	3,565	△2,240	△62.8
부 채	25,191	9,961	15,230	152.9
Ⅰ. 차입부채	25,185	9,959	15,226	152.9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6	2	4	200.0
순 자 산	1,010,969	1,018,586	△7,617	△0.7
Ⅰ. 기초순자산	1,018,586	984,688	33,898	3.4
Ⅱ. 재정운영결과	485,905	433,618	52,287	12.1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481,204	469,743	11,461	2.4
Ⅳ. 조정항목	△2,916	△2,226	△690	△31.0
Ⅴ. 기말순자산 (Ⅰ - Ⅱ + Ⅲ + Ⅳ)	1,010,969	1,018,586	△7,617	△0.7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859억 5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3,524억 7,800만원, 관리운영비 1,476억 2,100만원, 비배분비용 3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45억 9,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22억 8,700만원(12.1%) 증가한 4,859억 500만원이며, 이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473억 8,200만원(15.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기상관측프로그램(1,198억 1,500만원)과 기상연구프로그램(901억 6,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34억 4,300만원과 경비 441억 7,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352,478	305,096	47,382	15.5
II. 관리운영비	147,621	141,199	6,422	4.5
III. 비배분비용	398	529	△131	△24.8
IV. 비배분수익	14,592	13,206	1,386	10.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85,905	433,618	52,287	12.1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85,905	433,618	52,287	12.1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185억 8,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109억 6,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6억 1,700만원(0.7%)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4,859억 500만원인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4,812억 400만원, 조정항목은 △29억 1,600만원으로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915억 9,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03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 항목은 △29억 1,6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기상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018,586	984,688	33,898	3.4
II. 재정운영결과	485,905	433,618	52,287	12.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81,204	469,743	11,461	2.4
IV. 조정항목	△2,916	△2,226	△690	△31.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10,969	1,018,586	△7,617	△0.7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없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은 없었다.

기상청은 ① 집중호우·폭염 등 일상화된 이상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지진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하고, ②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총괄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③ 천리안위성,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상 분야 선도 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을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은 관측지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도 연례적으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바,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를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최소화하여 위성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본계약 및 리스사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기상청은 이러한 불용이 재발되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I

## 주요 사업 분석

1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측지점 이전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 강화 필요 등

#### 가. 현 황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sup>1)</sup>은 기상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지상기상관측장비, 고층 기상관측망, 도로기상관측망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264억 2,500만원 중 26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4,876	24,876	1,555	△6	26,425	26,329	-	96	20,607	20,607
기상관측 표준화 추진	2,657	2,657	-	△56	2,601	2,587	-	14	2,419	2,419
지상기상 관측장비 운영	4,814	4,814	-	101	4,916	4,894	-	22	4,903	4,90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내역사업인 기상관측표준화추진은 기상청을 포함한 28개 관측기관의 국가기상관측시설 표준화로 정확한 기상관측자료의 확보와 기상관측망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관측시설 개선을 통한 관측자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억 100만원 중 2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

내역사업인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은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노후 지상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자동화 등을 통해 기상관측자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9억 1,600만원 중 48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관측지점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기상청은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를 강화하여 관측지점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 및 제19조2)에 따라 최적의 기상관측환경 유지를 위해, 기존 기상관측지점이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기상 관측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관측 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관측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측환경 개선 유형에는 관측시설 이전, 관측장애물 제거, 안전시설 보강 등이 있다.

특히 개별 기상관측지점에서의 추가적인 관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상청은 해당 관측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관측환경을 개선한다. 관측지점 이전은 대상지점을 선정한 뒤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 「기상관측표준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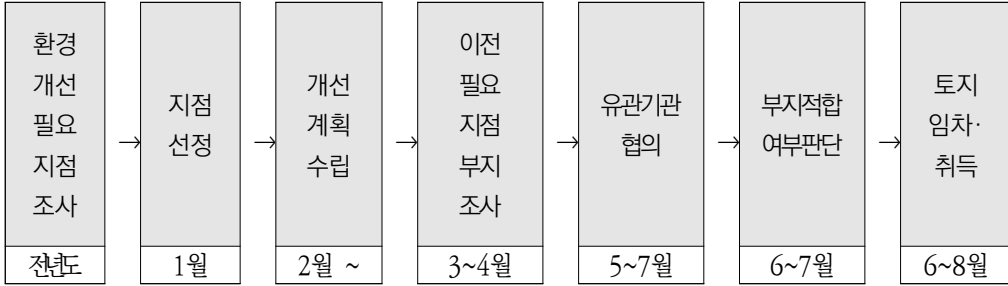
####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지점 환경개선 사업 중 이전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기상청

이에 기상청은 2025년 총 22개의 관측지점을 이전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고 부지 확보 등 개선계획을 수립·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중 9개의 관측지점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지연,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기상관측지점 이전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2024년도에도 총 20개의 관측지점을 이전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고 개선계획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6개의 관측지점에서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등 연례적으로 유사한 사유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관측지점 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집행현황]

(단위: 개소)

연도	환경개선 계획지점	개선 완료	미완료	사유
2024	89 (20)	68 (14)	21 (6)	민원,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2025	112 (22)	91 (13)	21 (9)	유관기관 협의 지연, 부지 확보 난항 등

주: ( ) : 이전 계획·추진 지점

자료: 기상청

현재와 같이 연례적으로 계획한 부지를 확보하기 못하게 되는 경우 당초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관측지점의 자료를 계속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기상 관측의 정확도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기상청은 관측지점 부지 확보 난항 등으로 관측지점 이전 계획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상관측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여러 후보 부지를 선정하여 특정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체 후보지를 통해 원활한 관측지점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측지점 환경개선 계획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청은 정확한 기상 관측을 위해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란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기상 관측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거리가 먼 지역으로부터 측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전통적인 기상관측소를 자동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AWS와 ASOS가 있는데, 먼저 AWS(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는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지상부근의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산악·섬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되어 국지적 위험기상(집중호우, 돌풍 등) 감시에 특화된 장비이다. ASOS(종관기상관측장비)는 기상청, 기상대 등 관측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관측장비로 일조·일사·초상온도 등의 관측까지 가능하며 AWS보다 관측요소가 더 많아 국제기상자료 공유 등에도 활용된다. 2025년 기준 기상청은 총 651개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운영중에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개요]

장비명	관측방법(관측요소)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종관기상관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관서에서 기상관측을 자동으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강수량(0.1·0.5mm), 강수유무, 일사량, 일조시간, 초상온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시정·현천, 운고·운량, 적설</li> </ul> </li> <li>○ 관측주기: 1분</li> </ul>
AWS(Automatic Weather System) 방재기상관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산악 등 방재감시 자동기상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0.5mm), 강수유무</li> <li>※ 일부지점 추가요소: 습도, 기압, 시정현천, 적설</li> </ul> </li> <li>○ 관측주기: 1분</li> </ul>

자료: 기상청

그런데 2025년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건수를 확인해보면 총 515건에 이르고 있어 고장건수가 상당하고, 평균복구시간도 28시간 55분이 소요되어 고장 발생 시 일별 예보(24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정확한 기상 값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지점(측정소)별 장애건수]

연도	지점 수(개소)	전년도 대비 지점수 증가(개소)	장애건수 (건)	전년도 대비 장애 증감건수(건)	평균 복구 시간
2022	637	-	385	-	34시간 7분
2023	639	2	541	156	35시간 25분
2024	640	1	600	59	33시간 40분
2025	651	11	515	△85	28시간 55분

자료: 기상청

또한 2025년 651개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1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장비는 354개에 불과하고, 4건 이상 장애가 발생한 장비가 23개로 복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장비의 수도 상당한 편이다.

[2025년 지상기상관측 지점별 장애 건수]

	장애건수							합계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지점 수	354	173	69	32	14	4	5	651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야외에서 장시간 운용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특성상 고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최근 장비 외부 센서 등의 추가 도입으로 고장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 조치 전까지 인근의 기상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장비 특성상 눈, 비, 강풍 등 다양한 기상현상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야외에서 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잦은 고장을 설명하기 어려운바 이는 장비 도입 단계부터 검토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고장이 발생하고 24시간 이상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인근의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인 자료에 그치는바 기상 관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잦은 고장 문제 및 고장 발생 시 빠르게 해당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개발(R&D): 기술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등

### 가. 현 황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sup>1)</sup>은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19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19,500	19,500	-	-	19,500	19,500	-	-	111,058	111,05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동 연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6,668억 5,400만원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31년까지 총 7년간 수행될 예정이며,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sup>2)</sup>하고, 민간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시스템/본체 개발을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기상탐재체와 우주기상탐재체 개발을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정헌술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3137-406

2) 우주항공청의 경우 시스템 및 본체개발 과제의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기상탐재체 기술개발과 우주기상탐재체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기상청만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5호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 현황 및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예산 분담	총액	195.00	1,110.58	1,469.45	1,308.89	695.08	480.65	174.42	5,434.07
	기상청								
	시/본	63.00	251.00	466.70	261.20	88.61	76.47	27.49	1,234.47
	기·탑	120.00	829.58	932.46	722.27	260.67	119.03	47.41	3,031.42
	우·탑	12.00	30.00	70.29	45.55	65.93	5.28	6.23	235.28
	발사/보 험	0	0	0	279.87	279.87	279.87	93.29	932.90
	우주항공청 (시/본)	50.00	426.57	304.13	261.20	88.61	76.47	27.49	1,234.47
합계	245.00	1,537.15	1,773.58	1,570.09	783.69	557.12	201.91	6,66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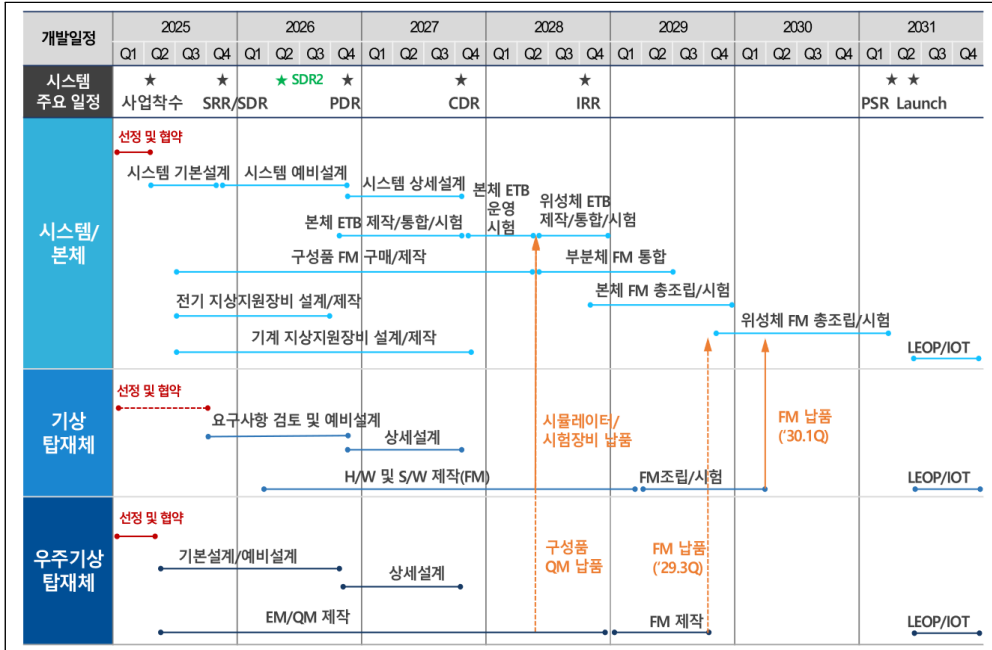
※ 시/본: 시스템 및 본체, 기·탑: 기상탑재체, 우·탑: 우주기상탑재체

※ 당초 총사업비 기준임

자료: 기상청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25년에는 시스템/본체, 기상 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과 함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에 예비설계를, 2027년에 상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후 2028년부터 조립 및 통합을 수행하고, 2031년 2분기 발사 및 궤도상 시험을 거쳐 정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개발일정]



자료: 기상

2026년 5월 현재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과제와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과제의 경우 2025년 4월 협약 체결 후 시스템 기본설계를 완료(2025년 12월)하고, 예비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상탑재체 과제는 2025년 2월 1차 공모, 4월 2차 공모를 거쳐 9월 3차 공모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LIG D&A(주)<sup>3)</sup>을 선정하고 10월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상탑재체 개발과제의 경우 해외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개발비용보다 견적비용이 크게 상승한바<sup>4)</sup>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상청은 2025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sup>5)</sup>

3) 2026년 4월 LIG넥스원에서 LIG D&A로 기업명칭 변경

4)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시 추산한 해외 개발비용이 1억 6,000만 달러(약 2,250억원)였으나, 2025년 하반기 기준 미국 개발업체의 견적비용이 1억 9,500만 달러(약 2,740억원)로 상승한 점, 환율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292원에서 사업 공모시에는 1,380원~1,430원으로 상승한 것도 미국 개발업체의 응찰이 저조했던 사유라는 설명이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

를 거쳐 예산을 당초 대비 660억 1,000만원 증액하여 3차 공모에 이르러서야 주관 연구개발기관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2025년도 주요 과제 추진경과]

과제명	모집 공고	협약 체결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요 과제추진내용
(과제1)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25.2. (1차)	'25.4.	LIG D&A(주)	국가 선행R&D 사업성과물 적용 분석 검토(6월)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7월) 및 시스템 규격 문서 작성(9월) 기술이전 항목 분석, 항우연과 실무협의(8월) 탑재체 과제 간 접속 제어 실무그룹 운영(6~11월) 기술이전 목록확정(12월) 시스템/본체 기본설계 완료(12월)
(과제2)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기상탑재체 개발	'25.9. (3차)	25.10.	LIG D&A(주)	특정평가 통한 증액 타당성 승인 후 3차 공고(9월)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10월) 기상탑재체 요구사항 수립(11월) 해외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12월)
(과제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25.2. (1차)	'25.4.	한국과학기술원	센서별 개발방안 검토(6월) 추가센서 및 센서별 위성본체 접속사항 검토(7~11월) 센서별 사전 설계 및 핵심부품 검토(8월) 센서별 사전설계를 통한 개발센서 확정(12월) 센서별 시스템 기본설계 완료(12월)

자료: 기상청

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이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출연하고, 기술원에서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민간기업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스템/본체 개발의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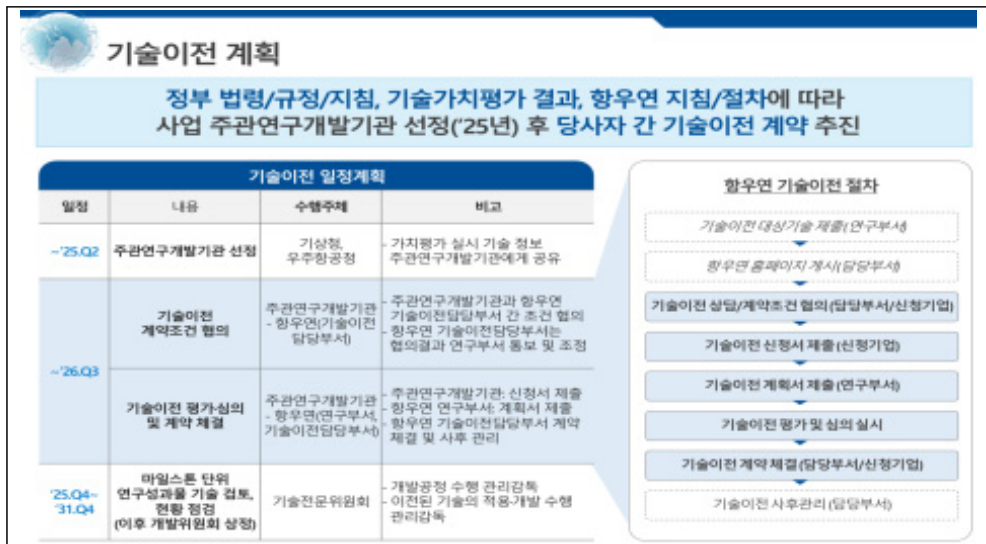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자료: 기상청

이와 같이 천리안위성 5호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미보유한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하는데, 기술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서 당초 계획한 기술이전 일정을 보면 2025년 1분기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보유기술을 공유해 주고, 2025년 3분기까지는 연구개발기관과 항공우주연구원간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조건 협의 및 기술이전 가치평가, 이전계약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으나 2026년 5월 현재 26년 3분기로 예정되어 있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 방안]



자료: 기상청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넥스원 사이의 협의 지연으로 2025년 상반기 이전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기상청은 지연을 해소하고자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넥스원이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에 4자 협의체는 2026년 5월 현재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이전 목록을 확정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가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조사와 내부검토를 시작하였다.

[기술이전 협의를 위한 4자 협의체 진행 상황]

회의차수	년월	내용
-	2025. 4.	민간기업 선정
1차회의	2025. 5.	기상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민간기업 간 연락담당자 지정
2차회의	2025. 6.	민간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기술이전 22건 요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
3차회의	2025. 7.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기술이전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검토 필요 의견
4차회의	2025. 11.	기술이전 목록 확정을 위한 원칙적 합의 촉구
5차회의	2025. 12.	외부 전담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전 최종 기술이전 목록 22건 확정
6차회의	2026. 2.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연 방지를 위해 기술 가치평가와 기술이전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협의
7차회의	2026. 4.	기술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절차 착수 및 가치평가 기간 중 계약 관련 사전 병행추진 논의

자료: 기상청

4자 협의체의 운영으로 기술이전 목록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나,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5년 3분기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계획하였던 것에 비하여 사업 진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 사업은 시스템 및 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모든 개발 과정에서 배치 위치, 전력 등을 공동으로 설계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이 기술이전이 지연된다면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 및 예정된 시기에 위성 개발을 완료하는 것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신속한 기술이전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지연사유를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최소화하여 위성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 4월 천리안위성 사업 시스템 및 본체 개발과 관련해 기상청은 LIG넥스원을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쟁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① LIG넥스원 측이 위성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주도해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일부 평가위원이 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로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 구조에서 기술료 보상을 받게 되어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상대로 LIG넥스원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천리안위성 5호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소송 현황]

구분	일자	주요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4월 초	LIG넥스원이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의신청 제기	2025년 4월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 기각	2025년 5월 중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의신청이 기각됨
행정소송 제기	2025년 7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1차 변론기일	2025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주제로 본안 심리 개시
2차 변론기일	2026년 3월 26일	기술료·공동연구 관련 입증자료 제출 요구 및 문서 제출명령신청서 구체화 지시
3차 변론기일	2026년 5월 28일	-

자료: 기상청

이에 대해 기상청은 ①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sup>6)</sup>을 만족

6) 자격 기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넥스원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였던 객관적인 평가 기준<sup>7)</sup>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되었고, ② 항공우주연구원 과거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으며<sup>8)</sup>, 기술이전 목록, 이전 방식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취소소송 제기에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과 관련 이미 기술이전 협약 체결 단계에서의 지연으로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법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소송의 추이를 확인하고 소송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7) 평가 기준: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역량,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계획, 제안요구서 준수 여부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척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연구개발과제 연구자, ②친족관계, ③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 등임

##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 계약 지연에 따른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가. 현황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sup>1)</sup>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상예보 생산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 정보생산을 위한 필수 자원인 국가기상컴퓨터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5년 예산현액 290억 4,600만원 중 23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상용 슈퍼컴운영	27,546	27,546	-	1,500	29,046	23,210	714	5,122	20,421	20,42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대국민 기상정보 및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전산 인프라이다. 우리나라의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2000년에 1호기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슈퍼컴 5호기가 운영중인 상황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상청 일반회계 1239-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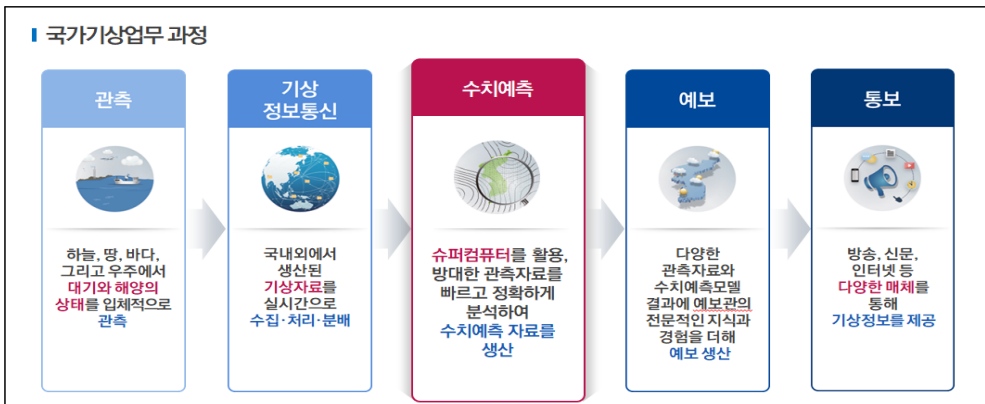
슈퍼컴퓨터는 기상청 일기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예보모델의 성능과 관측자료 활용성을 강화하여 위험기상 정보(해일, 태풍 등)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을 통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 산업, 재난, 보건, 에너지 등 국가정책 결정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외부기관에 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기상용 슈퍼컴퓨터 개념도]



자료: 기상청

[기상용 슈퍼컴퓨터 활용현황]



자료: 기상청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국가 정책지원을 위한 한국형수치예보 모델 운영, 차세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슈퍼컴퓨터의 전산자원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슈퍼컴퓨터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5년부터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7년 6월까지 6호기의 구축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슈퍼컴퓨터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슈퍼컴퓨터 도입현황]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본계약 및 리스사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기상청은 이러한 불용이 재발되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25년도에 슈퍼컴 5호기 최종분과 6호기 초기분 리스료, 5호기 유지보수비 등 슈퍼컴퓨터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3억 8,000만원만을 집행하고 46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다.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슈퍼컴퓨터 6호기 초기 리스료로 편성된 예산 45억 8,9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기 때문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 교체와 관련된 총예산을 보면 장비 가액 813억 7,000만원, 리스료 이자 80억 2,000만원으로 총 89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리스료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7년간 분납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 교체 총 소요예산]

(단위: 억원)

총 소요예산(A+B)	장비 가액(A)	리스료 이자(B)
893.9	813.7	80.2

자료: 기상청

[총리스료 증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초기분(A)	45.9	19.8	26.4	26.4	26.4	26.4	6.6	177.7
최종분(B)	-	-	89.5	179.0	179.0	179.0	89.5	716.2
전체(A+B)	45.9	19.8	115.9	205.4	205.4	205.4	96.1	893.9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6호기 교체 관련 2025년도 추진 경과를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을 수립한 이후 3월에 기술규격 등을 배포하였으며, 5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다. 이후 9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10월 14일 1차 유찰, 11월 4일 2차 유찰되었고, 2026년에도 1월 13일과 1월 27일에 각각 유찰되었다. 기상청은 동 입찰 관련 유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부품 가격의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주요 벤더사들이 응찰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6호기 교체 관련 주요 사업추진경과]

일자	사업 내용
'24. 08. 12.	6호기 구축 계획 수립
'25. 01. 06.	6호기 구축 계획 변경 수립
'25. 03. 31.	기술규격 및 BMT 사전 배포(총 3차/'24. 10. 16., '25. 2. 21.)
'25. 05. 22.	법률자문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완료
'25. 06. 19.	일상감사 완료
'25. 06. 24.	6호기 조달 발주 계획 보고
'25. 06. 25.	6호기 조달계약 요청
'25. 07. 29.	외자구매 입찰공고
'25. 08. 20.	외자구매 입찰정정공고
'25. 09. 17.	외자구매 입찰공고 취소
'25. 09. 18.	외자구매 입찰공고
'25. 10. 01.	제안시스템 개별 추정 성능정보 접수
'25. 10. 14.	입찰 마감(1차 유찰)
'25. 10. 15.	외자구매 입찰 재공고
'25. 11. 04.	입찰 마감(2차 유찰)
'25. 11. 28.	제안요청서 변경
'25. 12. 18.	외자구매 입찰 공고
'26. 01. 13.	입찰 마감(3차 유찰)
'26. 01. 14.	외자구매 입찰 재공고
'26. 01. 27.	입찰 마감(4차 유찰)

자료: 기상청

이처럼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한 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초 계획한 슈퍼컴퓨터 교체 일정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환율 및 부품가격 상승으로 외자구매 계약이 유찰됨에 따라 6호기 구축 비용 현실화를 위한 조사 용역을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 규모 조정,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연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5호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예보의 정확도, 운영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슈퍼컴퓨터 6호기의 신속한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6호기가 신속하게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